71.111
ヨナ20
V B

人口動態統計方法論

000970

第 VII 章 申告方法 5

A. 現実的인 申告方法 7

B. 申告場所 12

1. 国際勧告 12

2. 各国의 実例 16

3. 差異로 因한 統計上의 效果 29

C. 申告内容 31

1. 国際勧告 32

D. 申告履行 期間 45

1. 国際勧告 46

E. 地滯申告 67

1. 国際勧告 69

2. 各国의 実例 74

3. 動態統計에 対한 地滯 및 申告 79

VIII 章 登録者의 申告書 83

A. 登錄簿의 性格과 形態 87

1. 登錄簿의 基本 形態 87

2. 登錄簿의 性格 100

3. 登錄簿의 內容 121

第 VIII 章 報告過程과 統計報告 133

A. 統計報告 過程 136

1. 報告單位 137

2. 報告範囲 138

3. 統計報告의 責任 142

4. 報告經路 145

5. 日程表 150

B. 統計報告 155

1. 形態 155

第 IX 章 事態統計의 統計報告 項目 171

A. 報告와 戶籍簿와의 關係 173

B. 統計報告書에 包含될 項目 177

ㅅ 國際勸告 178

第X章 統計報告 項目의 用途, 定義 및 分類

其他 221

第Ⅵ章

申告方法

第 VI 章 申告方法 (Registration Process)

事件의 發生을 申告所에 届出해야할 責任者의 身分은 이미 第 V 章에서 보아온 바이다.

다음으로 考察해야할 問題는 申告의 方法 即 申告의 "方法" "時期" "場所"이다.

여기서 考察하려는 것은 申告上 賦與된 權限이나 要件을 說明하려는 것이 아니고 依代를 統計의 方法上의 問題에 局限하려는데 있다.

가. 現實的인 申告方法

申告의 定義를 動態統計制度의 諸原則(1)에서 밝히기를 申告(registration)란 "事件發生에 對한 当局의 法的記錄---"이라고 定義하였다.

이 当局이란 戶籍官(the registras)을 意味한다. 또 權限을 賦與받은 申告者란 申

告所에 申告의 責任을 진 者 換言하면 事件의 供述 (declaration) 을 責任진 者이다

各國의 法律은 이 兩者에 負荷된 責任을 明白히 하고 있으나 大体로 이 責任에 一定한 限界를 세웠을 뿐이다

届出者는 口頭陳述할 수 있다 出生申告의 경우 申告官은 그 幼児가 生残하고 있는가를 直接 目睹하거나 (이 境遇 幼児를 申告所에 直接 데리고 가거나 戶籍吏가 直接 幼児를 訪問하는 境遇가 있을 것임) 或은 戶籍吏가 直接 確認하지 않고 届出者의 陳述을 그대로 認定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届出者의 言質만으로 充分할 때가 있는가 하면 証拠人들의 言質이 要할때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節次에 관한 各國의 實例에 대해서 正確한 情報를 入手할 수 없으나 例컨데 일본은 若干의 稅金을 支払하면 同時에 出生供述(Written declaration)을 口頭供述로 代置시킬 수 있으며 美國에서는 入会가 戶籍所에 出生証明을 郵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체코에서는 病院에서 出生한 事件은 一定한 書式에 依한 申告를 하도록 되어 있다.

勿論 이같은 節次는 地域 時期 隔地에서 発生한 事件은 다를 것이다 動態統計方法이 뜻하는 事実은 書式에 依한 것이 口頭로 依한 것보다 不正確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不明確한 情報를 申告所가 明確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申告의 眞僞與否에 対해서도 여러가지 問題点이 있지만도 여기서는 이를 解明하지

않는다. 出生児의 直接 確認 (Visual Verification) 이라는 点에서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申告所가 出生児를 直接 出頭시키고 있는 事実을 알 수 있다. 이를 国家로는 벨짐, 佛蘭西, 그리스, 伊太利, 룩셈부르그, 네델란드, 베네쥬엘라 이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戸籍官이 直接 出生児를 目睹하게 되어 있으나 반드시 管轄 戸籍官이 아니라도 좋다. 한편 申告前에 死亡한 幼児는 "生命 없는것" (presented without life) 或은 一種의 死亡으로서 申告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미 出生 死産 死亡 統計上에 에 여러가지 相違를 가져오는 原因中의 하나라고 説明한 바이다.

申告記録이 当事者에 対한 立証的인 価

値를 가졌기 때문에 事件의 直接的 確認(Visual Vertification)이 欠缺될 경우에 차備하여 証人의 確証的인 証拠가 역시 必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最少限 17個國(이中 10個國은 라틴、아메리카)은 出生申告에 証人이 必要하고 死亡申告時에는 亦是 証人이 必要한 것으로 되어 있다 婚姻申告가 一定한 証人을 要하는 反面에 離婚申告-法院의 記錄인-는 副次的인 確証을 要하지 않는 경우가 許多하다 申告上에 証人의 採択이 直接的인 効果를 統計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 明白하며 또한 特定한 時間에 特定한 場所에서 2人 或은 3人이 集合하기가 困難하므로 申告가 遅滞되는 傾向을 갖게 될 것이다

B、申告場所

이 申告場所란 届出者가 届出하는 地理的 場所所를 말한다. 根本的으로 보면 이 問題에는 兩者 択一의 問題가 있다 即 申告가 事件発生 場所에서 申告되는 경우와 居住地에서 申告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의 것을 "発生地主義" 申告(place-of-occurremes)라 하고 두째번 것을 "居住地主義" 申告(place-of-resdence)라고 한다.

1. 國際勧告

発生地 主義申告가 統計의 作成을 早速한 時日內에 申告케 함은 勿論 記錄의 完全性과 正確性을 期하는데 最善의 方法이므로 國際斯會은 이 問題에 関하여 下記와 같은 國際勧

름의 原則(2)을 採擇하던 것이다

"2.1. 申告場所

"(a) 動態事件마다 事件發生을 申告所에 申告하여야 한다

(b) 居住地가 반드시 報告되어야 한다 ... 그리고 申告된 事件이 事件의 發生以外의 所在地의 居住者에 関한 것이라면 事件의 居住地를 報告받은 것과 같은 措置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申告가 居住地로 申告되든 發生地에서 申告되든 相関 없으나 以下에서 보다시피 世界 多數國家가 動態事件의 申告를 事件發生地 所在申告所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申告地의 選択은 各國의 地方的 慣習이나 社会의 環境에 따를 것이나 大体로 發生地主

義를 採하는 것이 履行을 섬사리 하게 하며 錯誤 및 遲滯의 機会를 最少로 抑制해서 記錄結果의 効用性을 增大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이 履行하기만 하면 記錄 및 証明書를 居住地로 再調整할 必要가 없는 다시 말하면 資料를 居住地別로 集計할 必要가 없게 된다.

事件의 發生地에 따라 事件이 申告된다면 一定한 利点이 있다는 것이 確実하다.

例컨데 事件의 發生地에서 申告된다면 더욱더 法定期日內에 申告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無理가 아니다.

地方的 水準에서 動態記錄이 國民保健 事業의 資料로서 使用 경우에도 "發生地主義"에 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같은 경우란 死亡 申告 地域에서 지체없

이 어떤 判定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流行性疫
患으로 死亡할 경우에는 特히 그 效率性이
있는 것이다. 居住地別 申告는 發生地와
다르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內包될 時差가 包
含되고 있을뿐 아니라 疫病 防疫活動에 있어
地理的 考慮를 複雜하게 할 것이다.

따르게 發生地 申告主義에 依해서만 不慮의
死(Violent deaths)를 檢察(police
Investigation)할 수 있고 이에 적합
環境을 調整할 수 있다는 点이다. 万若
申告가 死亡者의 居住地에서 申告된다면 即刻
的인 警察活動이 甚히 困難하게 될 查察問題
가 있다.

2. 各目의 実例

目	象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아	프 리 카					
	에 짚 트	○	○	○	○	○
	南阿聯邦	○	○	○	○	○
北	美					
	캐 나 다	○	○	○	○	○
	코스타리카	R	○	○	○	(1)
	쿠 바	○	○	○	○	(1)
	도미니카	○	○	○	○	○
	엘살바돌	○	○	(2)	○	○
	과테말라	○	○	○	○	○
	하 이 티	○、R	○	○	○	R
	멕 시 코	○	○	○	○	○
	혼 두 라 스	○、R	○、R	(2)	○、R	(3)

國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니카라과	0	0	0	0	0
파나마	0	(4)	0	0	(1)
美屬	0	0	0	0	0
南美					
아르헨티나	0	0	0	0	(5)
볼리비아	R	R	R	R	(1)
부라질	0	0	0	0	(5)
칠리	0	0	0	0	(5)
콜럼비아	0	0	(2)	0	(5)
에콰돌	0	0	0	0	0
파라과이	0.R	0	0.	0	(5)
페루	0	0	(2)	0	(1)
우루과이	...	...	...	...	...
베네쥬엘라	0	0	0	0	(1)

國 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아 세 아					
버 마	0	0	0	(2)	(2)
실 론	0	0	0	0	0
印 度	0	0	0	(2)	(2)
인도네시아(印尼人)	0	0	0	0	0
이 란	...	...	...	...	...
이 스 라 엘	0	0	0	0	0
日 本	0	0	0	(6)	(6)
요 단	0	0	(2)	0	0
레 바 논	(7)	(7)	(2)	(7)	(7)
파 키 스 탄	0	0	0	(2)	(2)
필 립 핀	0	0	0	0	(5)
시 리 아	(7)	(7)	(2)	(7)	(7)
타 이 랜 드	0	0	0	0	0

國家	出生	死亡	産死	婚姻	未婚
러키	(ㄱ)	(ㄱ)	(ㄴ)	(ㄱ)	(ㄱ)
歐洲					
오스트리아	0	0	0	0	(1)
벨짐	0	0	0	R	(1)
체코	0	0	0	0	0
덴마크	0	0	0	0	0
핀란드(8)	R	R	R	R	R
佛蘭西	0	0	0	R	(1)
独逸聯邦	0	0	0	0	R
그리스	0	0	0	0	(1)
아이스란스	0、R	0、R	0、R	0、R	0
아일란드	0	0	(2)	0	(5)
伊太利	0	0	0	0	(5)
리텐스타인	0	0	0	0	(1)

國 象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룩셈부르그	0	0	0	...	...
네델란드	0	0	0	R	(1)
놀웨이	0.R (9)	(10)	0	0	0
폴란드	0	0	0	0	0
폴튜걸	0	0	0	0	(1)
스페인	0	0	0	R	(1)
스웨덴 (8)	R (12)	R	R (12)	R	R
스위즈란드	0	0	0	0	(1)
英 國 :					
잉그란드웨일즈	0	0	0	0	0
北아일란드	0	0	(2)	0	0
스크트란드	0	0	0	0	0
유고슬라비아	0	0	0	0	0

國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大洋洲					
오스트레일리아	○	○	○	○	○
뉴지란드					
欧洲人	○	○	○	○	○
마오리人	○	○	○	(2)	○

第 8 表는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에 對한 申告의 方法을 表示하고 있다.

第 8表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의 申告地 (1950. 1. 1 現在 65 個國) (○는 發生地, 又는 居住地, ····는 不詳)

註: (1) 婚姻申告地에서 一般申告 (civil registration)를 하고 追加해서 發生地의 法院이 記錄함

(2) 公的 申告 없음

(3) 婚姻申告地 및 發生地에서 申告함

(4) 埋藏地에서 申告

(5) 여기서 使用하는 離婚은 存在하지 않음.

(6) 夫 또는 妻의 本籍 (family ancestral seat Honseki)에게 申告

(7) 母의 申告地

(8) 居住地 (place of resisdence) 라 함은 住民登録 (population register) 地를 말한다.

(9) 出生地 및 父母의 居住地에서 申告함.

(10) 埋藏地 및 居住地

(11) 一般婚姻 (civil marriages) 은 新婚夫婦의 新居住地에서 牧師 (pastor) 에게서 부터 받는다.

(12) 実際로 "出生教区 ("parish of birth") 말하자면 姙娠時 母가 申告된 教区에서 申告됨

(a) 出生 (line 1inth)

第8表에서 보면 報告된 62個國中 9個國을 除外하고는 事件의 発生地에서 申告토록 되어 있다.

이에 対해서는 例外가 許多한데 例컨데 뉴지

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発生地 申告에 不当한 지체나 困難 또는 費用이 들지 않는 나라에서는 事件의 申告接受를 他地方의 申告所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絶対多数의 国家 (62個国中 53個国)는 純全히 発生地主義 (50個国)와 居住地主義를 併用 (3個国)한 出生申告를 하도록 되어 있다

居住地主義에 発生地主義를 加味하고 있는 国家로서는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핀란드, 아이스란드, 놀웨이, 스웨덴, 혼두라스가 있다.

레바논, 시리아, 터어키는 居住地와 同一한 住民登録地에서 申告토록 되어 있다

特히 하이티와 파라과이 両国만이 居住地 或은 発生地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b) 死 亡

出生이거나 死産의 경우와 같이 62個國中 54個國인 絶対多数國이 死亡申告地를 事件発生地로 報告하고 있다.

出生申告에서처럼 룩셈부르크와 아이스랜드는 居住地와 発生地에서 二重申告토록 하고 있다. 反面에 불리비아, 핀란드, 및 스웨덴은 "居住地"(Wohnsitz-Prinzip)에서 申告토록 하고 있으며 터어키, 시리아 및 레바논은 長期居住地인 住民登録地에서 申告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死亡申告에는 한가지 特異한 것이 있는데 파나마와 놀웨이의 死亡申告는 埋葬地에서 申告된다는 것이다.

(c) 死 産

死産申告는 52個國中 49個國이 發生地에서 申告토록 하고 있다.

이의 例外로서는 볼리비아 핀란드, 스웨덴으로서 居住地申告主義를 採하고 있다.

아이스란드와 놀웨이는 發生地主義와 居住地主義 兩者를 併用하고 있다.

(d) 婚 姻

大多數 國家에서 婚姻에 관한 法律에는 婚姻에 관한 申告事項을 同時的으로 規定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發生申告地 主義를 採하고 있는 國家로 報告된 比率은 婚姻에 저해서는 若干 낮게 되었다는데 58個國이 報告된 가운데 48個國 即 80%도 못되고 있다.

居住地申告主義를 採하고 있는 國家는 8個國

에 不過하고 4個國은 住民登錄地(place of population registration)에 申告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実際上 "居住地"와 "発生地"가 全然 同一한 境遇가 있는데 例컨데 칠리의 法律은 婚姻은 当事者의 어느 一方이 永久 居住하고 있는 社会에서 成立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居住地"와 "発生地"는 同一한 것이다

(e) 雜 婚

여기서 使用한 雜婚의 意味에 適合하다고 생각되는 53個國中 49個國의 情報에 의하면 49個國中 24個國이 発生地 申告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16個國이 婚姻挙行地에서 申告토록 하고 있다

特히 4個國이 居住地에서 申告토록 하고 있으며 4個國이 婚姻申告地인 住民登錄地에서 亦是 離婚도 申告토록 하고 있다 發生地 申告主義는 離婚에 있어 若干 意味上 (connotation)의 差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多數國의 離婚申告가 當該 法院에 依해서 申告된다는 事實에 基因한다 (參照 第1表 및 11表)

이러한 경우의 發生地는 管轄法院이 所在하고 있는 所在地가 될 것이다

이러한 事實로 말미암아 婚姻申告地에서 離婚이 申告되는 16個國家群은 婚姻申告所에서 離婚이 記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措置는 婚姻記錄의 濫用을 防止하는 한편 婚姻의 公的 取消도 統制하게 된다

3. 差異로 因한 統計上의 效果

事件發生地 以外의 地에서 申告되므로 若起되는 遲滯申告의 한 좋은 例로서는 日本을 들 수 있다

普通 日本의 婚姻申告에 관한 法律은 戶籍 (the family record; kosechi) 이 있는 本籍 (Honseki) 地에서 申告토록 規定하고 있다

婚姻이 本籍以外의 다른 곳에 擧行될지라도 婚姻誓約書 (the declaration) 의 謄本을 本籍地에 送付해야 하는 것이다

이 結果 婚姻申告가 恒時 遲滯되고 있다

이와 類似한 경우가 시리아에서도 일어나는데 시리아는 모든 動態事件의 申告는 住民登錄 (population register) 을 하고 있는

登錄所에 申告토록 되어 있다.

그 같은 制度(레바논, 터어키, 핀란드 및 스웨덴도 同一함)에서는 動態事件이 以外의 地域社会에서 発生했을 경우 誓約書(declaration)를 申告居住地에 移送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措置는 報告의 遲延을 가져올뿐 아니라 申告所 自体의 錯誤(漏落 또는 不正確)를 招来하게 되는 것이다.

놀웨이와 아이스란드는 住民登錄所를 統制하기 위하여 二重申告 — 一次申告는 発生地에서 하고 二次申告는 居住地에서 하도록 한 一措置를 取함으로서 解決하였다.

其外의 大多數 国家는 一般申告所(civil registers)를 民族 또는 家口와 独立시켜서 相異한 申告順次를 取하도록 하고 있다.

C、申告内用

申告에 관한 特典(privilige)을 얻기 위하여 수수료(fee)를 支払하여야 할 것인가 어떤가의 問題는 多年間 申告所에 対한 異論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洗礼를 出生으로 葬儀를 死亡으로 婚礼(Wedding)를 婚姻으로 代置하기 以前 이 같은 儀式을 担当하고 教会当局이 그 같은 서비스의 代価로서 報酬를 받았던 것이다

申告가 一般化되어지자 同一한 方途가 그대로 踏襲되는 傾向이 있었으나 그러나 国家서비스가 発達함에 따라 一種의 市民으로서의 权利인 出生, 死亡 婚姻은 一般的으로 아무런 負担을 갖지 않게되어 漸次的으로 이에 対한 手数料(fee)가 免除되게 되었던 것이다.

人 國際勸告

事態事件의 申告는 立法事項이고 強制的이라는 点을 認定하여 國際聯合은 申告費用免除의 勸告(3)를 하였다

이 勸告는 原則 21條로서 다음과 같다

"21 申告費用

"(a) 動態事件의 申告가 法律로 規定될 때에는 申告時日等에 관한 法律條文에다 申告者에게 手數料를 負担시켜서는 안된다

(b) 申告를 励行시키려면 届出者에게 負担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

本勸告는 遲滯申告(delayed)에 対해서 罰科金을 賦課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即 이 勸告가 目的하는 바는 法定期日이 経過한 것이나 或은 申告所의 取扱事項 또는

寫本의 眞實 與否等에 対한 罰科金의 賦課를 말한 것이다

事實 申告의 時日 또는 其他 履行事項에 관한 法規를 全般的으로 充足시키려면 負担없는 申告(free registration)가 施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게 함으로써만이 申告를 奬勵하게 되고 徹底히 履行시키게 될 것이다

動態統計制度의 諸原則에서 이에 追加해서 말하기를 申告를 督勵하는 方策으로서 申告에다 科料를 賦課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으나 多大數 國家는 이 같은 事實의 必要性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措置가 아주 有益한 一面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國家	手數料 賦課				
	出生	死亡	産	婚姻	離婚
아프리카					
에 죠 트	×	×	×	0 (4)	0
南亞聯邦	×	×	×	...	...
北 美					
캐 나 다	×	×	×	×	×
코스타리카	×	×	×	0 (2)	0
쿠 바	×	×	×	×	×
도미니카	0	×	×	0	0
엘살바돌	×	×	(3)	×	×
과테마라	×	×	×	×	×
하 이 티	0	0	0	0	0
혼두라스	×	×	(3)	×	×
멕 시 코	×	×	...	×	×

國家	其他資料				
	出生	死亡	財産	婚姻	離婚
니카라과	×	×	×	×	×
파나마	×	×	×	×	○
美國	×	×	×	(4)	(5)
南美					
아르헨티나	×	×	×	×	(6)
볼리비아	○	○	○	○	×
브라질	×	×	×	○(7)	(6)
칠리	×	×	×	×	(6)
콜럼비아	×	×	(3)	×	(6)
에콰돌	×	×	×	×	×
파라과이	×	×	×	○	(6)
페루	×	×	(3)	×	×
우루과이	...	...	...	...	...

國家	手數料 賦課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베네주엘라	×	○	···	○	×
亞細亞					
버마	×	×	×	(3)	(3)
실론	×	×	×	○(8)	(9)
印度	×	×	···	(3)	(3)
인도네시아(蘇門答臘)	···	···	···	···	···
이란	···	···	···	···	···
이스라엘	×	×	×	○	○
日本	×	×	×	×	×
요르단	×	×	(3)	○	○
레바논	×	×	(3)	○	○
파키스탄	×	×	×	(3)	(3)
필립핀	×	×	×	×	(6)

國家	課稅對象手數料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시리아	×	×	(3)	×	×
타이랜드	×	×	×	×	×
터키	×	×	(3)	×	×
歐洲					
오스트리아	×	×	×	×	×
벨짐	×	×	×	×	×
체코	×	×	×	×	×
덴마크	×	×	×	×	...
핀란드	×	×	×	×	×
佛蘭西	×	×	×	×	×
獨逸	×	×	×	×	...
그리스	×	×	×	×	....
아이스란드	×	×	×	×	×

國	課	賦	料	數	手	
象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雜婚	
아일란드	×	×	(3)	×	(6)	
伊太利	×	×	×	...	(6)	
덕덴스타인	×	×	×	×	×	
룩셈부르그	×	×	×	×	...	
모나코	×	×	...	×	...	
네델란드	×	×	×	×	×	
놀웨이	×	×	×	×	...	
폴란드	×	×	×	○	○	
폴튜갈	○	○	○	○	○	
스페인	×	×	×	×	(6)	
스웨덴	×	×	×	×	○	
스위즈란드	×	×	×	×	×	
英國						

國 象	手 數 料 賦 課				
	出生	死亡	遺産	婚姻	離婚
잉그란드 웨일즈	×	×	×	×	×
北部 아일란드	×	×	(3)	×	×
스코트란드	×	×	×	×	×
유고슬라비아	×	×	×	×	×
大 洋 洲					
오스트레일리아(10)	×	×	×	×	×
뉴 지란드					
歐 洲 人	×	×	×	×	×
다오리 人	×	×	×	(3)	,,

2. 各國의 實際의 差異로 因한 效果

各國別로 본 手数料 賦課 與否에 対해서 第9表가 作成되고 있다

第9表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申告에 随伴한 手数料 賦課 (1950, 11 現在 65個國 ○는 있음 ×는 없음 ···는 未詳)

註: (1) 모스림 婚姻

(2) 一般婚姻에 限함

(3) 公的 申告義務 없음

(4) 어떤 州에서는 地方官庁이 若干의 手数料 (fee)를 当事者로 부터 徴收하여 州에 納付하고 있다

(5) 大体로 州登記所가 申告의 義務를 負担하고 있지 않으므로 裁判에 所要된 費用은 法院当局이 訴訟当事者로 부터

徵收하고 있다

(6) 여기에서 使用한 바의 雜婚은 實在하지 않는다

(7) 宣誓料 (proclamation fee)

(8) 모스렘敎徒의 一般人에 限하고 관드라 婚姻에는 申告賦課金을 負担시키지 않음,

(9) 모스렘敎人의 雜婚에 對해서는 25센트의 印紙稅 (Stamp fee)를 徵收하고 있으나 其外의 雜婚에 對해서는 賦課金이 없음,

(10) 여기의 情報는 뉴사우즈 웨일즈州 (New South wales) 퀸란드 (Queenland) 빅토리아 (Victoria) 사우즈 오스 레일리아 (South Australia) 및 타스마니아 (Tasmania) 州의 것으로 웨스턴 오스

트레일리아 (Western Australia) 에서는 賦課金이 있고 首都地域 (Capital Territory) 에 관한 情報는 入手不可함

第9表에서 보면 資料가 入手된 62個國中 單只 4個國만이 出生入籍 申告 (initial registration) 에 賦課金 (fee) 을 徵收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國家로서는 도미니카 共和國, 볼리비아, 하이티 및 폴투갈이나 死亡과 死産의 경우도 全然 同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婚姻申告는 情報入手可能한 57個國中 16個國이 賦課金을 徵收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國家로서는 에쿠드, 美國內의 一部州와 라틴 아메리카內의 7個國, 亞細亞에서 4

個國 波蘭에서 2個國,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個州로서 모두 16個國이다.

周知하다시피 亞細亞와 라틴아메리카의 記錄된 婚姻率(recorded marriage rate)을 爲始한 世界 各國의 記錄된 婚姻率은 予想率보다 下回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實際上의 婚姻率보다 記錄된 婚姻率이 下回하는 理由中의 하나는 婚姻申告에 賦課金을 徵收한다는 理由때문이다.

盛者必衰不準이 低位에 있어서 所得이 낮은 國家의 一般國民에게 婚姻申告에 賦課金을 支拂하게 한다는 것은 事件申告側으로 볼때 矛盾이 있다.

그로 因해서 "合意上"(consensual)의 婚姻이 盛行하게 되는 것이다.

萬若 宗教婚姻에 있어서 賦課金을 徵收하면 一般 婚姻申告 亦是 遲滯 或은 漏落될 憂慮가 있다

따라서 賦課金의 徵收가 合意上의 婚姻이던 宗教上의 婚姻이던 間에 婚姻申告를 阻害시키는 要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賦課金이 申告를 徹底히 하지 못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와 反対로 申告를 徹底히 하게 하는 要素라고 仮定할 수도 있을 것이다

賦課金의 徵回로 婚姻申告가 徹底히 되지 못한 例를 파나마, 니카라과, 페루, 과테말라 및 타이랜드에서 보아온 바인데 이들 國家가 婚姻申告時의 賦課金을 徵収하고 난 後에도 亦是 婚姻統計가 不完全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

다. 第9表上의 賦課金 徵收에 있어서 어느 動態事件 以上으로 徵收하고 있는 것이 離婚申告이다

報告된 43個國中 13個國이 申告時에 賦課金의 支払을 要하고 있다 이들 國家는 美國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各國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充分한 報告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은 賦課金의 徵收를 離婚判決의 費用으로서 法院이 當事者에게 賦課하기 때문이다

離婚申告에 賦課하는 賦課金이 離婚統計上에 미치는 效果를 안다는 것은 甚히 困難한 바 있다

D. 申告履行 期日

動態事件의 申告를 履行시키기 위해서는 届出者 (informent)가 法定期日 內에 履行하여야

할 時限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基本的인 事由로 因해서 各國은 申告法上에 申告履行期日을 特히 規定하고 있다.

ㅅ 國際勸告

各國이 設定할 法定期間은 國家的인 事情에 따라 各其 相異한 것이므로 國際的인 標準을 세우기는 不可能하나 動態統計制度上에 나타나는 比重이 무겁다는 事實을 喚起시키기 爲해서 國際聯合은 一般的인 勸告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가. 申告履行日時

"動態事件의 發生에서 申告履行間의 許容될 最大期間은 그 國家에 따라는 諸與件을 參酌하되 可能한 限 申告上의 諸般事實을 正確하고 迅速하게 處理할 수 있는 期間內로 短縮시켜

야 한다"

모든 動態事件 特히 出生申告를 即刻的으로 한다는 것은 몇가지 見地에서 볼때 그 重要性이 있는 것이다

첫째로 正確한 情報를 提供할 届出者로 볼때는 時日이 經過하므로 記憶이 희미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動態事件에 관한 資料蒐集을 爲해서 申告制度가 事件発生 以後 相当한 時日이 經過한 다음 情報를 收集하는 調査(survey)에 代身해서 하고 있다는 根本趣旨로 봐서도 알 수 있다

事実 記憶에 依한 事件의 眞想은 事件의 発生과 同時에 記録된 資料보다 그 信賴性이 낮다는 것은 言及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申告期間의 設定에 考慮되어야 할 것은 不正確하고 不完全한 報告를 하지 않을 期間內에 있다는 것을 留意하여야 한다.

可能한 限 發生과 申告의 時区間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욱더 正確한 情報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째로 即刻的인 申告로 因한 利点이란 地方水準에 있는 保健当局이 産後保護 (post-natal case) 또는 優良兒 診療 (well baby clinics) 予防接種, 不具兒童에 관한 予防 또는 公共援助 計劃을 樹立하는 指標로서 使用할 수 있도록 이 記錄이 保障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申告가 없다면 새로히 登場한 計劃은 重大한 障碍에 부디치게 되어 國民은

被害를 받게 될 것이다.

끝으로 即刻的인 申告가 갖어올 또하나의 利点이란 國家的 水準이나 地方的 水準에 있어서 出生, 死亡, 婚姻, 離婚에 관한 더욱 現実的인 統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勿論 現実的인 統計를 얻는데는 여러가지 要因이 介在될 것이지만 即刻的인 申告가 무엇보다도 重要하고 根本的인 것이다.

即刻的인 申告가 完全하고 正確한 申告를 하게 하고 現実的인 申告를 保障하며 現実的인 統計를 作成할 수 있게 한다는 点을 度外視하고라도 動態事件申告의 法定期間의 設定은 그 나라의 地理的 條件, 気候, 풍속이나 이션, 文化等과 같은 要件이 決定因이라는 것이 認定되고 있다.

通信網과 輸送施設이 発達하지 못한 国家 또는 申告所가 遠距離에 있거나 季節変動이 極甚한 地方의 申告期間이 너무 짧다면 자칫하면 申告한 意思을 阻喪시킬 것이다

또한 이로 因해서 申告期間内에 履行하지 못하게 되어 苛酷한 罰科金을 負荷받게 되며 申告法違反에 対한 法院의 裁次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申告를 忌避하게 될 것이다

이런 点에 着眼해서 어떤 国家에서는 法律上의 申告性을 느껴 두 個의 期間을 設定하여 하나는 都市와 人口가 稠密한 地域에 適用시키고 다른 하나는 僻地에 適用시키는 境遇가 있다 이에 対한 情報는 以下의 第10表에 提示되고 있다

第10表

出生、死亡、死産、婚姻、離婚의 申告義行期間

(1950、1、1 現在 65個國表……는 情報入手不能)

國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아프리카					
에티오피	8日	24時	24時	(1)	(2)
南阿聯邦	7月、20日(3)	24時 30日(4)	7月、30日	7日	(2)
北美					
캐나다	10~30日(5)	(6)	···	2~15日(7)	(8)
英領콜럼비아(州)	30日	(6)	30日	48時	1日
코스타리카	25日	24時	25日	(9)	···
쿠바	1年	即刻	即刻	5日(10)	···
도미니카	30、60日(11)	1日	1日	(1)	60日

国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엘살바돌	15日	当日	(12)	8日(13)	不確定
파테말라	8〃	24時	24時	8日	8日
하이티	30〃	24〃	24〃	10〃	30〃
혼두라스	8〃	24〃	(12)	(1)	不確定
메시고	15,40〃(14)	即刻	・・・	(1)	・・・
니카라과	8日	24時	・・・	5日	5日
파나마	8〃	8日	8日	不確定	不確定
美国	1~15日(15)	30日(16)	3日(16)	5~30日(17)	10~30日(17)
北美					
아르헨티나	3,8日(18)	24時	3,8日(18)	8日	(19)
볼리비아	8日	8日	8日	8〃	1年
부라질	15,90日(20)	24時 90日(20)	15,90日(20)	(1)	(19)
칠리	60日	3日	3日	(1)	(19)

國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콜롬비아	8日	早速寺時日	(12)	30日	(19)
에콰돌	30〃	(6)	(6)	10〃	...
페루	8〃	24時	(12)	(1)	不確定
파라과이	8.15日 (21)	24〃	24時	(1)	(19)
베네주엘라	20日	...	...	(1)	...
우루과이	...	...	...	...	...
亞細亞					
버마	1週	24時 (22) 1週	...	(12)	(2)
실론	42日	5日	5日	(1)	(2)
인도 마드라스(州)	2週	4〃	...	(12)	(12)
인도네시아 (欧羅人)	(23) 3.10日	(23) 3.10日	(23) 3.10日	(1)	6月

國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이 란	...	...	...	...	...
이스라엘	15日	24, 28時 (24)	15日	(1)	(2)
日本	14〃	7日	7〃	(1)	10日 (25)
요르단	15〃	3〃	(12)	(1)	(2)
레바논	15日 (26)	15日 (26)	(12)	15日 (26)	15日
파키스탄	4〃	4〃	4日	(12)	(12)
필리핀	30〃	48時	48時	15, 30日 (27)	(19)
시리아	10, 30日 (28)	10, 30日 (28)	(12)	10, 30日 (28)	10, 30日 (28)
타이란드	15日	1日	1日	...	...
터어키	30日	15日	(12)	30日	(2)
欧洲					
오스트리아	1週	1日	1日	結婚日	不確定
벨지움	3日	(29)	3〃	(1)	2月

国	籍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체	코	7日	次週	次週	(1)	(2)
덴	마	크	2.8日(30)	埋葬即後	2.8日(30)	結婚日	(2)
핀	란	드	6週.2月(31)	遅滞なし	遅滞なし	(32)	1週
佛	蘭	西	3日	24時	3日	(1)	不確定
独		逸	1週	平常翌日	1週	(1)	(2)
그	리	스	10日	24時	10日	30日	30日
아	일	란	드	42"	5.4日(33)	(12)	(34)	(19)
아	이스	란	드	不確定	不確定	不確定	不確定	(2)
伊	太	利	10日	24時	10日	(35)	(19)
릭	텐스	타	인	3"	1日	3"	...	...
모	나	코	3"	...	...	...	...	...
비	엘	란	드	3"	5日	5日	(1)	6月
눌	웨	이	4週	8"	4週	(1)	(2)

國 名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폴 란 드	2週	24時	2週	(1)	...
폴 튜 갈	30日	24時	1日	(35)	5日
스 페 인	3日	1日	1日	(1)	(19)
스 웨 덴	6週	早速한 時日	早速한 時日	早速한 時日	3日
스 위 즈 란 드	3日	2日	3日	(1)	8日
英 國					
잉 그 란 드 웨 일 즈	42日	5日	42日	(1)	(2)
北 해 아 이 란 드	42〃	5〃	(42)	(36)	(2)
스 코 트 란 드	21〃	8〃	21日	3日	(2)
유 고 스 라 비 아	15〃	3〃	24時	(1)	(2)
大 洋 洲					
오 스 트 레 일 아	(39) 42-60日	(38) 7-30日	(39)	(40) 7-31日	(2)
뉴 사 우 즈 웨 일 즈(州)	60〃	30〃	21日	當該日	(2)

國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뉴지랜드					
歐洲人	62日	3.7日 (41)	62日	(1)	(2)
마오리人	2月	(42)	2月	(12)	...

2. 各國의 實際의 差異로 因한 效果

"時日(Time)의 規定上 差異의 申告에 許容된 法定期間과 結果될 動態統計의 質에는 如斯한 關係가 있는가를 實証하기 爲하여 各國의 法規上에 許容된 法定期間을 第10表에 一括揭載하였다

(a) 出生

出生申告 許容期間의 長短의 差異는 第10

表를 보므로 明白하다

最短期는 1日 最長期는 90日로 되어 있는데 이 最短期인 1日(24時)은 美國의 人口請願地域에 施行되고 있으며 90日을 許容하는 國家는 부러질로서 申告所와의 最短距離가 30km 以上이고 鉄路가 없는 곳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期間의 両断에 対한 出生申告期間의 集中은 "15日 또는 그 以下"로 되어 있는데 65個國中 半数以上이 이에 該当하고 있다

申告期間이 여러가지 相異한 條件에 따라 다르는 10個國은 그 要因이 事件発生地域의 都市化의 程度 申告所와의 距離, 届出者의 身分(父 或은 母) 或은 핀란드에서는 申告形

態 即 商品해 들것은 도미니카共和國과 시리아에서도 파라과이, 덴마크, 핀란드, 美國, 메시코, 또는 베네주엘라와 같이 諸般 環境을 考慮하고 있다는 点이다

이 表를 檢討하면 申告期間이 比較的 長期間을 許容하고 있는 國家가 반드시 申告의 徹底를 期하고 있다는 事実이 아니다

그러나 第1.0表에 提示한 申告期間은 民法或은 動態統計法에 있는 法定期限이라는 事実이다 即 動態申告가 國民의 義務로서의 制度化가 잘 되어 있지 않는 國家에 있어서 法定期限의 実質的인 修正이 必要하다는 것이 아니다

実際로 諸般理由로 因하여 申告期間이 1年까지 延長되는 수가 許多하다

이러한 狀態下에서 法定期間과 申告의 完全性과의 關係를 第10表에서 본다는 것은 아무런 価値가 없다

(b) 死 亡

死亡申告는 警察規則(police Regulations)나 國民保健事業이 流行性疾患으로 死亡한 資料를 必要로 하거나 또는 埋藏許可를 하는데 先行條件이 되기 때문에 第10表에 依하면 61個國中 16個國이 死亡申告를 24時間以內에 申告토록 하고 있으며 6個國이 "早速히" (Speedily) "急速히" (very quickly), "同日中로" (the same day), "即刻的으로" (immediately) 申告토록 하고 있다

單只 8個國이 5日을 經過하고 있다

全体的으로 볼때 対多数国가 死亡에 있어서 5日以内에 申告토록 하고 있다

出生申告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個国이 申告所의 距離를 考慮하여 期限을 相異하게 定하고 있다

이 5個国 換言하면 南亜聯邦, 부라질, 이스라엘 시리아 및 뉴지랜드, 南亜聯邦, 부라질, 이스라엘의 2地域에서 부라질地方의 90日의 差異가 있다

死亡申告의 "許容期限" (Time allowed) 이 統計上에 가지는 意味란 分明치 못한 것이다 去定期限이 死亡申告를 完全하게 하는 決定的인 要因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더구나 死亡申告의 경우 第10表上의 申告期間은 多少 確定되고 있는데 그 같은 理由로 볼때 過去 死亡申告란 出生申告에 適用할

수 있는 그 같은 意味의 "遲滯된" 申告 (delayed) 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死亡申告가 遲延될 理由가 없으므로 申告期間도 延長시킬 必要가 없는 것이다.

(C) 死 産

第10表에 나타난 65個國中 55個國이 死産 申告를 하고 있으나 情報를 얻은 것은 46個國뿐이다. 이 46個國中 出生申告期間 或은 死亡申告期間과 死産申告期間이 틀이는 國家는 單只 2個國뿐이다.

其外의 다른 國家는 모두 이 兩者 (出生, 死亡)의 어느 便과 同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出生申告期間과 死産申告期間이 同一한 國家는 18個國이고 死亡申告期間과 死産申告期間 同一한 國家는 20個國 兩者 (出生, 死亡)의 期間과 同

一한 國家는 5個國이 있다 이것이 意味하는 바는 死産申告의 時限이 出生및 死亡申告의 範囲內에 있다는 것이다 死産申告에 있어 "遲滯없이" (Without delay) "早速히" (Speedly) "同日중" (The same day)로된 나라는 3個國이고 "24時間以內"에 申告토록된 나라는 10個國 余他는 6고日以內에 申告하면 되는 것이므로 되어 있다 死産申告에 있어 伸縮性 있는 申告期間을 設定한 國家는 3個國에 不過한데 이것은 아마 報告된 死産이 거의 病院에서 發生하며 農村이나 僻地의 死産은 거의 申告되지 않는다는 理由에서일 것이다

申告의 時間問題에 있어서 死産은 出生, 死亡申告와 아주 密接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届出者에 対해서 論設한 第V章에서

報告된 國家中 89%가 死産申告에 있어서 出生의 「패턴」을 따르고 있었으며 나머지 11%가 死亡의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보아왔다. 死産統計가 여러가지 理由로 因하여 欠陷을 招來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申告期間이 死産申告의 完全性에 미치는 效果란 微微한 것이다.

(d) 婚 姻

大槪의 國家에서는 婚姻의 合法性을 主張하기 위하여 公証人(civil officer)의 立会下에 婚姻을 挙行하기 때문에 世界大部分의 國家의 婚姻申告는 自動的으로 婚礼挙行時에 届出되는 傾向이 있다. 第10表에서 보면 情報入手된 56個國中 25個國이 届出日字를 "結婚日" 또는 "儀式과 同時"로 하고 있다. 7個國은 "即刻的으로" 要求하는데서 부터 最大로 30日까지

融通性 있는 期間을 設定하고 있으며 7個國中 6個國은 結婚이 一般婚姻인가 或은 宗教婚姻인가에 따라 다른 日字를 適用하고 있다 婚姻申告期間의 長短이 婚姻申告의 完全性이나 婚姻統計의 完全性으로 볼때는 그 範囲(Coverage)가 正確度에 重要한 要因은 이에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ㄷ) 離 婚

離婚申告의 責任은 法院 或은 이의 責任을 負荷받은 当局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은 申告記錄을 司法行政의 副産物로서 判決이 宣告된 即刻 記錄되는 것이다 더구나 어떤 國家에서는 法院登記所이든 或은 一般申告所이든간에 離婚申告는 取消의 法律的 効果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比較的 迅速하게 處理되는 傾向이 있다

第10表의 情報가 이같은 一般的인 事実을 立証하

고 있다. 65個國中 9個國의 離婚은 여기에서 使用한 離婚의 意味와는 全然 다른 것이며 2個國(印度 및 파키스탄)은 種族 및 地域社会의 法律에 依해서 申告할 離婚이 制限되고 있는가 하면 6個國은 申告期限이 確定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11個國에 対해서는 情報를 入手할 수 없었고 余他 37個國中 18個國의 婚姻申告는 判決을 宣言하는 当局側에 있다. 이 境遇의 申告는 遅滞가 없을 것이며 其他의 特別한 証明이 없어도 申告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3個國의 申告期間이 3日乃至 60日로 되어 있으며 1個國이 1年을 許容하고 있고 2個國이 6個月以上에 申告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事件의 性質로나 申告節次의 性格으로 봐서 離婚申告上에는 不完全性이란 있을것 같지 않으며 더구나 申告期間 問題가 그다지 영향을 미칠것 같지 않다.

E. 遲滯申告 (delayed registration)

動態事件의 特定申告期間이 各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定되고 있기 때문에 이 法定期間滿了后에 申告된 事件은 遲滯申告 (delayed registration)된 것으로 이것이 申告 될 때는 申告時에 따라 若干 다른 区分이 必要하다. 이같은 遲滯申告의 用語로서는 "故意的인 遲滯" (delinquent), "普通失期" (late) "長期失期" (Belated) 한 것으로 区分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特定한 期間이 滿了된 后에 申告된 것을 意味한다. 用語上의 相異를 無視하고라도 遲滯申告의 問題는 極히 重要한 것이다.

實際上 法定期間을 徹底히 遵守하는 國家는 없는 것이다. 몇가지 理由로서 事件의 어떤 것은 期間이 滿了된 后에도 申告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事件은 法定期間이 満了된 后 数日 或은 数週日을 経過한 後에도 申告하고 있으며 甚至於는 数年이 経過된 것도 있다 이러한 事件의 申告는 特殊한 個人의 必要가 있으므로 申告하는 것이다 法定期間이 経過한 後에 申告가 問題되는 것은 "遅滞" 申告가 出生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事実로 볼 때 明白하게 된다 出生申告에 遅滞가 일어나는 것은 몇가지 原因에 基因하는데 그 하나의 要因으로서는 無関心 乃至 無知인 것이나 더욱더 重要한 原因이란 申告記錄이 必要해질 때 까지 미루는 버릇 (procrastination)이다 이에 反해서 死亡申告는 可及的 早速히 申告되는 傾向이 있다 死産에 있어서는 申告記錄의 効用性을 誘引할 만한 事実이 없으므로 最大限의 期間까지 延長시키는 것이다 好姻과 離婚劇을 보

연 儀式을 擧行한 時或은 判決이 宣言된 即刻 申告되므로 普通 遲滯되는 傾向이 없다. 이러한 諸規定으로 볼 때 "遲滯申告"의 問題는 出生에 가장 重要한 問題를 提起시키는 것이다.

ㅅ 國際勸告

槪念을 明白히 하므로서 不必要한 混乱을 避하기 爲하여는 事件 發生后 比較的 短時日內에 申告하므로 現實的인 申告를 하는 動態事件과 事件 發生后 數年이 經過한 後 申告될 動態事件과의 區分을 明白히 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區分은 客觀的 妥当性을 갖는데 申告上의 長 短期遲滯의 要因을 뚜렷하게 區分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區分은 故意的인 義務의 不履行 一時的인 履行의 不能 無関心 或은 其他로서 發生后 履行의 長 短期間을 決定하는 要因으로

依用하는 것이다. 이같은 要因으로 國際聯合의 勸告는 "遲滯된" 申告란 設定期間이 事件發生后 1年을 超過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現實的인 申告를 하기 爲해서 設定된 期限 以后 1年을 超過하지 않고 設定 期間內에 一般的인 方法 (届出者에 依해서 証拠가 申告所에 届出되며 事實을 確認하는) 에 依해서 申告될 수 있는 申告를 말한다고 하였다. 1年 以前에 發生하였으나 申告를 畢하지 못하여 宣誓書 (Affidavits) 証憑書式은 裁判 (court offearance) 에 依하여 確認된 出生, 死亡申告를 特히 "宣告된" (declared) 申告라 할 수 있다. 國際聯合은 現在하는 述語의 方法을 明白히 하기 爲하여 2個條의 諸原則 (5) 에서 下記와 같은 定義를 勸告하고 있다.

" 2/3, 遲滯申告에 對한 規定

"(a) 어떠한 動態統計制度라도 遲滯 或은 失期(late)한 申告가 不可避하게 다르고 있다는 事實을 設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即 基準申告期가 滿了된 后 申告되는 것이 있다면 이같은 申告로 말미아마 申告節次를 調整해야 할 것이다.

"(b) 未申告分에 對한 申告措置를 講究해 주어야 할것이나 이것이 全般的인 申告를 沮害시키는 結果를 갖어 와서는 안된다.

" 2/4, 宣告事件(declared events) 申告規定

"(a) 어떠한 動態申告制度 일지라도 12個月 以前에 發生된 것으로 正當하다고 推定되는 死亡 或은 出生으로서 이같은 事件을 救濟할 方途가 없는 이같은 事件은 宣告事件(declared events)으

로서의 申告로 認定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b) 이같은 "宣告事件" (declared event) 이 宣告 (declaration) 에 依하여 申告될 수 있는 規定이 있어야 하며 規定은 訴訟節次나 証憑書 및 虛申請 (affidavit) 에 依해서 適切한 罰金을 賦課하거나 또는 証証을 許容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같은 措置의 形態나 範囲는 各國의 事情에 따라 決定될 問題이다."

原則 2/3 條의 趣旨는 "遲滯申告" (delayed registration) 라는 用語를 標準化하여 法的 申告期間의 滿了后에 있어서의 申告概念을 다른것이나 이를 申告하려면 法律에 依한 傍証을 要하는 勸告를 하고 있다.

申告期間에 對해서 이 原則은 言及치 않고 있으나 "確定申告" (declared registration)

의 標準 (原則 2/4條) 을 發生后 12個月 以后에 申告된 遲滯申告를 意味한다. 모든 事件이 發生한지 一年 以內에 申告된다고 期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같은 申告를 履行시키는 方途를 생각하여 申告를 沮喪시키지 않고 申告케 하는 方途가 講究되야 할 것인데 現實的인 申告를 履行시키기 爲해서 要件을 具備시키는 方途다.

그런데 여기에 明白히 해둘 것은 法定期日內에 申告치 않은데 對해서만 罰科金을 負担시킨 것이다. "宣告事件" (declared events) 에 對한 原則 2/4條의 勸告는 1年以前에 發生했으나 申告 未畢한 出生에 適用시킬 수 있음은 勿論 稅金을 받을 수 없으나 各國의 法律에 따라 "類推" (presumed) 되는 死亡에도 適用 可能하다 이 兩者는 現實的인 申告를

함에 있어서 差異가 있는데 宣告된 出生 或은
宣告된 死亡이 合法的으로
申告되기 위하여 要하는 証憑의 形態나 範囲는
各國의 法律에 規定되어야 할 것이며 어디까지
나 統計라는 目的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窮極的 目標는 即刻的인 申告를 督励하므로서
"遅滞" 또는 "宣告" 申告가 없도록 継続的
인 努力이 傾注되야 할 것이다.

2. 各國의 実例

法定期間이 満了된 后의 出生申告에 対한 特別
規定이 疑制届出者 (would-be informants)를 取
扱하고 있기 때문에 大概의 国家가 法定期間을
延長시키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期間의
延長이 申告의 区分을 模湖하게 하고 있다.
国際聯合이 勧告한바 있는 "遅滞" 申告期

間에 該当할 実際申告期間 (practical periods)
을 設定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情報入手한 바
에 依하면 6個國이나 있다. 典型的인 國家를
例로 들면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出生한 后 1年
以內에 申告된 出生은 모두 一般的인 出生으로
看做하고 있다. 法定期間 (1才未滿)을 "失期
申告" (late) 或은 "怠慢申告" (delinquent)
라고 하고 있으나 申告의 節次는 現在申告
(current)와 全然 同一하다

一年以上 經過한 出生申告를 "遲滯" (delayed)
申告라고 하며 이의 申告에는 証憑을 要하고
罰金을 賦課시키고 있다.

그리스와 실론에서는 正常的인 申告期間으로서
90日 (3個月)을 許容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같이 아이스랜드는 12個月을 許容하고 있고 뉴질

란드는 6個月이다. 美國은 各州에 따라 다른데 最高法定期間이 15日로 되어 있으나 出生后 4年 以內에 申告한 出生을 "遲滯" (delayed) 된 申告로 規定하고 있는 州도 있다. 美國의 遲滯된 出生申告問題가 但時 問題되어 왔으나 出生 証明書가 急激스럽게 所要되된 二次大战 初期에 더욱 問題視된 것이다 出生証明書가 所要된 것은 兵役에 関聯된 年令証明 뿐만 아니라 國防産業에 就業하는데 必要로 했기 때문이다. 結果 게 申告所는 証明発給에 또는 宣告申告 (declared)의 適用을 爲한 查証問題等 갈잡을 수 없는 混乱에 빠지게 되어 1941年에 드디어 各州間의 標準을 統一할 必要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美國에 있어 "遲滯" 申告에 관한 州法律의 現況勢를 実証하려면 South

carolina州의 新法令을 例로 할 수 있는데 (7) 生后 第4回 生日 以前에서 出生 11日 以后에 申告된 出生을 '遲延'(belated) 申告라고 第4日째를 經過하여 申告되지 않는 如何한 出生도 모두 "遲延"된 申告로 하고 있다. South carolina는 1952年 4月 23日에 遲滯된 出生證明 發給을 統制하기 위하여 새로운 規定을 適用했다. 州 申告官(State Registrar)이 報告하기를 新法規가 發効한 以后 遲滯된 申告의 標準이 確定되었을 뿐 아니라 現在의 出生申告를 더욱더 即刻的으로 履行하게끔 刺戟하였다. "新法規는 国民保健協会(public Health Conference)가 1951年에 記錄統計에서 勸告한 바를 따른 것으로서

'出生后 11日以上 비 등(Fourth Sixth day)

以內의 出生証明은 모두 "遲延" (belated) 出生으로 하며 이 같은 証明書를 申告所가 接受할 때에는 出生時의 立会者 또는 母의 署名確認을 받아야 한다.

"2. 生后 4年以上이 經過한 者의 出生은 遲滯된 事由를 記載해야 하며 이에 對한 証憑書가 添付되어야 한다.

"3. 遲滯된 出生記錄이 21才 以上된 者의 것일 경우에는 申告 接受者 (戶籍吏)가 이를 確認하여야 하며 한편 어느 一方의 父母 또는 父母가 死亡하였을 경우에는 그 保護者가 証明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事件에는 모두 署名捺印이 必要하다." 이와 反對로 民法에 基礎를 두고 있는 例를 利太利로 하여보면 利太利의 一般申

告法令 (civil Registration Regulation)
第68條에서

"出生后 10年이 經過한 以后에 報告되는 出生은 出生申告에 관한 第I項 B의 特別한 規定에 依한다. 그러나 이로서 法的 效力을 發生하거나 이를 抹卒 또는 証明書로 發給할 수 없으며 이의 法的 效力發生은 法的訂正節次 (statutory correction procedure)를 밟아 法院의 判決이 나리므로서 可能하다."

3. 動態統計에 対한 "遅滞" 및 "宣告" (delayed and declared) 申告의 意味

遅滞된 申告가 動態統計의 質에 미치는 意味란 두가지가 있다. 첫째로 遅滞된 申告 및 宣告된 申告가 영향을 받을 範囲 即 失期(late) 申告의 量은 바로 過去 数年에 걸친 申告가

不完全하였다는 指標가 되고 現在 이같은 失期申告가 算入되고 있다는 事実이다

둘째로 動態統計上에 미치는 遅滞申告 및 宣告申告가 갖는 意味란 記錄上의 不正確과 虛偽를 造作할 憂慮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記錄上의 確実性을 保障하기 爲해서 原則 第214條가 提訴한 바를 보면 日時 및 場所에 관한 証憑書가 宣告申告(declared)에 있어 첫째 必要하며 裁判節次를 取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牽制方法의 必要性이 記定되고 있으나 規則에 따르는 여러가지 隘路点 特히 法院의 訴訟에 経費가 드는 경우라면 그로 因하여 오히려 申告가 沮害된다는 事実을 알아야 할 것이다 例컨데 日本은 法的 申告期間을 15日에서 30日로 延長했는데 이것은 15日以內에

申告치 못한 者 (MUKH tays) 들이 法院訴訟에 費用이 들뿐 아니라 節次가 複雜하므로 遲滯된 申告를 意識的으로 拒否한다는 事實을 考慮한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問題解決에 앞서 法的 要件과 實際的인 考慮가 均衡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第 Ⅶ 章

登錄簿와 申告書

第Ⅲ章 登錄簿과 申告書

(The Register and the Registration Record)

第Ⅴ章과 Ⅲ章에서는 "登錄官" (registrar) 및 "屆出者" (informant)의 役割, 또는 "申告" 方法에 對해서 敍述하였다.

本章에서는 "登錄簿" (戶籍簿)와 "申告書" 自體의 固有한 問題에 미치는 여러가지 効果나 또는 法的 文書로서 또는 動態統計의 資料로서 그 같은 記錄이 갖는 一般的인 性格을 다루기로 한다.

國際聯合이 이 "申告書" (Registration record)를 定義하기를 "發生事實을 證明하며 動態事件의 如何한 性格을 證明한 法的文書"라 하고 이 申告書를 一定한 書類 整理計劃에 따라 蒐集하여 名簿로 作成하거나 或은 書類로 綴한 것을 "登錄簿"

(register) 라고 定義하고 있다. 따라서 法的 申告나 또는 登錄簿의 樣式과 內容은 各國의 法律로서 定해지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大槪의 國家가 動態統計를 直接 申告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申告時에 別途의 統計報告를 하도록하고 있기때문에 신고서 그自体에 動態統計를 直接 얻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實際에 있어서는 届出者가 申告한 後 相当한 時日이 經過한 登錄簿를 寫本하여 이를 統計報告로 하고있다. 따라서 考慮해야할 登錄簿나 個個의 申告書의 性格에는 一定한 原則이 있는 것이다. 그같은 申告書의 保存이나 登錄簿에 記入할 特別한 事項을 알아 내는데 必要한 方法等이 問題点이다.

이같은 諸問題에 관한 情報가 入手된 諸國의 實例는 以下에 記述하고 있다.

4. 登錄紙의 性格과 形態

1. 登錄紙의 基本形態

形態에 관한 限 어떠한 登錄紙 일지라도 두 가지 類型中의 어느 하나에 屬한다. 一次申告된 것은 帳紙形態 (book-type)를 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루즈릴形態 (loose-leaf type ; 加除式)를 가질 것이다. 帳紙形態의 登錄紙는 또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철리의 登錄紙와 같이 1個의 動態事件에 対해서 全페이지 (entire page)를 許容하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로는 스코트랜드와 같이 同一한 페이지에 數個의 動態事件을 記載하는 것이 있다.

便宜上 前者를 單式登錄紙 (a page register) 라고 부르며 複式登錄紙를 台帳式登錄紙 (the ledger type register) 라고 부르기도 한다.

台帳式登錄法에서는 必要한 項目이나 記載事項은 페이지 머리 (box-head)에서 부터 始作한다.

따라서 申告事件에 관한 記載事項은 主書 下端欄이나 空欄에 쓰게 되어 있다.

한편 單式登記法는 情報의 追加가 便利하고 削除記事가 容易하다.

(4) 各國의 實例

各國이 採用하고 있는 登錄法 (戶籍法)의 形態를 明白히 하기 위해서 第11表는 65個國中 記錄法의 形態가 台帳 (a book)의 形態인가 或은 個別的인 單記名法 (individual record register)인 가를 提示하고 있다.

第11表 動態事件의 申告에 使用되는 各國의 記錄形態

(1950. 1. 1 現在 65個國)

〔宗教 및 法院 当局에서 使用되는 것은 包含되지 않았음 表…는 情報入手不可〕

國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아프리카					
에잘트	台帳	台帳	出生.死亡台帳	宗教記錄	法院記錄
南亞聯邦	…	…	…	…	
北美					
캐나다	個別	個別	個別	個別	個別(1)
코스타리카	台帳(2)	台帳(2)	死亡台帳(2)	個別	婚姻台帳
쿠바	台帳	台帳	台帳(2)	台帳	〃
도미니카	〃	〃	出生台帳	〃	台帳
에콰돌	〃	〃	(4)	〃	〃
과테말라	〃	〃	出生.死亡台帳	〃	〃
하이티	〃	〃	出生台帳	〃	〃

國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雉婚
혼두라스	台帳	台帳	(6)	台帳	台帳(5)
메시코	〃	〃	出生死亡台帳	〃	台帳
니카라과	〃	〃	〃	〃	台帳(5)
파나마	〃	〃	〃	〃	婚姻台帳
美國	個別	個別	個別	個別(7)	個別(7)
北美					
아르헨티나	台帳	台帳	死亡台帳	台帳	(8)
볼리비아	〃	〃	台帳	〃	婚姻台帳
부라질	〃	〃	出生死亡台帳	〃	(8)
칠리	〃	〃	台帳	〃	(8)
콜럼비아	〃	〃	(9)	〃	(8)
에과돌	〃	〃	死亡台帳	〃	台帳(5)
파라과이	〃	〃	〃	〃	(8)
페루	〃	〃	(9)	〃	婚姻台帳

回教	出生	死亡	死產	婚姻	離婚
우루과이	〃	〃	死亡台帳	台帳	. .
베네주엘라	〃	〃	出生死亡台帳	〃	婚姻台帳
亞細亞					
버마	〃	〃	出生台帳	(10)	法院記錄
실론	〃	〃	台帳	台帳	〃 (11)
태국(12)					
마드라스	台帳	台帳	出生死亡台帳	(10)	(10)
인도네시아(13)(歐洲人)	〃	〃	死亡台帳	台帳	婚姻台帳
이란	〃	〃	〃	〃	台帳
이스라엘	個別	個別	個別	個別	個別
日本	〃	〃	〃	〃	〃
요단	〃	〃	(9)	宗教記錄	法院記錄
레바논	台帳	台帳	(9)	台帳	台帳
파키스탄					

國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덴마크	〃	〃	出生台帳	(10)	(10)
핀란드	台帳	台帳	出生死亡台帳(18)	台帳	住民登錄法
佛蘭西	〃	〃	死亡台帳	〃	婚姻台帳
獨逸	〃	〃	〃	本籍法	法院記錄
그리스	〃	〃	出生台帳	台帳	婚姻台帳
룩셈부르그	台帳	台帳	出生台帳	(10)	(10)
벨기에	個別	個別	個別(15)	個別	(8)
시리아	台帳	台帳	(9)	台帳	婚姻台帳
아이란드	個別	個別	個別	個別	個別
터키	台帳	台帳	(4)	台帳	法院記錄
歐羅巴					
오스트리아	〃	〃	出生台帳	〃	婚姻台帳
불가리	〃	〃	死亡台帳	〃	〃
체코	〃	〃	出生台帳	〃	法院記錄
덴마크	〃	〃	〃	〃	〃
핀란드	台帳	台帳	出生死亡台帳(18)	台帳	住民登錄法
佛蘭西	〃	〃	死亡台帳	〃	婚姻台帳
獨逸	〃	〃	〃	本籍法	法院記錄
그리스	〃	〃	出生台帳	台帳	婚姻台帳

國家	出生	死亡	死產	婚姻	離婚
아이스란드	台帳	台帳	出生台帳	台帳	法院記錄
아일란드	〃	〃	(9)	〃	(8)
利太利	〃	〃	出生台帳	〃	(8)
리텐스타인	〃	〃	〃	〃	婚姻台帳
룩셈불그	〃	〃	死亡台帳	〃	台帳
모나코	〃	〃	〃	〃	〃
비텔란드	〃	〃	死亡台帳	〃	婚姻台帳
놀웨이	〃	〃	出生台帳	〃	法院記錄
폴란드	個別	個別	個別(14)	個別	婚姻台帳
폴튜갈	台帳	台帳	死亡台帳	台帳	〃
스페인	〃	〃	台帳(3)	〃	(8)
스웨덴	〃	〃	出生台帳	〃	住民登錄簿
西班	台帳	台帳	出生台帳	台帳	婚姻台帳

國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英國:					
잉그란드웨일즈	台帳	台帳	台帳	台帳	法院記錄
北아일란드	〃	〃	(9)	〃	〃
스코트란드	〃	〃	出生台帳	〃	〃
유고	〃	〃	〃	〃	〃
大洋洲					
濠洲	〃	〃	出生死亡台帳	〃	〃
뉴지란드	〃	〃	出生台帳	〃	〃

第11表 註

(1) 大部分의 州에서는 法院記錄寫本으로 出生, 死亡, 婚姻申告所에 申告된다.

(參照 第1表의 註 (4))

(2) 出生은 1953年 死亡은 1951年에 別途의 "証明書" (certificates)가 使用되고

있다. 새로운 様式에 依하면 原本과 副本, 寫本으로 三通이 作成되어 副本은 中央申告所(Central Registro Civil)에, 寫本은 센서스局(Direccion General de Estadistica y Censos)에 送付되는데 医师의 出生, 死亡 証明書도 同封된다.

(3) 死亡 出生한 (死産) 胎児나 24時間을 生残치 못한 乳児는 公的인 記録様式 없는 特別한 台帳에 記録된다.

(4) 一般 申告書에서 申告를 強制하고 있지 않으나 申告된 것에 限해서만 出生 死亡申告所에서 整理하고 있다.

(5) 婚姻原本에다 婚姻解消의 事由를 記録 함.

(6) 一般申告所에서 強制申告시키고 있지 않으나 申告된 것에 限해서 出生申告所에서 取扱하고 있

(7) 美國에 있어서는 婚姻許可狀 (marriage license) 과 法院記錄을 쓰고 있는데 婚姻에 對해서는 全州의 3/4 雜婚은 1/2이 이를 使用하고 있으나 州動態統計 申告官 (State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에 寫本 或은 副本을 還付할 規定이 있다.

(8) 여기에 使用한 雜婚은 存在치 않음.

(9) 一般申告所에서는 強制申告시키지 않음.

(10) 一般市民層에는 強制婚姻申告가 없음

(參照 第1表)

註 (13) (17) (21)

雜婚은 種族法 및 慣習法에 依하여 認定됨.

(11) 一般 및 모스림 婚姻에 限한 것임.

칸드라 敎徒의 雜婚은 省申告所에 申告되고 있음.

(12) 出生. 死亡申告는 市 및 州令의 定하는 바에

따라 強制 申告됨 (參照 第1表 註 (16) (20))

婚姻 및 離婚의 強制申告 없음 (上記註 (10))

(13) 인도네시아 國民에 對한 出生, 死亡, 離婚, 死産, 婚姻의 強制申告였으나 그나라 國民의 10%를 占하는 歐洲人 및 中國人에 對해서만 強制申告시키고 있음. 모스렘敎人의 婚姻과 離婚 申告는 모스렘寺院에서 하고 있음.

(14) 出生兒가 살았던 죽었든간에 出生에서와 같은 樣式에 依함.

(15) 出生 또는 死亡証明

(16) 敎会에서는 出生申告簿에 一般的 告時에는 死亡 登錄簿에 記錄함.

× × ×

第11表에서 보면 첫째로 出生, 死亡, 死産, 婚姻申告는 台帳形態 (book-type)로서 申告되고

있는데 65個國中 單只 8個國이 個別的 即 루즈릎式 (loose-leaf) 登錄簿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表로서는 分明하지 않으나 50個國中 31個國이 台帳式登錄簿로서 各申告事件마다 全페이지를 許容하고 있는 單式形態 (single-page type)의 登錄簿를 使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婚姻申告에 처해서는 若干 複雜하게 되고 있는데 17個國이 法院의 記錄을 使用하고 있어 硏究할만한 實質的인 書式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婚姻申告를 一般申告所에서 하고 있는 國家中 個別的인 申告形態를 取하고 있는 國家가 5個國인데 反해 台帳을 使用하고 있는 國家가 28個國이나 된다.

(4) 記錄 및 統計에 미치는 差異

效果

台帳式登錄簿가 各國이 즐겨 使用하고 있는 理由를 쉽사리 알 수 있다. 그것은 動態의 記錄이 法的 記錄

이라는데 있다. 沿革上으로 볼 때 이 法的 記錄이 証憑書로서의 구실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保管하는 重要性이 컸던 것이다. 이같은 歷史的인 理由로서나 또는 安全하게 保管된다는 理由로서 最最의 教会登錄簿는 台帳의 形態를 가추었고 그 方法은 지금까지 維持되어 오고 있다. 이 같은 記錄文書의 保管形態는 相別的인 "루즈릎式" (loose-leaf) 保管形態의 것에 比해 安全할 뿐만 아니라 文書의 綴이나 索引을 容易하게 하는 一面도 가지는 것이다.

루즈릎式記錄이 台帳式으로 되자면 必要한 事項 即 姓名, 発生日字, 或은 申告日字別로 綴해 져야할 것이므로 그 量은 綴하는 方法 如何例를 들면 申告日字別과 같은 것으로 制限을 받는다. 父母 或은 親戚 以外의 証明 或은 葬儀

师가 届出者로 되어 있는 國家에는 其外의 問題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들의 報告를 받기 위하여 証明書様式이 먼저 医師, 助産員, 埋藏執行官等에 配付되어 必要한 事項을 記載署名한 다음 이 確認書는 申告所에 送付되어 公的인 申告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申告方法을 使用하는 國家에서는 台帳式登錄簿를 쓰지 못할 것이다.

2. 登錄簿의 性格

実際 登錄簿의 形態如何가 國際的規点에서 볼 때 그다지 重要하지 못할 뿐 아니라 動態統計上에도 別般 影響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國際斯合은 이 같은 勧告에 対해서는 그다지 関心을 表明치 않했으나, 勧告한 것은 이와 関斯을 맺고 있는 即 各事件의 形態別로 分類할 것과,

統一性과 國際的標準化를 爲한 勸告이다.

(a) 登錄等의 分類

國際勸告 分類 基準의 하나로서 登錄等의 基本性質을 들고 있다.

國際聯合의 申告書의 樣式과 內容에 관한 原則에서 이 問題에 對한 特別한 勸告(2)를 하고 있는데 이 勸告는 다음과 같다.

"215條 申告書의 樣式과 內容

"(a) 資料가 申告方法에 依해서 蒐集된다면 蒐集된 各 事件의 形態에 따라 登錄等가 分類되어야 한다 ....."

이 原則을 實際로 세우는데는 相当한 考慮가 있었다 이러한 区分을 明白히 하지 못하면 記錄의 正確性이나 統計의 正確性을 潛在的으로 害치고 말 것이다.

事件의 形態가 하나 以上인데도 不拘하고 同一한 登錄紙에 記載된다면 이를 서로 區分할 수 있는 方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充分한 考慮가 있었다 하드라도 記載法 (System of notation)이 絶對 確實한 것이 되지 못한다. 登錄紙上의 어느 一面에 記載를 잘 못할 수도 있으며 事件을 歪曲 記入할 수도 있고 或은 統計目的을 위해 抜萃할 때 看過할 수도 있을 것이다. 登錄紙의 分離는 不正確한 申告를 未然에 防止하게 하며 여기서 오는 誤差를 防止하는데 있다. 하나의 登錄紙에 한가지 以上의 事件을 取扱할 때 갖어오는 不利点이란 資料의 質을 低下시킬 可能性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過重한 情報 때문에 主題에 알맞는 情報를 記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資料가 要求하는

項目의 數가 적으면 적을 수록 더욱 더 正確하고 完全한 情報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가지 事件에 관한 情報를 1枚의 申告書에 記載한다는 것은 応答者의 質을 阻害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項目은 答辨者가 생사리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를 質向하는 申告所 自体도 効率的인 質向을 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逆說的으로 말하면 同一한 事件에서 求하는 情報의 範囲 (category)는 다른 事件으로 볼 때 서로 不適合한 것이다.

셋째로 考慮해야 할 点이란 登錄稅가 分離되지 못하므로서 오는 効果의 問題이다. 申告書가 理想的으로 되자면 台帳으로 된다든지 或은 各事件에 対한 同一한 情報는 함께 分離시키도록 되어야 한다. 万若 戶籍官의 어떠한 項目이

어떠한 事件에 適合한 가를 생각해 보면 이의 効率性 및 正確性이 如何한 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一定한 期間中 申告된 事件의 概要를 登錄表를 使用하여 알고저 할 때, 두가지 以上의 事件이 同一한 帳票에 記入되어 있다면 (胎兒死亡과 出生의 경우) 甚히 困難할 것이다. 故로 事件의 形態別로 分離記錄하는 것이 記錄 및 統計上에 正確性을 增大시키고 各情報事項의 完全性과 正確性을 갖어오게 하며 統計目的으로 볼 때 時告時 또는 報告時에 業務를 効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名稱의 實例와 差異로 因한 効果

大槪의 民法은 出生, 死亡, 婚姻에 對하여 分離登錄토록 하고 있으며 一定한 動態事件에 對하여 事

件発生記錄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도록 規定되고 있다.

第ノノ表에서 보면 모든 國家가 出生, 死亡, 婚姻에 対해서는 分離台帳을 쓰고 있으나 死産, 離婚에 対해서는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例컨데 死産이 別途의 登錄簿에 登錄되는 即 死産申告를 爲한 台帳이 別途로備置되고 있는 國家는 入手한 情報에 依하건데 52 個國中 單只10個國에 不過하데 이들 國家로는 캐나다, 美國 불리비아, 칠리, 실론, 日本, 스페인, 잉그란드웨일즈, 쿠바 및 스코트란드이다.

11表中 其外 國家中 18 個國이 死産 申告를 出生登錄簿로 쓰고 있으며, 13個國이 死亡登錄簿에 12個國이 出生, 死亡의 両登錄簿에 各々 記載하고 있다. 이 같은 二重登錄簿에 対하여 世界保健

我搆死産 및 流産定義分科委員会[3]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ubcommittee on the Defimition of Stillbirth and Abortion)는 1950年의 第1次 会議時 다음과 같은 勧告를 하였다.

"如何한 胎児死亡申告에 対하여도 出生 및 死亡 證明書의 提出을 要求할 수 없다. 따라서 胎児死亡申告는 單純한 胎児死亡証明書 만으로 充分하다."

本 勧告는 特別히 胎児死亡에 言及한 것으로 分娩登録에 관한 一般的인 國際聯合의 勧告인 것이다.

17個国의 一般婚姻申告는 法院으로 부터 받은 判決文의 原本에 根據하여 婚姻 登録法에 記載하고 있다. 婚姻申告에는 婚姻記録의 余白欄에 다

判決日字 및 婚姻의 解消를 訴訟한 当局等을 包含한 簡單한 記錄 (notation)을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와 類似한 申告形態를 取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記錄 (notation)을 婚姻登錄簿에 記入하는 것이 아니라, "身元 記錄簿" (personal record)에 記入하고 있다.

統計上의 正確性이라는 立場에서 볼 때 離婚登錄簿의 分離를 하지 않으므로서 困難이 일어나는 程度는 死産의 것과 같이 重大하지 않다. 왜냐 하면 離婚申告는 婚姻登錄簿의 欄外事項 (notation)에 不過하기 때문에 申告를 不正確하므로서 婚姻統計上에 離婚이 包含될 危險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 같은 方法은 註記 (notation)를 看過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事件을 概算함에 그다지 번거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婚姻統計가 婚姻登錄簿의 追加的 記載事項 (Supplementary notation) 이라면 婚姻으로 볼 때 不適当한 情報가 될것이므로 本是 登錄簿의 分離原則은 婚姻에도 勸告된다. 勿論 登錄簿의 分離策을 쓴다 하여도 技術法의 하나인 婚姻登錄簿上의 追加的 訂錄 (Supplementary notation) 은 記錄되어야할 것이다.

(b) 統一性 - 全國的 標準化

別途의 登錄簿를 各事件에 對해서 갖일 것인가 或은 登錄簿의 形態를 台帳 (book) 或은 個別的인 것 (a file of individual documents) 로 하든간에 實務上 登錄簿의 形態나 內容 또는 크기, 届出者等을 全國的으로 統一해야 할것이다.

國際勸告 이같은 特性을 考慮하여 國際統合의 動態統計의 諸原則 (the principles for a vital statistics system)에서 特別勸告를 하고 있다.(4)

이 勸告는 原則 215로서 다음과 같다.

"215 申告書 (registration record)의 様式과 內容

〔前 略〕

"(b)全國的인 統一을 期하기 위하여 申告書의 様式과 內容은 基本的인 事項 (basic context)에 있어서 申告를 統制 調整하는 國家機関이 세운 全國的 標準에 따라야 하며 그같은 標準化는 地方의 利害関係가 있는 項目或은 行政的인 問題에 관한 項目은 追加할 수 있으되 어느 一地方当局의 恣意에 在古되어서는 안될것이다.

登錄簿의 全國的 統一 이라는 觀点에서 볼 때 그 國家에 모든 地理的 單位에 있는 모든 人口의 階層 (Segment) 에 対하여 最少限 資料의 統一을 얻을 必要가 있다 이것은 動態事件의 法的 記錄이 全國的으로 統一될 뿐만 아니라 登錄簿上에 採択될 內容과 定義가 統計報告上의 該当項目에 直接的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본 標準化의 必要性은 더 말할 나위 없이 重要한 것이다. 統計的 立場에서 볼 때도 登錄簿를 取扱할 申告所의 銘心書 (instructions) 가 統一된다면 더욱 效果的이라는 것은 말할 必要가 없다. 더구나 申告書의 綴 (filing) 이나, 登錄簿를 綴함에 있어 登錄書가 크기에 있어서나 모양에 있어서 統一된다면 業務를 簡素化 乃至 增進시킬 수 있을

것이다.

統一을 期하는 方法

上述한 바와 같이 申告書 (registration record)의 樣式과 內容은 民法 或은 動態統計 法令에 依하여 普通 確定되거나 提示되고 있다.

法的 諸問題는 論外로 하고서도 登錄簿 (register)의 크기, 모양 內容을 統一하려면 申告의 組織이 中央官署에 依하여 集中되거나 或은 直接的 統制를 받는 國家에서는 印刷 및 配付를 直接 中央官署가 管掌하므로서 可能한 것이다.

例컨데 실론은 中央申告所 (the Registrar General's office)가 모든 登錄簿를 發刊하며, 모든 台帳은 페이지 數로서 分冊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統制가 統一性을 強制하는데는 바람직하나 여기에는 一定한 限界가 있다.

印刷 및 發行의 中央集權的 統制는 地方申告所로 볼 때는 申告書의 不足과 供給의 遲延으로 말미암아 困難하게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경우 地方申告所는 公的申告様式이 到着하기 까지 申告書의 代用紙 (facsimile)를 使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難関을 없앨려면 印刷를 地理的으로 分散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供給이 中央에서 中断됨이 없다든가 또는 地方에서 品切되는 일이 없도록 適時에 供給하는 事前注意가 必要하다. 또한 地方申告所가 申告書의 交付를 要求할 수 있는 対等한 立場을 갖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의에서 大略 보아은 中央集中的인 統制에 反해서 政府形態가 聯邦制度를 갖추고 있는 國家에는 事情이 다르다.

美國,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와 같은 國家는 登錄稅를 統制할 수 없는데, 그것은 自治 統制団体가 申告에 관한 一切의 責任을 스스로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申告書의 様式, 모양 크기 및 內容의 統一은 調整活動 - 中央調整当局의 勸告에 基한 - 을 通해서만 達成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같은 勸告는 各州(constituent units)의 權限가 自己들의 立場에서 볼 때 必要하고 特有한 申告規定이 있다하여 標準項目을 任意로 고치지 못하도록 登錄稅의 様式 或은 標準項目을 包含한 申告書等을 勸告하는 것이다.

이에 該当하는 例는 美國의 申告制度에서 찾아볼 수 있다. 美國에서는 模型 或은 標準証明書의 修正은 各州의 眞摯한 審査를 10年마다 實施되고 있다. 各州는 標準証明書(the standard certificate)를 採択하고 있으나 大多數의 州는 追加項目一主로 医学的인 것-을 追加하고 있다. 이 같은 相異한 形態의 申告로 因한 問題가 重大하게 되는 國家는 申告書의 副本(duplicate)이 統計報告가 되는 國家이며 이 中에서도 申告統制가 國家的 業務가 아니고 地方의 業務인 大概의 國家에 있어서는 重大한 것이 아니다. 美國의 動態事件에 관한 統計報告는 規格化된 様式(Standard transcript form)이나 或은 마이크로 필림(microfilm)으로 申告書를 復寫 報告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르헨티나는 "名單"(list)으로 報告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마이크로필름으로 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一般的인 內容統一은 標準模式(model/form approach)에 依해서 達成하고 있으나 一次申告書(original record)의 모양이나 크기가 全國統計報告의 統一을 期하고 있지 않다.

(c) 資料의 完全性과 正確性

登錄簿上의 情報는 可及的 正確하고 完全하고 알기 쉽게 되어야 한다. 正度(accuracy)는 申告時에 記錄된 情報가 法的 文書로 될 뿐만 아니라 動態統計의 根源이 되므로 이주 重要한 것이다. 申告 過程에 介入된 誤差는 永久히 고칠 수 없거나 或은 當事者에게 성가시고 煩雜한 訂正節次를 取하게 되는 原因이 될 것이다.

읽기가 힘드는 記錄은 不正確한 情報의 한 原因이 되므로 可能한 限 避해야 할 것이다.

申告書(record) 上의 資料가 쉽고 正確하게 理解되지 못하면 이 記錄을 보는 이 마다 各其 다른 解釋을 하게 되어 誤差를 갖어올 危險이 있다 따라서 姓名, 住所 其他 必要한 特性(characteristics)에 있어서는 읽기쉽도록(legibility) 되어야 하는데 이는 原理에 容易할 뿐 아니라 二重申告의 可能性을 除去한다 資料의 正度나 完全性을 登錄紙上에 增大시키는 方法은 몇가지가 있는데, 어떤 國家 그 中에 잉그란드 웨일즈는 情報의 豫備起草方法(preliminary draft of the information)을 取하고 있다 이 起草를 完成하기 앞서 이것을 屆出者에게 보내서 이의 正確

性을 確認한 다음 署名토록 하고 있다.

이 豫備作成이 끝난 다음 必要한 事項(Item)만을 寫本하여 登錄카에 追加하고 있다. 체코스로바키아도 이와 類似한 方法을 쓰고 있는데 登錄簿에 記入되기 前에 統計報告를 해서는 안되게 되어 되어 있다. 이 같은 方法은 不正確을 防止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으로 가까운 將來에 訂正 또는 変更될 可能性은 거의 없게 된다. 届出者가 直接 登錄카에 의서 戶籍吏(申告官 : registrar)가 直接 質問

하여 申告하는 國家에 있어서는 豫備作成過程方法이 可能할 뿐 아니라 実際 有益한 것이다. 이것은 이의 作成이 곧 統計報告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申告 責任이 直接 自己에게 있지 않는 者(Secondary Informent)는 스스로 申告하에 을 必要가 없는 경우에는 細密한 檢查나 確認이 不可能하므로 어떠한 方途가 講究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같은 例는 医師가 出生申告의 義務를 負担하고 있는 美國의 몇몇 州에서 쓰고 있는 方法인데 父母에게 出生申告通知書를 郵送하고 있다. 이 通知

書는 医師가 作成한 出生申告書의 複寫用카메라 寫本으로 되어 있거나 特別한 様式에 依하도록 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를 取하든 通知書를 받는 父母側으로 볼 때는 申告書에 記名된 情報를 確認하는 것이 되고 訂正 또는 追加할 事項이 있으면 登錄官에게 通知하게 된다. 登錄完了의 모든 事項에 관하여 正確한 情報를 얻는다는 것은 困難하다.

届出者가 事件과 아주 密接한 関聯이 있는 者일 경우라면 登錄官은 以後 어떠한 情報가 있을 수 있도록 質問을 反復할 수도 있을 것

이나, 畜出者가 直接 肉研者가 아닌 例컨데 医師 葬儀師等과 같은 者 일 때는 問題는 좀 複雜해진다. 그러한 경우 登錄官은 提出된 情報가 滿足스럽게 收成되었나 換言하면 발아도 좋을 만한 것인가를 스스로 決定하여야 한다. 接受의 基準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大体로 登錄官이 申請書를 發하기 前에 적어도 申告書上에 基本的인 法定項目이 完全히 記入되었는가의 與否를 確認해야 한다. 따라서 要求한 事項이 全部 記載되었다면 申告書는 接受되는 것이다. 한편 登錄官은 虛偽記入을 防止하고 文書의 取扱을 严重히 하며 一定한 接受基準을 納得하고 있어야 한다.

3. 登錄等의 內容

(2) 各 登錄法의 項目

申告書에 나타날 情報項目의 範囲와 性質은 두가지 要素에 依하여 制限을 받는다

即 (1). 届出者에게 特定한 質向事項을 規定하고 있는 民法 或은 申告法

(2). 統計資料의 使用者側의 要求 即 申告樣式이 統計資料를 目的하는 경우에는 國民保健担当者 또는 人口學者의 要求等에 依해서 制限을 받는다

國際勸告

登錄法의 內容으로 볼때 一般申告法의 硬直性으로 말미암아 法律의 改正없이는 修正을 할 수 없으며 또한 統計目的으로 追加資料가 別途로 蒐集되기 때문

에 登錄法上의 目的을 修正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申告書의 情報에 依해서 統計資料가 얻어질 경우에는 需要者側의 必要에 따라 登錄의 範囲를 決定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國際勸告는 內容問題에 관해서 動態記錄의 法目的은 勿論 그의 統計使用에 対한 考慮도 할 必要가 있음을 明白히 하였다.

動態統計制度의 「諸原則」(5) 에서 申告書의 様式과 內容에 관한 215條의 勸告는 다음과 같다.

"---------- (c) 申告書가 統計目的을 위한 情報提供資料이며 原本 (The orginal) 일때는 이에 対한 規定은 原則 308條(c)(6) 에 明示된 項目을 申告토록 해야 한다."

各國의 實例, 申告項目이 法的起源을 갖었고 또

몇 몇 경우를 除外하고는 統計目的으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諸般 登錄簿上의 項目을 仔細하게 分析할 수가 없으나 65個國의 申告書를 一括해서 보면 出生申告에 要한 情報는 8個項目으로 區分되고 있다.

即,

出生兒 或은 乳兒에 관한 事項

母에 관한 事項

父에 〃 〃

祖父母에 관한 事項

出生入會者에 관한 事項

届出者에 〃 〃

証人에 〃 〃

戶籍官에 〃 〃

法的死亡申告에 包含된 事項;

死亡者에 관한 事項

死因에 〃 〃

父母에 〃 〃

入會者에 〃 〃

届出者에 〃 〃

証人에 〃 〃

埋葬에 〃 〃

戶籍官에 〃 〃

死亡者에 관련된 事項은 勿論 大槪의 國家에서는 死因의 記載가 入會 或은 診斷医師가 하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비록 医師가 死亡原因을 반드시 報告할 義務를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死因" 項目만은 申告될 情報中에 반드시 含含시키고 있다.

登錄簿(戶籍簿)의 寫本을 統計報告로 하고 있는 美國, 캐나다, 필립핀等에 있어서 診斷書(Medical certificate)는 申告書의 原本中에 必須的인 것으로 되어 있다. 칠리와 같은 其外의 몇々 國家에서는 死亡診斷書原本은 別添書類인데 이는 戶籍簿에 転記한 然后는 戶籍官이 保管하고 있게 된다.

其外의 國家 例컨데 쉬스에 있어서는 戶籍官은 届出者로부터 別途로 死亡診斷書를 받고 있으나 戶籍簿에 死因을 記入한 后 이 診斷書를 統計報告에 添付해서 統計当局으로 送付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는 主的効果가 될 "自然死因"(Natural causes)과 不慮의 死因(accidental or violent causes)으로 區分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스위즈란드에서는 死因에 對해서 秘密로 하는 習慣이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戶籍官에게 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戶籍簿上에도 表示되지 않는다. 이러한 制度下에서는 死亡事實을 申告한 后 戶籍官은 알고 있지 않는 死因을 除外한 모든 事項을 統計當局에 報告하므로서 끝나는 것이나, 이 不知의 死因에 對해서는 立會醫師에게서 送付되는데 醫師는 死因을 記載한 后 封緘葉書로 다시 戶籍官에게 送付하는 것이다.

戶籍官은 統制할 目的에서 이 報告된 것을 다시 記錄해 두는 한편 이를 統計局에 示是 封緘葉書로 送付하고 있다.

어떠든 世界大多數 國家에서는 死因이 戶籍簿上에 記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死因에 對한 診斷書는 統計目的을 爲해서 存在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死因에 対한 法的関係는 自然死와 不慮의 死로 区分되는 것으로 充分하며 診断書를 要하지 않는다.

死産申告를 보면 出生 或은 死亡申告에 使用되는 것과 같이 一般的인 項目이 없으나 大体로 다음과 같은 項目을 包含하고 있다.

死産者에 관한 事項

死産原因에 〃 〃

母에 〃 〃

父에 〃 〃

立會者에 〃 〃

届出者에 〃 〃

証人에 〃 〃

埋葬에 〃 〃

祖父母에 關한 事項

戶籍官에 〃 〃

한편 婚姻에 記載될 事項으로는 婚姻에 관한 事項

新郎에 관한 事項

当事者의 父에 관한 事項

当事者의 母에 관한 事項

司會者 (officiant)에 관한 事項

証人에 관한 事項

同意者 (consenter)에 관한 事項

戶籍官에 관한 事項

한편 准婚申告에 관한 情報는 入手할 수 없는데 이것은 世界 多數國家가 届出申告婚姻 (civil marriage)이 아닌 法院申告 (The cout register)를 하기 때문이다.

如何는 登錄簿上의 項目이 當初에 統計目的에 있지 않다 하드라도 統計項目으로서 出生, 死는 死産, 婚姻에 要求하는 項目을 比較하면 申告目的을 위한 追加的証明(Identification)이나 記載事項의 証明方法의 相違가 있음을 除外하고는 13表에서 16表를 보면 別差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亦是 姓名 居住地, 証人, 届出者等은 法的文書로서도 必要할 것이다.

(b), 登錄簿(戶籍簿)上의 項目에 対한 定義

用語가 여러가지로 解釈되기 쉽기 때문에 定義를 세울 必要가 있다.

戶籍官이 解釈하는 方法과 届出者가 解釈하는 方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一定한 解釈上의 標準方法이 必要하다.

國際勸告 이같은 問題를 認定하고 動態統計制度의 諸原則 가에서 유엔은 216條 (勸告) 에서 다음과 같은 槪念規定을 하고 있다.

" 216. 申告書上의 項目에 對한 定義

(a) 申告書上의 各項目은 國際標準人口센서스調査또는 動態統計의 必要事項에 따라 定義하고 明確히하여야 한다.

(b) 選定된 定義는 이를 解釋할 責任있는 戶籍官이 何時라도 볼수있게 하기위하여 申告書上이나 또는 別途의 銘心書(instruction)에 印刷하여야한다. 本勸告의 要旨는 戶籍官을 위한 銘心書가 간단 명료할 뿐 아니라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台帳式 登錄法인 경우일지라도 이 定義를 頭序에 印刷하거나 申告書의 경우도 勿論 印刷하여야 할 것이다.

亦是 別途의 銘心書를 印刷하여 定義解釋의 責任을 진 戶籍官이 恒時 帶하며 언제나 볼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申告時에 使用될 定義 및 標準의 設定은 中央申告所의 할 일이다.

이때 申告될 大部分의 資料는 動態統計資料가 될 것이므로 戶籍所와 統計当局間에 使用할 概念은 一致하여야 한다.

例컨데 統計当局이 年令에 있어 "最後出生日의 年令" (age of last birthday)을 使用한다면 戶籍所도 亦是 年令에 있어서 滿으로 換算한 出生日 다시 말하면 最後出生日에 있는 年令으로 解釈해야 한다.

亦是 妊娠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도 滿으로 週日을 計算할 경우 戶籍所가 月로 計算하는 等의 論談을 가져와서는 안 될것이다.

또한 이같은 定義는 人口센서스나 標本調

또는 移民統計 其外 이와 關聯된 모든 分野에 通用할 수 있는 定義과 調整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第四章

報告過程與統計報告

第Ⅲ章 報告過程과 統計報告

「動態統計制度의 諸原則」(1)에 依하면 統計報告란 "動態事件에 관한 統計報告를 이들 事件에 관하여 統計作成의 責任을 진 機關에 伝達하는 것"이라 하고 이 伝達된 統計報告는 "動態事件에 関聯된 情報를 内容으로 한 記錄 即 動態統計에서 必要로 하는 것으로 組織的으로 整理된 「原材料」(raw materials)이라"

第Ⅲ章에서 世界大多數國家의 申告原本(original Registration)은 台帳 - 即 製本된 台帳(A founded book)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 왔다.

또한 이러한 申告文書는 保管, 秘密保護等과 같은 点으로 一定한 規定을 갖고 있는 法的記錄이

라는 것도 알았다.

이상한 情報 그것만으로 申告書가 統計報告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申告된 文書를 統計目的으로 使用할 수 있게 되자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되구나 이 以外에 保健 또는 人口統計에 必要한 事項이 包含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反面에 統計에서는 必要가 없는 項目, 即. 当事者의 "姓名" 이라든가 "戶籍官"의 姓名 或은 "証人"의 姓名等이 包含되고 있다.

따라서 原申告記錄이 統計上 不適合하므로 申告時에 統計当局에 報告할 当該 統計報告가 作成되는 것이 普通이다.

A. 統計報告過程.

統計制度를 發達시키기 위하여는 몇가지 要素가 考慮되어야 한다.

첫째로 考慮해야 될 것은 統計制度에 관련이 있는 單位 (Units) 即 申告地의 決定 報告責任의 所在, 申告의 經路 或은 組織, 報告予定表 (time Schedule) 의 作成, 報告書의 樣式 및 報告될 情報의 範圍와 形態 (extent And type) 의 決定等이다.

1. 報告單位 (Unit of reporting)

動態統計制度의 單位는 動態事件 即, 出生, 死亡, 胎兒死亡 (死産), 婚姻, 離婚, 其外 動態統計分野를 이루는 事件이다.

유엔의 原則 201(2) 條에 依하면 報告單位는 "申告法에 依하여 資料가 蒐集될 事件" 이라고 敍述하고 있다.

이러한 申告單位의 定義에 따르면 統計報告란 事件에 관련된 '母' 或은 '父' 가 아

니라 "出生" 或은 "胎兒死亡" 그 自体의 報告이며, "婚姻" 및 "離婚"에 관한 限 当事者에 対한 報告가 아니라 그 自体의 報告인 것이다.

2. 報告範囲 — 範囲와 地域

完全한 報告가 適合한 動態統計를 生産케 하는 要請과 함은 말할 必要가 없다.

有用한 動態統計를 生産키 위하여 統計当局은 出生, 死亡, 死産, 婚姻에 관한 報告를 받아서 이를 處理해야 할 것인데 換言하면 統計当局의 管制下에 있는 地域에서 発生한 모든 單位 (Units)에 관한 報告의 獲得과 處理이다.

(a) 國際勧告

이같이 範囲의 完全性 (completeness

of Coverage)이 重要하기 때문에 「動態統計制度의 諸原則」에서는 다음과 같은 勸告를 하고 있다.

"301, 統計報告 - 範囲 (Coverage)

"統計報告는 法定期日內의 申告이든 지연申告이든 간에 法的記錄方法에 相関없이 即 正常的인 方法이든 或은 宣告事件 (declared events) 이든 法的으로 申告되는 事件은 모두 報告되어야 한다 ------"

이 勸告의 意味는 事件發生에 対해서 如何한 與件과 関係없이 申告가 徹底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같은 總体的인 統計報告가 動態統計制度의 根底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結果된 統計는 반드시 缺陷되고야 말 것이다.

이 原則은 다음의 勸告로 더욱 具体化 되고 있다.

" 902. 統計報告地域 — 地理的 種族的 觀点에서

(a). 申告書를 入手할 수 있는 地域 或은 種族団体가 統計報告地域에서 除外되어서는 안되므로 申告範囲의 完全性이나 或은 資料의 入手範囲에 관계없이 모든 発生事件을 記錄 報告하도록 하는데 特別한 注意를 해야 한다.

(b) 可能하다면 申告의 完全度에 対한 質的 量的인 把握, 各 地理的 申告地域에 対해 있어야 한다"

이 「原則」은 申告 또는 報告가 相当히 徹底히 履行된다고 仮定하는 地域에만 統計報告를 制限하고 있는 国家에 관한 것이다. 어째서 統計報告가 모든 地域(geographical areas) 또는 家族団体로부터 蒐集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몇가지 理由가 있는 것이다.

이 理由中의 하나로서 各 地域的單位로 集計되므로 統計의 改善을 위한 企劃 및 計劃을 樹立하고 効果的인 使用을 할 수 있다는 動態統計의 必要이다.

集計에 앞서 完全性 (Completness) 의 標準을 設定한다는 것은 結果된 統計의 使用度를 增大시키는 한 方法이다. 이것이 一般的인 申告에 있어서의 關鍵은 아닌 것이다.

어느 人口集団을 申告義務에서 除外한다는 것은 申告의 完全性으로 보나 或은 申告義務地域 個体가 申告도 制裁하지 않는 傾向이 생겨서 結局 中斷되고 말것이다.

申告를 制限하지 않아야 하는 두째의 理由로서는 어느 地域의 資料가 斷片的인 것일지라도 全然 없는것 보다는 낳은 것인데, 特히 멀리

의 申告書를 必要로 하고 或은 小單位地域에 対한 概算数를 有用하게 쓰고 있는 國民保健計劃에 一益이 있는 것이다.

3. 統計報告의 責任

第V章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一般戶籍官(Civil Registrar)이 二重的인 責任을 負担하고 있다. 戶籍官은 法目的으로서의 動態事件에 対한 情報를 記錄해야 할 뿐만 아니라 申告된 모든 事件에 対한 報告를 統計当局에 報告해야 하는 것이다. 故로 戶籍官은 動態統計制度의 関健的인 存在이다.

(a) 國際勧告

유엔統計委員会(The statistical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는 戶籍官의 任務를 定義하는 勧告를 「原則」에

서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305, 戶籍官 — 統計情報의 記錄. 報告에 對한 任務에 對한 責任.

"(a) 戶籍官의 責任에 對한 法的規定은 法的事件의 記錄을 保管하는 同時에 統計目的을 爲한 記錄報告의 責任을 진다.

'(b). 戶籍官은 法的記錄의 原本을 사본하여 統計當局에 送付하거나 或은 別途의 樣式을 使用하거나 간에 可能한 限 이 報告는 完全하여야 하며 發生된 事件의 範圍(coverage)도 完全하며 適時에 處理되어야 한다."

戶籍官이 統計目的을 위한 그의 動態事件報告의 責任을 遂行하는 方法 如何에 따라 結果된 資料의 正度가 決定된다.

情報의 記入이 正確하게 또 注心스럽게 筆記

됐다면 統計当局이 資料의 解釈으로 苦心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타이프라이터로 記入된다면 더욱더 正確을 期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悪筆로 알아볼 수 없게 記入됐다면 誤差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바로 이같은 말하자면 모든 情報의 項目을 읽기쉽고 解釈에 容易하도록 하는데 戸籍官의 任務가 있는 것이다.

解釈上 困難이 招来될 경우란 死因의 경우다. 大多数國家에 있어 死因証明의 責任은 医師에게 있으며 医師의 診断書는 비록 그것이 申告를 하기 위한 具備書類에 不過하나 主된 目的은 統計報告를 하는데 있는 것이다.

診断書에 記載된 死因은 統計作成을 위하여 符号化되어 分類된다. 이의 解得이 어려울 경우 그만큼 死因統計上의 誤差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特殊한 情報의 重要性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解得을 원사리 하지 못하게 하는 事例를 흔히 보아온 바이다.

4. 報告經路 (channel of Reporting)

戶籍官이 統計官庁에 報告하는 經路나 이 報告가 国家水準 (National level) 에 到達하는 形態는 諸與件의 變異에 依存하고 있다.

이 與件의 하나는 그 나라 動態統計의 組織 및 管理形態인 것이다. 만약 統計編纂의 責任이 地方의 行管으로 되어 있는 国家에서는 即 国家가 아닌 州나 道의 責任下에 있다면 動態事件의 報告는 地方戶籍官이 州 或은 道로 直接 或은 間接的으로 報告될 것이 確実하다.

따라서 이러한 地方団体에 있어서도 中央에

報告하기 以前 이를 사본하거나 編纂할 수가 있는 것이다.

如何한 경우이던 戶籍官과 中央統計官行間에는 中間段階가 있는 것이다. 未端申告所가 中央政府로 부터 直接的인 統制를 받고 있는 國家에는 그러한 中間段階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4). 國際勸告

모든 申告의 經路問題는 動態統計에 관한 行政措置에 直接的인 關聯이 있으므로 어떤 制度에 관해 어떤 制度가 낳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유엔의 統計委員會는 「諸原則」에서 다음과 같은 一般的인 勸告를 하고 있다.

"303. 統計報告 蒐集体系

"(a). 国家統計作成을 爲한 動態事件의 諸報告는 統計編纂의 責任을 진 機関을 中心으로 하여 蒐集되어야 한다.

"(b) 万若 統計의 必要性이 地方 或은 州 道 政府에 사본을 提供하거나 或은 이들을 通해서 原申告書가 報告되도록 措置를 取할 것이다."

地方(sub-national)에서 必要한 情報의 提供은 「勧告」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原申告를 地方을 通하여 報告토록 하는 方法과 그의 사본을 提供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나 終局的인 見地에서 볼 때 統計報告는 中央統計当局이 갖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中間段階를 거쳐야 할 때는 언제나

時宜에 맞도록 또는 範囲 (coverage) 問題를 考慮해야 할 것이다.

(b). 各國의 實例.

調査된 各國의 報告經路에 対한 完全한 情報를 入手하지 못하고 있으나 研究한바 絶対多数의 国家가 動態事件 報告를 地方水準에서 直接 中央政府에 報告하고 있으며 中間段階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地方戶籍官과 中央統計担当者가 直接的인 関係를 맺고 있지 않는 国家는 버마이다.

버마에 있어서는 動態統計의 責任이 中央政府에 있으나 編纂 (compilation)은 地理的으로 分析되고 있어 酋長 (headman) 或은 保健担当官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1個의 戶籍官으로서 出生, 또는 死亡

確認書를 區所 (Township office) 나 가까운 경찰서에 報告한다.

한편 區所 (Township office) 나 경찰서는 이를 聚合하여 当該地區 一般外科医師에게 보낸다.

担当外科医師는 모든 申告書를 綜合하여 当該地方行政官 (deputy Commissioner)을 經由하여 中央級인 国民保健医療部長官 (Diretorate of medical and public Health Services)에 보낸다.

中央에서는 各地方에서 보내온 報告를 다시 綜合하여 全国的인 것으로 한다. 그런데 하나 알아둘 것은 버마動態 및 保健統計委員會 (Brumese Interdepartment Committee on Vital and Health Statistics)는

經路의 하나인 경찰서 (police station)를 除去하도록 勸告한 것이다.

이와 反對로 실로에 있어서는 强力한 中央集權化의 組織을 取하고 있으며 地方戶籍官으로부터 省戶籍官을 經由하여 中央戶籍官(登記長 Registrar general)에게 踪合되지 않은채 보내진다.

5. 日程表

統計報告의 日程表 (Schedul)는 動態統計制度에 極히 重要하며 日程表를 어기지 않게 하려면 戶籍官 (Registrar)의 報告任務 및 報告時期, 報告對象等을 規定한 銘心書를 使用케 하므로 便宜를 圖謀할 수 있다.

그러나 問題는 이 日程表의 作成인데 이 問題는 第Ⅵ章에서 取扱할 것이다.

(a) 國際勸告

「統計報告의 接受統制」에 관한 유엔의 諸原則(6)에서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304. 統計報告의 接受統制 (Control of receipt)

(a). 中央動態統計官署는 地理的 種族的 範圍에 있어서나 또는 時間에 內容에 있어서도 알맞게 即刻的인 集計를 할 수 있도록 모든 報告地域에서 報告되는 統計報告를 即刻的으로 統制할 수 있는 適切한 管理方法을 갖어야 한다.

(b) 그러기 위해서는 그나라가 處해 있는 諸條件 即 地方分布狀態·通信은 勿論 報告의 系統과 中間經由段階를 充分히 考慮하여 完全한 日程表가 作成되어야 한다."

中央動態統計官署가 바로 이 「原則」에서 말하는 蒐集機關으로서 일어난 動態事件의 即刻的

인 統計報告를 接受할 責任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신속한 統計報告를 督励하고 統制할 权利가 中央統制官署에 주어진 것은 一定한 期限內에 必要한 範囲와 그 內容이 詳細하고 適切한 動態統計를 即刻的으로 集計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措置는 統計의 作成을 무조건히 할 뿐만 아니라 報告上의 지연을 防止하며 缺陷된 資料를 訂正 또는 充全하게 하는데 있다.

申告와 訂正의 期間이 길면 길수록 情報를 쉽사리 蒐集할 수 없고 訂正 또는 追加할 機会가 없게 마련이다.

報告予定表를 適切히 樹立하려면 即刻的인 報告의 必要性과 関聯하며 実際로 그 国家가 即刻的인 申告를 할 수 있는 諸與件을 갖겄는가를 考慮함이 좋을 것이다.

通信이나 交通機関이 発生하지 못하고 氣候的 條件이 生活에 不適合한 僻地等은 日程表의 作成時 充分히 考慮해야 할 問題이다.

또한 報告를 받을 中間機関의 数도 日程表의 作成上에 考慮해야 할 한가지 要因이다.

(b) 各國의 実例.

많은 國家에 있어서 이같은 方法으로 研究하면 거의 大部分의 國家가 統計当局에 報告하는 期間이 月別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國家만이 分期別로 報告하고 있는 形편이다.

月別이던 分期別이던 간에 出生, 死亡에 관한 執行報告書 (Return)는 週別로 作成되어 이 報告가 統計当局에 報告될 때 月別 或은 分期別로 區分된다는 것이다.

通信이 不便한 地域에서는 申告形態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例컨데 버마의 日程表는 洞里와 경찰관 파출소와의 距離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또 日程表는 届出者의 身分에 따라 法定申告期間이 다르므로 戶籍官에 따라서 다르다.

例로서 에짚트의 保健局管制地域에 있는 医務戶籍官 (medical registrar)은 每週 統計報告를 하고 있으며, 其外地域에서는 稅務官인 戶籍官이 月別報告하고 있다.

B. 統計의 報告

1. 形態 個別的 또는 名簿.

(a) 國際勸告.

유엔統計委員會 (The united Nation Statistical committee)는 勸告하기를 "統計報告될 때에는 全國的인 統一을 期해야 한다고 하고 「諸原則」에서 다음과 같은 勸告를 하고 있다. "307. 動態事件의 統計報告書樣式

"(a) 動態事件의 統計報告樣式은 全國的으로 統一되어야 한다.

"(b) 伸縮性과 效率性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申告書는 個別的인 文書로서 必要한 情況의 回答을 記入할 수 있도록 適當한 空間을 두어야 한다.

"(c) 死因診斷書는 可能한 限 「国際死因診斷

書樣式」(A) (International Form of Medical certificate of Cause of Death)에 一致토록 하여야 한다.

(A) 著書名은 「死因診斷書」(Medical certification of Cause of Death)

醫師를 爲한 國際死因診斷書樣式使用銘心書(Instructions for physicians on use of International Form of medical Certificate of Cause of Death)

(世界保健機構 月報 3권 1952 9. 7. 스위스란드 쥬네브)

이 問題가 유엔의 勸告가 있기 前에 1950年 1月 16日-27日間 美國統計協會(Inter American statistical institute)의 第二次

會議가 Bogotá 에서 開催되었을 때 하나의 決議案이 通過되었는데 決議案의 原文은 다음과 같다.

"..... 出生, 死亡, 死産, 婚姻 및 離婚記錄의 標準証明樣式은 各國의 事情에 따라 採用하되 樣式使用에 對한 施行法規가 있어야 한다.

이 決議案은 「出生, 死亡, 死産等에 對한 標準記錄証明樣式」으로서 主로 國際標準化의 內容을 言及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記載事項」(Content)에 관해서 言及한 것이나 이 決議案은 各國이 「証明書」를 採用할 수 있을지 그 証明書는 情報記錄의 個別的樣式 및 統計報告의 個別的 樣式을 採用할 수 있음을 뜻한다는 事実이다.

이러한 統計報告의 單記式形態 (single unit type)는 集團的이고 「名簿」(List)의 形態를 갖춘 複數形態 (multi-unit type)와 反對되는 것이다.

이 複數形態報告樣式은 「剔錄」(Line schedule)을 取하므로 動態事件을 여러個 記入되는 것으로 記入할 情報項目을 頭序 (Box-head)에 記入하며 一個名簿에 最大 25個의 事件을 記入할 수 있다.

이 複數形態의 統計報告書는 台帳形態를 갖춘 戶籍簿 (Ledge type register)와 같은데 事實 이것에서 사무이 作成되는 수가 許多하다. 「유엔의 原則」에서 勸告한 個別的統計報告樣式은 主로 伸縮性과 效率性을 考慮한 것이다.

이러한 考慮는 統計編纂過程에 適用可能하나

여기서 考慮할 몇가지 点이 있다.

適切한 空欄、個別的統計書나 名簿式統計報告書는 原資料(original data)를 包含하고 있다.

그러나 單式報告書 換言하면 個別的 報告書는 名簿式 即 列線式(Line-schedul type) 報告書에 記入할 수 없는 精報의 項目을 包含할 수 있으므로 確実히 有益하다.

더구나 個別的 報告書上의 諸項目은 複数式名簿에 設定할 答辨欄을 適切하게 配置시킬 수 있다. 名簿式報告書가 精報의 多過에 따라 制限을 받는다는 事実을 除外하고는 別 問題가 없다.

適切한 空欄이 있는 個別的인 報告書가 이 같은 利点이 있다는 事実은 世界保健機構가 最近 勸告한 「國際死因診斷書標式」(International-

onal Form of Medical Certification of cause of Death)으로 実証되고 있다.

이러한 標準死因診断書로서는 個別的인 統計報告書가 適合하다.

그런데 이 같은 診断書의 様式에 記入돼야 할 情報의 量이 併合할 수가 없으므로, 이 結果報告할 様式이 名票式이라면 診断書를 別途로 添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缺点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個別的인 報告書에 適切한 空欄을 두지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点을 疎忽히 한 統計報告書는 適切한 資料를 많다 記入할 수 없을뿐 아니라 取扱上의 여러가지 難点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칠리의 Tajeta [8], 베네주엘라 및 스페인의 boletas, 비델란드와 스웨덴에서 使用되고

있는 報告書는 비록 個別的인 것이기는 하나 詳細한 報告를 하기에는 공란이 不適当하다고 생각되는 例들이다.

必要한 情報를 聚合할 個別的인 統計報告의 其의形態로서는 戶籍等에서 蒐集한 資料를 간편하게할 穿孔카드(punch card)이다.

그 같은 制度가 뉴지란드에서 現在 使用하고 있으며, 실론에서는 過去에 考慮된바 있었던 것이다.

統計報告에 穿孔카드를 使用한다는 것은 몇가지 利点이 있으나 이것 亦是 空欄의 制約이 問題가 되며 特히 死因情報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報告書의 交換 個別的인 統計報告書는 또한 機関內部 或은 地域內部間에 報告書의 転寫가

위운데 例를 들면 一定한 死因 報告 및 二重報告時 或은 居住地에 二重報告할 時이다.

個別的인 報告樣式을 使用할 때 報告의 責任을 진 戶籍官은 筆耕 或은 사진으로 복사하면 되는 것이고, 받는 地域 或은 기관은 그에 관계있는 報告書를 받을뿐이다.

너무나 接受한 報告書는 取扱하기 쉽고 保管하기에 容易한 樣式으로 되어야 한다.

保管方法에 있어서 個別的樣式은 姓名別, 死因別, 居住地等의 索引이 容易하다 反面에 複數名記式報告書는 申告名記로서 使用되나 索引으로서 使用할 수 없다는 것이다.

費用, 費用面에서 보면, 名記式報告書는 予算의 制約을 받고있는 國家에서는 特히 個別的樣式보다 有益함은 말할 必要가 없다. 이것은 名記式

報告書가 個別報告書보다、인쇄、取扱上의 煩雜、공란의 有無、保管、節次上에 있어서 經費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마지막 節次上의 費用은 그 重量이 單式報告書 以上일 수 있으므로 더 費用이 들 수도 있는 것이다.

(6) 各國의 實例

이러한 利点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유엔은 單記樣式 即 個別的報告書가 全体的으로 使用되고 있지 않음을 指摘하였다. 이같은 狀態는 以下 1.2表에서 1950年1月 現在에 各國이 實施하고 있는 것을 表로서 나타내고 있다.

第1.2表 一般户籍官이 作成할 統計報告 形態
(年間統計編纂에 使用됨)

1950. 1. 1日現在 두가지 樣式을 並行하고 있는 것은 內容 式은 報告行先地가 다름을 指示함 其外것은 一般戶籍法上의 資料에서 一般戶籍官이 作成한 報告書임.

○○○表는 精報入手不可 動態統計編纂機關名은 第2表를 參照할것, 個는 個別的報告書 名은 名單式

国家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
아프리카					
에짚트	名單(1)	名單(1)	名單(出生死亡)	名單(2)	名單
南亞聯邦	...	...	...	...	...(3)
北美					
캐나다	個別	個別	個別	個別	要概(4)
코스타리카(5)	名單	名單	名單(死亡)	個別	名單(2)

婚雅	姻婚	産死	亡死	生出	國家
(7)笠名笠	(7)笠名笠	別個	(8)笠名笠	(8)笠名笠	카바
〃名笠	〃名笠	名笠	名笠	名笠	니카
個別	個別	(9)笠(死)別名(出)	〃	〃	(8)들
(12)笠名笠	(12)笠名笠	個別(出)笠(死)名要(出)	個別笠名	(10)笠名笠	라달레
(16)別(2)笠名笠	(16)別笠名笠	別笠(生)別	(15)別笠笠	(14)別笠笠	이리하
(21)別	〃	〃	〃	個名	스고두
(18)〃	(17)別	〃	〃	名	과카라
(19)。。。	〃	〃	(20)別笠名	〃	마나파
					국미
					美南
					나아르헨리
					비아볼

婚姻難	婚姻	産死	亡死	生出	家国
(19)	名弦	別名弦	(21) 別名弦	(21) 別名弦	브라질
(19)	仙別	(22) 〃	(22) 〃	(22) 〃	칠리
(19)	名弦	(24) 個別	(23) 弦別	名弦	볼리비아
名弦	〃	〃	名	仙別	에콰돌
(19)	〃	仙別	仙別	仙別	파라과이
(25)	〃	名出仙別	名弦	名弦	페루
・・・	・・・	仙別	仙別	・・・	우루과이
(2) 別仙	別仙	(死) 別亡	(27) 別仙	(28) 別弦名仙	베네쥬엘라
亜細亜					
(30)	(29)	別生	仙別	(28) 仙別	버마
(32) 弦名	弦計名要	仙(出) 名弦	仙別 名弦	仙別 名弦	실론
					印度
(34)	(34)	要計	要計	要計	마드리스(州)

国家	出生	死亡	産死	婚姻	難婚
미조레(34)	名	名	名(出生)	(34)	(34)
인도네시아(35)	和別	和別	和別	和別	和別
이란	〃	〃	〃	〃	〃
이스라엘	和別	和別	和別(出死)	和別	和別
日本	〃	〃	和別	〃	〃
을단	〃	〃	(36)	名	名(2)
레바논	要請	要請	(36)	要請	要請
파키스탄(37)					
카라치(市)	名	名	名(出生)	(34)	(34)
필립핀	和別	和別	和別(出死)	和別	(19)
시리아	要請	要請	(36)	要請	要請
타이란드	和別(38)	和別(38)	和別(出死)	和別	和別
터어키	〃(39)	〃(39)	和別(40)(死亡)	和別(41)	和別(2)

婚姻	産死	亡死	生出	家目
別	別生	別	別	欧
許	許	許	許	아
要	要	要	要	오스트리
〃	〃	〃	〃	벨
別	別	別	別	점
〃	〃	〃	〃	고
名	名	名	名	덱
〃	〃	〃	〃	막
別	別	別	別	란
〃	〃	〃	〃	드
〃	〃	〃	〃	서
〃	〃	〃	〃	불
〃	〃	〃	〃	란
〃	〃	〃	〃	遠
〃	〃	〃	〃	独
〃	〃	〃	〃	그
〃	〃	〃	〃	리
〃	〃	〃	〃	스
〃	〃	〃	〃	란
〃	〃	〃	〃	드
〃	〃	〃	〃	아
〃	〃	〃	〃	일
〃	〃	〃	〃	란
〃	〃	〃	〃	드
〃	〃	〃	〃	伊
〃	〃	〃	〃	太
〃	〃	〃	〃	利
〃	〃	〃	〃	리
〃	〃	〃	〃	덴
〃	〃	〃	〃	스
〃	〃	〃	〃	라
〃	〃	〃	〃	인
〃	〃	〃	〃	그
〃	〃	〃	〃	룹
〃	〃	〃	〃	셈
〃	〃	〃	〃	불
〃	〃	〃	〃	나
〃	〃	〃	〃	코
〃	〃	〃	〃	모

国家	生出	亡死	産死	婚姻	婚難
비텔란드	仍別	仍別	仍別	仍別	名等(2)
놀위이	名等	仍別(47)	仍別(48)	名等	仍別(2)
폴란드	〃	名等(名等)	名等(出生)	名等	〃(2)
폴투갈	仍別	仍別	仍別	仍別	〃(2)
스페인(45)	〃	〃	〃	〃	〃
스웨덴	〃	〃	仍別(出生)	〃	〃
西瑞	〃	〃	仍別(49)	〃	〃
英国					
(잉그란드 웨일즈)	仍別	仍別	仍別	仍別	仍別(2)
北아일란드	名等	名等	(36)	名等	(3) 要計
유고(51)	仍別	仍別	仍別(出生)	仍別	要計
大洋洲					
호주	名等	名等	(52)	名等	要計
뉴지란드	仍別	仍別	仍別(出生)(52)	仍別	要仍別

第 四 章

動態事件의 統計報告項目

第 Ⅺ 章 動態事件의 統計報告項目

前章에서 統計報告諸次와 動態事件의 統計報告의 一般記載事項을 叙述한바 있다. 本章에서는 出生, 死亡, 胎児死亡, 婚姻, 離婚에 관한 統計報告內容을 国際勧告에 따라 叙述하고 各個国에서 国家水準(National level)에서 使用되는 統計報告를 細密하게 分析할 것이다. 따라서 各国의 統計報告에 包含하고 있는 特殊項目을 例示하며 이들 諸報告가 內容에 있어 国際勧告와 一致하는가의 與否를 研究할 것이다.

A 報告와 戶籍法와의 関係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의 全國統計報告가 單一文書報告(an individual-unit document)인가 或은 複数式 名簿報告(a multi-unit list report)인가는 이미 모아온 최이다.

어떠한 書式을 使用하는 間에 戶籍官은 이 報告書作成의 責任과 戶籍簿 記載의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두가지 文書의 相互關係가 特히 그 內容에 있어서 問題点이 된다. 統計報告書에 記載할 情報項目이 戶籍簿上의 情報項目과 같을 것인가? 出生、死亡、死産、婚姻、離婚에 관한 統計報告가 法的 戶籍簿의 內容을 規定하고 있는 同一한 法規의 適用을 받을 것인가? 1950年에 61個國에서 使用하고 있는 動態事件의 統計報告書式을 分析해 보면 어떤 一定한 定則을 發見하지 못한다.

戶籍簿의 사본이 統計報告로 되고 있는 國家는 덴마크의 國家 即 요르단과 필립핀과 같은 國家로서 原本을 그대로 사본한 것을 統計報告로 하고 있고 부라질과 덴막 其外 國家中에는 戶籍簿를 복사한 名簿를 統計報告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美國에서

는 原申告書 (original registration record)를 사진으로 사본하여 이를 統計報告로 使用하고 있다.

如何튼 個々의 戶籍簿와 統計報告書와의 關係를 正確하게 比較할 수 없으나 어떤 國家에서는 戶籍簿에 記載된 事項보다 統計報告에 記載된 情報가 적은 수도 있다. 마이크로필림을 使用하지 않고 있는 美國의 몇個州는 全國統計에 必要한 項目만을 包含한 "標準樣式" (standard transcript)을 使用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르헨티나는 美國과 같이 全國的인 資料의 標準化問題에 當面하여 戶籍原簿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數가 적은 標準項目을 設定하여 이에 관한 情報를 記入하도록 된 名簿를 提出하고 있다.

칠리의 tarjeta와 Boletin demografico

는 먹서 一定한 法的登錄簿上의 記載事項을 除外시킨 統計報告를 使用하고 있다.

大多數國家는 戶籍簿와 統計報告上의 情報項目이 分離 또는 明白히 區分되어 있다 따라서 戶籍簿上에 記入되지 않는 情報項目이 統計報告에 必要한 경우 追加情報를 屆出者가 申告할때 直接 얻고 있는데, 이들 國家로는 영국, 웨일즈 및 其他國家로 되어 있다. 이러한 國家에서는 實際申告에 앞서 予備記載(draft entry)를 하게되어 있어 統計資料는 申告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폴란드에서도 일단 統計報告를 作成한 然後에 이를 基礎로 하여 法的申告를 하게끔 하고 있다

베델란드에서는 屆出者에게 아무런 부담을 끼치지 않고 統計報告를 完全히 하고 있는데 住民登錄簿의 記錄(record of population registers)

을 使用하고 있다.

戶籍簿에 包含되지 아니한 情報項目을 統計報告書上에 包含시킬 수 있는데 이때의 要因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로 戶籍簿의 變更은 늘 잦다로울뿐 아니라 어떤 때는 全然 不可能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法律에 依해서 情報의 項目이 戶籍簿上에 記載 못되는 수가 있는데 이같은 項目은 個人의 身分을 外部에 発生치 않고서도 統計目的으로 質問할 수 있다.

國籍을 把握하기 爲하여 最近 실은은 "家系" (fore fathers)에 관한 情報를 出生登錄簿上에 記載하도록 法的 措置하고 있는바 이로 因해서 戶籍簿의 量이 커졌을 것이다.

B. 統計報告書에 包含될 項目

上記한 情報로 비춰볼 때 戶籍簿上의 記載

項目을 戶籍法 사본으로 代置統計報告하는 몇몇 國家를 除外하고는 統計報告의 內容이 全般的으로 戶籍法와 같다고 決定지을 수 없다.

따라서 純全히 統計라는 視角에서 본 出生·死亡·死産·婚姻·離婚에 관한 報告書의 內容이 戶籍法와 關係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ㅅ. 國際勸告

理論的으로나 實際的으로 統計報告上에 包含될 情報項目은 必要한 集計가 되도록 되어야 하며 動態統計의 使用目的이 有效 發揮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換言하면 屆出者에게 質疑한 事項은 統計의 性格中 特殊한 情報가 없는 것이라야 한다 유엔의 勸告는 國家에 따라 統計의 必要性이 다르고 이 같은 必要性을 充足시켜 줄 能力이 역시 다르다

는 事實을 認定하였는데 유엔의 勸告인 原則 301 "i)"에서 "最少限"의 項目 即 基本的인 名單는 그들 國家의 必要에 따라 各國이 바라는 바의 2次的인 情報項目을 考慮하도록 하고 있다.

原則 308은 出生, 死亡, 死産, (胎兒死亡), 婚姻 離婚에 관한 各國의 統計報告項目을 指示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308 動態事件의 統計報告 項目.

:(a) 國內 또는 國際的인 動態統計의 必要性을 充足시키기 爲하여 모든 國家의 動態事件의 統計報告는 最少限 基本項目과 各國家가 必要로 하는 追加項目을 包含해야 한다.

:(b) 出生, 死亡, 死産(胎兒死亡), 婚姻, 離婚報告의 基本項目은 以下 (d) 項에

明示되고 있다. 이 項目들은 最大 或은 最少의 것도 아닌 緊要한 項目들이다. 各國은 그 나라의 特殊한 社會的 經濟的 集団에 관계 있는 人口學的 要因을 追加 分析할 수 있는 其他 項目을 設定하여 情報를 蒐集할 수 있는 科學的인 方法을 考慮해야 한다.

이러한 記載項目은 世界的으로 統一할 수 없는 地方的인 適合性이 있기 때문에 이 項에서 모두 羅列할 수 없으나 "人種集団" "出生國" "國籍" "市民權" "地方" "言語" 或은 其外 經濟에 對한 追加情報事項을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c) 提示한 項目을 統計報告上에 包含시킬 수 있는 方法은 各國이 決定할 것이나 「原則 309」의 定義에 一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d) 5種의 動態統計報告項目은 事件別, 當事者別, 알파벳順으로 羅列했으며 表는 優先順位를 말한다. 따라서 動態統計制度를 新設하려는 國家는 優先順位에 따라 項目을 設定하도록 하여야 한다.

(1) 出生統計報告項目

(i) 事件 및 幼兒의 記載事項

- 出生時入會者
- 出生年月日
- 申告年月日.
  入院與否
- 嬉出者
  姙娠期間
- 性.

※ 出生形態 即 單胎兒 或은 雙胎兒 出生時体重.

:(ii) 父母에 관한 事項

父의 生年月日 未詳時는 年令

※ 母의 生年月日 未詳時는 年令

婚姻年月日 (嫡出子에 限함)

産 業

敎育程度

※ 母의 出生兒數

職 業

常住地 (母의)

地位 (雇傭主, 雇傭人等)

:(2) 死亡統計報告項目

:(i) 事件에 관한 事項

※ 死 因

- 診斷者 (certifier)
- 死亡年月日
- 申告年月日
- 死亡場所

(ii) 死亡者에 관한 事項

生存夫婦의 年令

(既婚에 限함)

- 生年月日 (未詳時는 年令)
- 入院
- 産業
- 婚子數否 (1才 以下)
- 教育水準
- 配偶関係
- 出生児数 (妊娠可能 期以上의 女子)

職　業

※ 常任地

※ 性

地位(雇傭主 또는 雇傭人等

(3) 胎児死亡統計報告項目

(1) 事件 및 死亡者에 관한 事項.

胎児死亡原因

診断者 或은 入會者

※ 胎児死亡年月日

(分娩에 依함)

※ 申告年月日

加療與否.

※ 嫡出子與否

※ 妊娠期間

※ 胎児死亡場所

※ 性

※ 出生形態 即 單胎兒 雙胎兒

分娩時의 体重

:(ii) 父母에 관한 事項

父의 生年月日 (未詳時는 年令)

※ 母의 生年月日

(未詳時는 年令)

婚姻年月日 (婚出子에 對한)

産 業

敎育水準

※ 出生兒數

職 業

※ 常住地 (母의)

地位 (雇傭主 또는 雇傭人等)

:(4) 婚姻統計報告項目

:(i) 事件에 関한 事項

※ 婚姻年月日

申告年月日

※ 婚姻場所

:(ii) 夫婦에 관한 事項

※ 生年月日(未詳時는 年令)

産 業

教育水準

※ 配偶関係

婚姻前配偶関係

職 業

※ 常在地

地 位(傭人 또는 被傭人等)

:(5) 離婚統計報告項目

:(i) 事件에 관한 事項

※ 離婚年月日

申告年月日

※ 婚姻場所

(ii) 當事者에 관한 事項

※ 生年月日 (未詳時는 年令)

※ 婚姻年月日

産 業

敎育水準

離婚時의 子女數

婚姻前配偶關係

職 業

婚姻場所

※ 常住地

地位 (傭人 또는 被傭人等)

유엔 勸告에는 두가지 觀点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 優先順位項目은 어떠한 國

家에서도 資料가 蒐集되고 있으며 次位項目은 國家의 狀態나 必要에 따라 取捨選択되고 있다는 事実이다.

이 두가지 外에 「原則」 (6) 項에서 明示된 第三位 項目은 各国의 必要에 따라 蒐集될 것인데 即 世界的으로 適用되지 않는 特殊한 問題 "民族" "種族에 관한 事項" "言語" 等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國際勧告는 各国의 特殊한 事情을 勘案하여 어떤 一定한 限界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第八次 優先順位를 보면 各事件의 形態에 對해 簡單明瞭한 事項임을 알 수 있으며 出生報告에는 八0個項目內外, 死亡에는 8個, 胎児死亡에는 八0個 婚姻에는 5個, 離婚에는

6個項目으로 되어있다 優先順位項目은 特殊한 것이 없기 때문에 蒐集上 困難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最小限의 基本項目集計로서 人口学的또는 保健業務에 有用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其外 項目은 그 나라의 動態統計 担当機関의 必要에 依해서 集計計劃을 拡大시킬 수 있도록 한것이다.

羅列한 項目中 基本項目(本表)과 二次項目(表識別음)은 動態統計 分野에 있어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事項을 모두 包含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면 報告項目은 모두 集計를 要하는 動態統計報告의 標準과 內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各項目이 有益하게 使用되거나 또는 資料를 얻는데 따라오는 難点은 定義와 分類

를 勸告하고 있는 第X章에서 論議할 것이다.

動態事件에 관한 統計報告의 內容에 對한 基本的인 勸告가 有益하리라는 것은 말할 必要가 없다. 國內問題로 볼때도 基本的項目의 勸告가 動態統計를 有益 有用하게 하는 指標가 될 것이며 國際的觀点에서 볼 때도 多數國家間의 資料를 比較할 수 있는 利点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各國의 統計報告에 유엔의 勸告項目이 모두 包含되도록 하는데 國際動態統計計劃의 目的이 있다.

2. 各國의 實例.

統計報告가 戶籍記錄에 있는 資料를 복사 또는 拔萃 或은 追加함에 있어 各國의 戶籍記錄이 同一한 資料를 大体로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大多

數 國家가 必要로 하는 統計情報의 項目은 各國이 數似하다고 생각된다.

各國別로 蒐集된 情報項目의 類似 或은 非類似性을 決定하고 또 이러한 蒐集計劃이 얼마나 國際勸告에 充足한가를 알기 위하여 1950年1月1日에 65個國이 使用하고 있는 出生. 死亡. 婚姻 離婚의 統計報告를 研究하였다.

單只 4個國의 5個事件에 對한 統計書式을 얻지 못하였을 뿐이며 其外 國家에 對해서는 統計報告가 全然 없다든가 不適合한 것으로서 出生은 60個國 死亡 61個國、死産 57個国 婚姻 51個國、離婚 40個國의 情報를 얻었다.

이 報告書上 蒐集된 各項目은 本書의 마지막 有表 포켓三에 있는 13—17表를 보면 알 수 있다. (訳者註; 本表는 省略되어 있음)

13-17表上의 項目은 유엔의 勸告項目으로 採択된 範疇에 따라 分類된 것이다. 各 範疇는 參考에 便利하도록 알파벳順으로 羅列되고 있다.

이 表는 全國的 水準에서 얻을 수 있는 項目을 提示한 即 全國的 集計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動態統計가 全國的 水準에서 編纂되는 書式을 分析한다는 것은 重要한 事実이다 如斯한 5種의 動態事件에 對한 分散編纂制度를 取하고 있는 9個國에 對하여는 13-17表에서 項目을 発見치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標準表에 包含되고 있을 뿐 아니라 地方水準에서 作成된 要計表가 決局 全國的 水準에서 綜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報告書의 限界(limitation)는 明白한 것이다.

13-17表의 內容은 問題가 되지 않으나

各項目의 質疑形式을 正確히 하지 못한다는 点을 分明히해둘 必要가 있다.

이것은 選定된 項目에 對한 情報를 導出하기 위해 考案된 質疑方法이 國家 또는 地方的 諸與件 또는 慣習에 依하여 다르기 때문이다.

例컨대 어떤 나라에서는 "入院" (hospitalization) 에 對한 質疑에서 病院의 이름 在所를 묻는데 反해 어떤 나라에서는 單只 "可" (yes) "否" (no) 만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區分은 13-17 表로 봐서는 明白하지 못하다 또한 年令에 관한 答辭은 詳細할 것을 要하는 程度 例컨데 年 月 日 時 分은 13~17 表로서는 알 수 없다. 13~17 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一定한 情報

項目에 관한 質問을 統計書式에 含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다.

(3) 國家当 項目數

ノヨーノク表上의 各項目의 範囲가 넓고 複雜한 것은 世界 여러 地域에서 蒐集되는 人口 또는 保健資料가 甚히 많다는 事実을 立證한다.

項目의 羅列은 資料가 그렇게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中에 어떤 것은 몇몇 國家에 쓰일뿐인데 그 外의 것은 動態統計에 있어 全般的으로 쓰일 수 있는 項目인 것같다.

第ノ3表는 55個의 重要項目과 細項(sub-items)이 있고 第ノ4表의 死亡統計報告書에는 52個의 主要項目과 特히 死因과 關係

된 比較的 많은 補助項目을 갖고 있다.

第15表의 死産統計報告書는 最大 60個項目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出生, 死亡統計報告書도 死産을 報告하고 있는 國家가 있기 때문이나 이 60個項目이 모두 該當하는 것은 아니다. 第16表上의 56個婚姻統計報告書는 58個의 相異項目을 갖고 있으며,

第17表의 40個統計報告書는 42個項目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一個国은 全然 含合하지 않고 있으나 反面 提示한 項目을 거의다 含合하고 있는 国家도 있다. 各国當 項目数는 레바논의 4個項目에서 이스라엘의 34個項目으로 크게 다르다.

最大 最少의 項目을 各報告形態別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유엔의 順位別로도 함께 보기로 한다.

統計報告	國家当項目数 最小	中位	最大	유엔의 勸告数 1次順位	2次順位
出生	4	19~20	34	10	19
死亡	4	16	27	8	17
死産 (胎児死亡)	3	18~19	44	10	20
婚姻	2	18~19	31	5	11
離婚	2	12	23	6	13

위의 表가 나타나는 바로는 첫째 動態統計의 全国水準에서 蒐集한 項目数에 있어서 各国間의 差가 크다는 것이다.

最小의 項目数를 가진 国家는 全国統計를 個別的 統計報告書에 依하여 얻고 있는 國家가

아니고 要計表에 依하여 얻고 있는 國家들이다.

最大의 項目数를 가진 國家는 쉽사리 分類할 수 없으나 이스라엘, 비델란드 볼리비아, 그리스, 체코스라바키아를 包含한다.

婚姻報告書를 除外하고 各國別로 蒐集한 中位項目数는 유엔의 提示한 名單과 거의 맞서고 있다.

換言하면 各國의 50%가 유엔이 提示한 1/2 優先順位를 合한 項目에 거의 一致하는 總積報項目数를 蒐集하고 있다. 出生報告項目이 10個項目에 未達하는 國家는 80個國中 7個國에 不過하다.

따라서 90% 가 유엔의 提示한 1次 項目을 出生報告에 포含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死亡統計報告에는 93%, 死産에는 84%, 婚姻에는 96%, 離婚에는 87% 로 되어 있다. 總項目数로 볼 때 大多数 国家가 유엔이 勧告한 最小項目을 超過하고 있으며 第2次 順位의 項目을 全部 포含하고 있는 國家는 全体의 半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各国当 項目数로 볼 때 유엔 勧告

項目은 実際로 모두 쓰이고 있다.

(6) 項目当 国家数

各国別로 본 蒐集 項目数는 유엔의 勧告数를 上廻하나 蒐集된 情報形態는 極히 相異하다. 各國의 蒐集計劃을 ノ3－ノ7 表에서 볼 것같으면 各 報告上의 重要項目이 国家의 数에 比例해서 一定한 順序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나 유엔의 勧告한 ノ次優先 順位(**)와

2次 優先順位로 配列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出生報告項目. 다음 表에서 보다시피 出生報告上의 項目은 各國이 蒐集하고 있는 項目을 國家数에 따라 一定한 順序로 配例한 것이다.

第1 3表上의 60個國의 報告를 검토시킨 것이다. 여기에 提示한 項目은 모두 55個項目인데 1 3表上의 嫡出子. 出生児数等의 細項을 除外하였기 때문이다.

出生報告項目	項目別国家数
** 幼児의 性別	60
** 幼児出生年月日	54
出生申告場所	51
** 適出子	50
** 母의 生年月日 或은 年令	50
** 出生申告年月日	48
幼児出生申告数	46
** 出生形態	46
父의 職業	45
** 幼児의 出生地	43
** 父의 生年月日 或은 年令	41
** 母의 出生児数	41
* 母의 職業	37
** 母의 居住地	36

幼児의 姓名 ——— 34

* 入院 ——— 28

父의 市民権 ——— 28

母의 市民権 ——— 28

死産, 出生의 與否 ——— 27

* * 出生時 入會者 ——— 24

母의 姓名 ——— 23

父의 姓名 ——— 22

父의 居住地 ——— 22

* 母의 婚姻年月日 ——— 20

母의 出生地 ——— 20

父의 出生地 ——— 19

* 父의 産業 ——— 16

父의 宗教 ——— 15

母의 産業 ——— 14

母의 宗教 ——— 14

父의 種族 或은 皮膚色 ——— 8

母의 種族 或은 皮膚色 ——— 8

幼児의 市民権 ——— 8

幼児의 宗教 ——— 8

* 姓姻期間 ——— 7

母의 本籍 ——— 6

* 母의 教育水準 ——— 5

母의 婚姻期間 ——— 5

幼児의 種族 或은 皮膚色 ——— 5

* 父의 教育水準 ——— 5

父의 本籍 ——— 5

幼児의 早産與否 ——— 4

* 出生時 嬰児의 体重 ——— 4

幼児洗礼年月日 ——— 3

幼兒의 健康狀態 ——— 3

母의 母國語使用與否 ——— 3

父의 母國語 〃 ——— 3

父의 出生申告番号 ——— 2

母의 出生申告数 ——— 2

順産與否 ——— 2

出生時 幼兒의 身長 ——— 1

母의 入院期間 ——— 1

母의 健康狀態 ——— 1

與與 例를 除外하고 1次 優先順位 (＊＊) 項目은 上部에서 부터 一定한 順序를 가지고 集中되어 있음을 即刻 알 수 있다 即 大部分의 國家가 出生報告上에 이러한 項目을 包含하고 있다.

100% 採用하고 있는 項目은 性이고 다음으로 生年月日 嫡出子 與否 母의 生年月日、申告年月日

出生形態、出生地、出生児数、母의 居住地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項目은 全体国家中 60% 까지 蒐集하고 있는 셈이다

1次 優先順位 外에 2次 優先順位 即 母의 職業, 父의 職業父의 生年月日은 이와 同等한 集団에 屬하고 있다

第1次 優先順位로서 廣範하게 蒐集되고 있지 않는 項目은 "出生時入會者" 인데 60個國中 24個國이 蒐集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유엔이 第2次 優先順位로서 勸告한 殘余項目은 入院이 30個國에서 出生時의 幼児体重 蒐集国家로서의 4個國의 分布를 보이고 있다

早産與否를 決定함에 있어서 幼児의 体重이 이를 決定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다.

姓姻期間 — 여기서는 單只 7個國이 蒐集하는 것을 따름인데 — 將次 이의 重要性이 認定될 것 같다.

父母의 敎育程度에 관한 情報나 産業 또는 地位에 관한 情報는 1950年 當時에는 少數國家에서 蒐集되었지마는 社会的 人口学的 經濟的 要因에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点으로 볼 때 広範圍한 蒐集을 刺戟 시킬 傾向이 濃厚하다.

死亡報告項目 、 61個國이 死亡統計報告 項目을 蒐集하고 있는데 項目別 國家数는 다음과 같다

死亡報告項目	項目別國家数
※ ※ 死亡者의 性別	61
※ ※ 死亡者의 出生年月日 或은 年令	60
※ ※ 死 因	57
※ 配偶関係	54

死亡申告場所 ——— 53
** 死亡年月日 ——— 52
* 死亡者의 職業 ——— 49
** 死亡申告年月日 ——— 48
死亡申告数 ——— 46
** 死亡場所 ——— 44
** 死亡者의 居住地 ——— 44
死亡者의 姓名 ——— 39
** 死亡診断者 ——— 36
死亡者의 市民权 ——— 33
* 入 院 ——— 31
* 疾患時의 加療 ——— 31
* 死亡者의 嫡出與否(1才未満) ——— 30
死亡地의 出生地 ——— 29
* 死亡者의 産業 ——— 22

死亡者의 宗教 ——— 17

父 或은 母의 職業 ——— 15

死亡者의 種族 或은 皮膚色 ——— 14

父 或은 母의 姓名 ——— 12

* 死亡者의 地位 (雇傭主 或은 雇傭人等) ——— 12

* 死亡者의 子女 ——— 11

* 生存夫婦의 生年月日 或은 享令 ——— 11

死亡場所에서 滯留한 期間 ——— 10

死亡者의 婚姻年月日 ——— 9

死産 或은 死亡與否 ——— 7

死亡者의 本籍 ——— 6

父 或은 母의 出生地 ——— 6

幼児(死亡者)의 飮食物 ——— 6

死亡者의 出生申告番号 ——— 5

父 或은 母의 年令 ——— 5

父 或은 母의 産業 ——— 5

死亡者의 出生順位 ——— 4

死亡者의 婚姻期間 ——— 4

死亡証明書番号 ——— 4

* 死亡者의 敎育程度 ——— 4

死亡者의 社会保障番号 ——— 3

死亡者의 出生申告地 ——— 3

死亡者의 婚姻年令 ——— 2

父의 生年月日 ——— 2

父 或은 母의 地位 (雇傭主, 雇傭人等)

——— 2

死亡者의 무産與否 ——— 2

死亡者 父母의 生存與否 ——— 2

父 或은 母의 市民権 ——— 2

死亡者의 言語 ——————————— /

死亡者의 婚姻場所 ——————————— /

死亡者의 婚姻申告所 ——————————— /

死亡者의 出生体重 및 身長 ——————— /

父 或은 母의 種族및 皮膚色 ——————— /

여기서도 유엔이 勸告한 세가지 /次優先順位項目 即 死亡者의 姓, 生年月日, 死因이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위로 갈수록 蒐集國家의 数가 集中되는 것은 出生統計報告와 같다. 即 유엔 勸告의 /次優先順位項目에는 6/個國中 36個國 以上이 情報蒐集을 하고 있다.

유엔의 2次優先順位中에는 死亡者의 敎育程度가 單只 4個國에서 蒐集되고 있을 뿐이다.

死産申告項目 死産統計報告에 使用되고 있는 蒐集項目의 序列分析은 29個國이 出生및 死亡統計報告書

로 死産統計報告書를 代用하고 있기 때문에 困難한바 있다.

이로 말미암아 敎育程度、配偶関係、市民権、職業、宗敎 等等과 같은 胎児에 관계없는 많은 項目이 使用되고 있다. 이러한 理由로서 11個의 該当 없는 項目은 以下의 序列에서 削除하였다.

死産統計報告項目	項目別 国家数
** 胎児의 性別	57
** 分娩年月日	49
申告場所	48
** 嫡出與否	47
** 母의 生年月日 或은 年令	45
** 出生形態	43
** 申告年月日	42
申告番号	40

* * 分娩場所 ——— 37

* 父의 職業 ——— 37

* * 母의 居住地 ——— 36

* * 母의 出生児数 ——— 36

* 入院 ——— 35

* 診断者 或은 入會者 ——— 35

* 母의 職業 ——— 34

* 父의 生年月日 或은 年令 ——— 32

* 死産原因(胎児死亡) ——— 31

死産, 出生, 死亡與否 ——— 27

母의 姓名 ——— 26

胎児의 姓名 ——— 24

母의 市民権 ——— 24

* * 姓娠期間 ——— 23

父의 姓名 ——— 23

父의 市民權 ——— 27

父의 居住地 ——— 17

母의 出生地 ——— 17

母의 産業 ——— 16

母의 婚姻年月日 ——— 16

死亡時(分娩前) ——— 15

父의 産業 ——— 15

父의 出生地 ——— 14

母의 種族 或은 皮膚 ——— 11

母의 宗教 ——— 11

父의 宗教 ——— 11

母의 地位(雇傭人 雇傭人等) ——— 10

父의 地位(〃 〃) ——— 10

父의 種族 或은 皮膚 ——— 9

母의 婚姻持続期間 ——— 5

母의 本籍 ——— 5

* 胎児의 分娩時 体重 ——— 3

* 母의 教育程度 ——— 3

* 父의 〃 ——— 3

母의 出生申告番号 ——— 2

父의 〃 ——— 2

胎児의 早産與否 ——— 2

胎児의 分娩時 身長 ——— 1

母의 言語 ——— 1

父의 〃 ——— 1

本表는 51個國의 統計報告書를 使用한 것이다 本表는 出生, 死亡報告書의 경우에서와 같이 유엔 勧告項目이 多数 國家에서 蒐集되고 있는 項目 — 即 性別, 出生形態, 申告日字, 分娩場所, 母의 居住地, 出生児数이다

이 9個項目은 57個國中 36個國 以上이 蒐集하고 있다. 유엔의 「原則」에서 1次優先順位로 되고 있는 婚姻期間은 57個國中 單只 半数에 該当하는 國家가 蒐集하고 있을 따름인데 이것은 아마 이 項目의 歷史가 짧다고 事実에 終由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職業項目을 除外하고 死産에 있어서 社会、經済的 項目이 大多数国家에서 尙今 蒐集되고 있지 않다. 父의 職業項目은 아주 頻度가 높은데 57個國中 37個國, 反해서 母의 職業에 対한 頻度는 34個國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父 또는 母의 産業, 父母의 兵役, 地位, 敎育程度를 蒐集하고 있는 國家数 얼마되지 않는다. 婚姻統計報告項目, 婚姻統計報告書는 56個에 対해서 入手 可能하다.

아래의 表는 56個 報告上에 나타난 総58個項目

으로서 項目 当 國家数를 表示한 것이다.

婚姻統計報告項目	項目当國家数
** 新婦의 生年月日 或은 年令	54
** 新郎의 〃 〃 〃	54
** 新婦의 配偶関係	52
** 新郎의 〃	52
婚姻申告場所	49
** 新郎의 職業	46
婚姻申告番号	44
** 婚姻年月日	43
* 婚姻申告年月日	42
* 新婦의 職業	41
〃 市民権	37
新郎의 〃	37
** 〃 居住地	35

** 新婦의 居住地 ——— 33

新郎의 姓名 ——— 28

新婦의 姓名 ——— 27

** 婚姻 場所 ——— 27

新婦의 出生地 ——— 24

新郎의 〃 ——— 24

新婦의 宗教 ——— 19

新郎의 〃 ——— 19

* 〃 教育程度 ——— 19

* 新婦의 婚姻回数 ——— 18

* 新郎의 〃 ——— 18

* 新婦의 教育程度 ——— 18

婚姻의 形態(一般, 宗教, 在来) ——— 14

婚姻으로 因한 婦出児 ——— 13

* 新婦의 地位(産業主 或은 産業人等) — 13

* 新郎의 地位 (雇傭主 或은 雇傭人等) —— 13

婚姻의 条着 —— 12

* 新婦의 産業 —— 10

* 新郎의 〃 —— 9

新郎에 対한 新婦의 関係 —— 9

新婦에 対한 関係 —— 9

新婦의 種族 或은 皮膚 —— 8

新郎의 〃 〃 〃 —— 8

当事者 両家父의 姓名 —— 8

〃 〃 職業 —— 8

新郎의 以前 出生児数 —— 7

新婦의 最終婚姻取消年月日 —— 6

新郎의 〃 —— 6

新婦의 本籍 —— 5

新郎의 〃 —— 5

兩事者	母의 姓名	4
新婦의	証明番号	3
新郎의	〃	3
新婦의	言語	3
新郎의	言語	3
當事者	母의 職業	2
〃	父의 出生地	2
〃	母의 〃	2
新婦의	嫡出子吳否	1
新郎의	嫡出子吳否	1
當事者	父의 市民权	1
〃	母의 〃	1
〃	父의 居住地	1
〃	母의 〃	1

유엔이 勧告한 1次優先順位項目 即 生年月日 當事者의 配偶関係等이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나 56個國이 모두 蒐集하고 있지 않다.

其外의 1次優先順位 即 婚姻日字, 居住地 婚姻場所等은 56個國의 50% 以上에 該当하는 国家가 蒐集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次優先順位項目과 関聯이 깊은 社会、経済関係項目은 56個國中 3、4個 國家가 蒐集하고 있을 따름이다.

"事件発生地"와 "居住地"와의 관계는 出生, 死亡, 死産報告上에 두 個의 項目으로 되어 있으나 婚姻報告書上에는 더욱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大部分 國家의 婚姻申告는 婚姻場所에서 申告되기 때문에 두 項目은 同一한 場所가 될 것이다. 따라서 統計報告上에 "婚姻場所"를 要하는 國家는 27

個國인데 反해서 "婚姻申告地"의 記載를 要하는 国家数는 49個國에 達하고 있다.

"婚姻場所"와 "新郎의 居住地"와의 관계에는 密接한 関係가 역시 있는데 이것은 國內法이 "居住地"란 婚姻이 거행된 場所라고 規定하기 때문이다.

또한 "婚姻年月日"와 "婚姻申告年月日"간에도 類似한 関係가 있는데 이것 亦是 大多数 国家가 婚姻申告는 婚姻을 거행한 即刻 申告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參照 9表)

이러한 "場所"와 "年月日"间의 相互関係는 上記表中에 나타난바와 같이 頻度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介在된 要因들을 銳利하게 分析하면 더욱 興味있는 事実이 밝혀질 것이다.

雜婚報告項目, 最終婚姻의 解消라는 意味에서 본 雜婚이 実在하지 않는 國家는 9個國이나 되며,

其外 몇몇 統計報告書에서 資料가 入手不可하므로 以下表의 分析에 쓰인 國家数는 40個国에 不過하다

離婚統計報告項目	項目別 国家数
** 離婚当事者의 子女数	32
** 離婚 或은 最終法院 判決日字	31
** 離婚当事者의 生年月日 或은 年令	31
離婚事由	30
* 離婚当事者의 職業	28
** 離婚地 (地域 或은 法院)	28
申告番号	26
* 離婚申告日字	24
* * 婚姻取消日字	23
離婚主張側 (提訴者)	22
離婚申告地	20
* * 離婚当事者의 居住地 (離婚時)	19

離婚当事者의 市民権 ——— 19

離婚当事者의 宗教 ——— 14

離婚当事者의 姓名 ——— 13

取消될 婚姻期間 ——— 12

離婚当事者의 出生地 ——— 9

訴訟日字 ——— 9

* 離婚者의 教育程度 ——— 9

離婚者의 離婚回收 ——— 8

* 取消될 婚姻地 ——— 8

離婚当事者의 婚姻以前 配偶関係 ——— 7

被訴者 ——— 6

* 離婚当事者의 地位(雇傭主 或은 被傭人等) ——— 6

離婚의 形態(合意, 其他) ——— 6

離婚前의 別居 ——— 6

婚姻申告日字 ——— 5

* 雅婚当事者의 産業 ——— 5

* 雅婚当事者의 婚姻数 ——— 5

雅婚当事者의 居住地 ——— 4

雅婚承諾書 ——— 4

雅婚当事者의 種族 或은 皮膚 ——— 4

婚姻形態(一般、宗教、在來) ——— 4

婚姻申告番号 ——— 3

慰藉料(生活費) ——— 3

婚姻申告地 ——— 3

手術料 ——— 2

雅婚当事者의 婚姻年令 ——— 2

雅婚当事者의 証明番号 ——— 2

雅婚当事者의 嫡出與否 ——— 2

雅婚当事者의 本籍 ——— 2

雅婚当事者의 言語 혹은 母國語 ———— /

本表에는 모든 나라가 共通的으로 蒐集하고 있는 項目이 하나도 없으며 單只 "雅婚当事者의 子女数"에 對해서 32個國이 蒐集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이 勸告한 1次優先順位項目 即 雅婚日字, 雅婚当事者의 生年月日, 雅婚場所, 最終婚姻日字, 居住地等으로 順位를 이루고 있으며 마지막 項目은 19個國이 蒐集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40個國의 折半 밖에 되지 않는다

残余項目의 順位는 出生, 死亡, 婚姻統計 項目과 類似하다. 婚姻 統計報告上의 "場所"및 "日字"는 婚姻統計報告에도 흔히 適用된다

第五章

統計報告項目의 用途定義分類의 其他

第X章 統計報告項目의 用途, 定義分類및 其他

第IX章에서는 出生, 死亡, 死産 婚姻, 離婚의 統計報告를 蒐集키 위한 報告項目을 論議하였다. 本章은 第IX章의 補充的 役割을 하는데 各項目에 対하여 報告한바의 定義, 分類方法과 形式에 関한 特別한 問題를 다루므로 動態統計 分析에 統計報告 項目의 効用性을 높이는데 있다.

統計目的에서 要하는 情報를 얻기 爲하여서는 戶籍官으로 하여금 統計報告上의 各項目이 明白한 定義를 知悉토록 해야 한다는 事実이다. 이와같은 重要性을 勘案하여 유엔 「動態統計制度의 諸原則」(1) 에서 特別한 勸告를 하고 있는데 「原則」은 다음과 같다.

"309 統計報告 項目의 定義

"(a) 統計報告上의 各 項目의 定義는 簡單明瞭,

하여야 한다.

"(b) 国際比較性을 갖기 위해서 採用된 国際標準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可能한 限 現在 各國이 実施하고 있는 人口센사스와 一致하여야 한다

이 「原則」이 첫째로 強調하고 있는 것은 定義의 規定이 國際標準定義와 그 나라에서 実施하고 있는 人口센사스의 定義의 可及的 一致하도록 되어야 한다는 点이다. 그 나라의 人口센사스 定義와 一致해야 한다는 点은 特히 重要한데 이것은 動態統計諸率은 그 나라 人口와의 関係에서 計算되기 때문이다.

萬若 두 統計에서 쓰이는 定義가 서로 다르다면 이에서 結果된 諸率의 評価가 困難하게 될 것이다. 一致되어야 할 点이란 以下에서 説明할 各定義에서 明白히 될 것이다.

統計報告上의 各項目을 일일이 研究하고 説明할 수

도 없거니와 必要도 없다. 따라서 実際上의 限界를 세우기 위해서 本章의 論議는 유엔이 各 報告上에 包含시키도록 提議한 項目과 各國이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事項을 取扱한 原則 3084 에 羅列된 項目만을 論議의 対象으로 한다

따라서 統計報告의 1個以上에 適用可能 할지라도 一括的으로 取扱한다. 이와 같은 綜合的인 說明이 可能한가의 與否는 13-17表의 項目을 보면 明白할 것이다. 各表上의 모든 項目은 여러가지 形態로 区分된다. 項目의 첫째 形態는 事件 그 自体의 性質과 事件 그 自体의 申告에 関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으로는 発生場所, 発生日字, 申告地 및 申告日字等으로 各事件마다 共通된 것 들이다 둘째 구분으로는 包含될 人的事項 (characteristics

of persons) 例컨데 父母, 死亡者 新婦의 新郎, 離婚者等에 관한 屬性(attributes)으로서 年令 職業, 敎育, 出生兒數 等等과 같은 項目들이다. 事件과 關係있는 者에 拘碍됨이 없이 이 두 그룹의 項目은 同一하게 定義되며 한가지 說明으로 出生, 死亡, 胎兒死亡, 婚姻, 離婚 統計에 關한 全般的인 說明이 된다

그래서 本論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說明할 것인데 1) 特定한 資料의 用途 b) 項目의 定義 蒐集形態, 分類에 對한 國際勸告 c) 資料蒐集에 考慮될 諸問題이다. 便宜上 項目은 알파벳順으로 한다

年 令

資料의 用途

動態事件에 關聯된 者의 年令情

報는 元來 分析目的에 있다. 母 或은 父의 年令別 出生集計는 그 自体만으로 或은 出生順位, 嫡出子, 職業等等과 더부러 出産力 研究의 基礎가 될 뿐 아니라 社会.經済的 差異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또 人口学研究의 基礎가 되는 代替諸率 (replacement rates)의 計算을 可能케도 한다.

死亡年令은 그 自体만으로나 或은 其外의 事項 即 死因, 職業과 같은 것과 交叉分類(Cross-classified)되므로 國民 保健計劃의 基幹이 되는 것이다. 또한 生命表의 作成과 純再生産率 其外의 重要한 것에 対해 그 用途가 크다.

婚姻年令은 未來의 出生패턴(pattern)을 아는 資料가 되며 將來의 그 나라 人口構造의 予測을 可能케 한다. 既婚者의 死亡 年令은 未亡者의 社会經済的 問題를 評価하는데 使用되며 既婚夫婦의

年令構造는 人口推定(population estimate)을 하게 하는 資料가 된다.

雅婚年令은 人口의 潛在力을 評価하거나 家庭的 安定與否를 評価하는데 使用할 수 있다. 萬若 年令別로 交叉分類(cross-classified)가 된다면 動態資料가 分類될 모든 事項이 더욱 意味있게 된다는 것은 말할 必要가 없다.

國際勸告

年令 換言하면 計算上 必要한 日字는 動態事件의 統計報告上 蒐集勸告한 項目中, 次優先順位로 되고 있다. 유엔統計委員會(2)(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는 動態統計를 爲한 年令의 定義를 내리바 있다. 提示한 定義는 人口센사스上의 標準定義와 一致하며 人口

委員會[3]가 勸告한 年令과 同一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年令(死産, 出生, 胎兒分娩, 婚姻, 離婚時点에 있어서의 生存期間)이란 出生日字와 事件發生日字間의 間隔으로서 滿으로 計算한 時間의 單位 即 年, 月, 週, 日, 時로서 表示된다"

本勸告定義의 年令이란 最終出生日(last birthday)로 定義하며 滿으로 計算한 時間의 單位로 表示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日字"라 함은 出生日字, 死亡日字 胎兒分娩日字, 婚姻日字, 離婚日字等과 같이 統計報告上의 質問과 直接的인 年令의 質問이 아니고 間接的인 日字의 質問이라는 것을 뜻한다.

유엔이 提示한 分類方案[4]은 普通 한가지 特徵 即 集計計劃에서 使用할 年令을 爲 或은 5才에서 始作하여 5才 階級 或은 10才 階級으로 묶고

있다. 이 方法은 相互 年令階級으로 平滑히 하자는데 있으며 이 方法이 世界的으로 承認되고 있다.[5] 母의 年令 出生統計에 있어서의 分類는 15才를 下限으로 하여 5才間隔 即 15~19, 20~24 ..... 45~49 才로 묶고 있는데 50才以上에 對해서는 記錄하지 않는다 이같은 分類는 유엔의 人口年鑑(Demographic Yearbook)[6]에 揭載된 多數國家의 動態統計에 있어서 거의 同一하게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亦是 諸率의 計算을 容易케 하므로 人口資料와 一致시키려는데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分類가 標準으로 되고 있다

父의 年令 父의 年令別 出生統計에 對한 國際標準이 提議된 바 없으나 역시 이러한 屬性(attribute)의 分類도 人口센사스와 一致해야 할것이다. 이의

分類는 母의 年令集計의 勸告를 따를 것이로되 年令下限은 15 才로 하지 않고 20 才로 하며 父의 能力을 參酌해서 上限은 50 才 以上으로 拡大시킬 수 있다. 그 같은 父의 年令分類 即 年令上限을 拡大한 것은 人口年鑑 (Demographic Yearbook)[7]의 父의 年令別 出生統計에 使用되었다.

死亡年令 一般死亡統計 에서는 1 才未滿 4 才까지는 各才別 그 以后 84 才까지는 5 才階級別, 80 才 以上으로 分類하는 것이 좋다. 이와 同一한 分類가 센사스에서도 提議된 것인데 이는 1950 年 前后에 施行할 人口센사스의 資料集計[8] (Trablation of Data from population Censuses to be Taken in or about 1950) 에서 볼 수 있다.

이는 性과 年令別 死因集計에 使用하도록 世界保健持構規約 一款第 6 條 (a) 에서 勸告된 것이다.

이와같이 細密한 年令 分類를 全体로서 본 그 나라의 死因統計의 性및 年令別分布나 性및 年令 그 自体의 五月分類에 根幹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된다. 地方級의 年令別集計는 "5才階級"으로 分類할 수도 있고 5才에서 74才까지 10年階級으로 묶을수도 있다. 이러한 分類는 유엔이 一般地方 및 市의 性 年令및 死因集計에 勸告한 것이다.(10) 이같은 年令階級은 世界保健機構의 勸告와도 一致하는데 該機構의 勸告는 大都市에 있어서의 性및 年令別 死因統計 都市와 農村 또는 行政区域의 性및 年令別 死因統計에 대해 勸告하고 있다(11)

乳児死亡, 年令別幼児死亡은 生后 1, 2日間에 死亡이 제일 많고 新生児死亡 (Neonatal mortality) (生后 1個月) 까지 死亡이 集中的으로 일어난다.

이에 對해 유엔統計委員會가 (U.N.S.C) 勸告한 年令分類는 第1週에 있어서는 日別로 하고 7~13日 14~20日 21~27日 28日~2個月未滿 2月~11個月까지는 月別로 分類토록 勸告하고 있다. 年令別 乳兒死亡은 分析하기 爲해 提議한 本分類는 世界保健機構의 年令別乳兒死亡에 關한 勸告에서도 엿볼수 있다 (8)

生後1年以內의 乳兒死亡 分布가 國民에 따라 顯著한 差異가 있고 保健計劃에 따라 크기 때문에 生後1年間의 乳兒死亡의 年令分類를 正確하게 細分類하도록 하고 있다. 勿論 過少申告가 年令分布에 重大한 影響力을 미칠것이지만 이러한 影響力에도 不拘하고 細分된 年令別 乳兒死亡統計는 保健問題에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年令이 많은데서 乳兒死亡率이 높다는 것은 衛生이나 營養等과 같은 國民保健

이 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立證한다 死因別 分類에서 볼때 5~11 日個月間에 發生하는 死亡의 原因이 主로 洩瀉(diarrhoea) 나 이와 類似한 疾病인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年少한 乳兒의 死亡原因은 早産에 크게 基因하거나 이에 類似한 虛弱 其外 子胎当時 原因 胎兒期의 狀態 또는 産台看護等에 관련된 諸原因이다 따라서 乳兒死亡을 減少시키려할 때에는 年令의 程度에 따라 相異한 方途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故로 定義의 明白을 期하여야 하지만 年令分類에 있어서도 滿으로 計算한 日. 週. 月等이 重要하다

婚姻 또는 推婚年令 婚姻 및 推婚에 關係된 年令分類는 最初 및 最終의 年令階級을 除外하고 死亡에 關係된 分類와 類似하다 15才 以下 15~24才까지는 5才階級으로 25才 以上으로 区分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分類는 死亡年令 分類와 類似하며 유엔人口委員会(44)가 「1950年頃에 実施될 人口센사스의 資料集計」를 爲해서 勸告한 分類와 一致한다.

資料獲得에 関한 諸問題

正確한 年令의 情報를 獲得하는 問題는 人間을 対象으로 하는 如何한 統計調査에 있어서나 하나의 共通된 問題로 되고 있다(45) 動態統計書式의 研究는 人口 센사스 調査票(schedules)와 마찬가지로 두가지 形態는 直接 最后의 生日을 물거나 或은 単純히 年令을 묻는 方法이 있고 다른 한 方法은 一定한 時点을 基準으로 해서 年令이 計算되는 日字를 間接的으로 質問하는 方法이 있다.

直接質問方法 直接質問하여 얻는 年令報告는 追加的으로 生年月日을 묻지 않는 限 正確을 期하지

못한다. 이의 根據를 찾는다든가 或은 再質問을 하지 않고서는 이를 證明할 수 없는 것이다. 直接年令質問에 依한 正確性은 여러가지 要因으로 影響을 받는데 이 中 하나는 一部의 應答者가 그들의 年令을 0, 2 或은 5, 8로 끝나는 年令으로 報告하는 傾向이 있다.(16) 이러한 數字選好의 傾向은 더구나 他人의 年令을 正確히 알지 못하고 있는 届出者가 出生 死亡報告를 하는 경우에 顯著하게 나타난다.

正確한 知識을 가지고도 大略的인 年令을 意識的으로 誤報하는 傾向이 있는데 그들은 故意的으로 年令을 過大 或은 過少 陳述하나 實際로 動態統計에 미치는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같은 事實은 事實을 歪曲하므로 받을 反射的 利益이 없다는 事實과 其外의 法的文書와 一致되도록 되어야 한다는 事實이

屆出者로 하여금 歪曲申告를 抑制케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社会保障을 받기 爲해서 死亡者의 年令 또는 生存夫婦의 年令이 歪曲될 가의 與否는 알수 없다.

單純한 直接質問方法의 缺点이란 비록 推算的이라는 評을 避치 못하나 年令分布上의 年令未詳을 減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間接質問方法 間接的 年令情報를 얻는 方法 即 生年月日 婚姻年月日, 死亡年月日을 묻는 方法은 보다 正確한 情報가 될 것이며 年令推算의 統一을 期할수 있을 것이다.

間接的 年令質問方法은 出生, 死亡에서는 別로 難点이 없으나 "婚姻年月日"이나 或은 "離婚年月日"의 경우에는 반드시 適合한 것이 못되는데 이것은 婚姻 或은 離婚이 証明日字와 一致하지 않으므로 発生日字를 記憶力에 依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最近 発生한 離婚 或은 婚姻

이면 더욱 正確性을 가진 것임은 말할 必要도 없다.

直接的인 質問方法보다 間接方法이 正確性과 資料의 有用性을 갖었음에도 不拘하고 흔히 이 없다는 것인데 文盲하고 未開한 國民은 年月日을 알지 못하므로 漠然히 年令을 計算하고 있을뿐 이라는 것이다.

들께로는 原出者가 他人의 日字를 正確하게 알수 없다는 事実이다.

出生時 入会者

資料의 用途

分娩에 医師、看護婦、助産婦等의 入会 與否는 當該 地域의 保健医療의 発達水準에 依해서 決定된다.

入会者 形態別 出生集計는 一特히 嬉出子別 入院與否別로 項目이 교叉分類 된다면 一潛在的인 社会問題에 관한 情報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부러 이같은 資料는 社会階級間에 医療施設의 利用度와 어느 部分에 追加的인 事業이 必要한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國民保健이라는 严格한 現地에서 보면 다른 快用度를 가지고 있다.

分娩、前後 中에 医師 或은 看護婦가 入会한 母 또는 子女는 入会者 없이 分娩한 母 或은 子女의 生残期间보다 길다는 事実이 周知되고 있다.

이러한 資料로 부터 同時出生集団中의 幼児死亡 또는 産母의 死亡에 関한 所究를 할 수 있다

國際勸告

各国間에 医師, 助産婦, 看護婦 等의 定義上 差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項目으로 集計된 資料는 国際比較性이 困難케 된다. 이러한 難点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유엔은 出生時入會者 "(attandant at birth)를 蒐集項目中 第1次優先項目으로 勸告하면서 다음과 같은 定義를 하였는데 入会者란 每의 分娩을 도운 医師 看護婦 助産婦等을 말한다" 이 資料는 国內的 用途가 于先하기 때문에 使用될 分類는 国內目的에 알맞도록 할 것이다.

国際勸告가 이 項目에 対한 情報蒐集을 奬励한 것은 乳児 및 母性死亡을 左右하는 項目이기 때문이다.

資料獲得에 관한 諸問題

分娩時에 医師가 入会하였다면 이 項目의 記錄에 別로 困難이 없겠으나 世界大多数国家에 있어서

入会者가 없는 것이 (一般人의 入会는 除外) 大部分이므로 이 項目質問에서는 의례히 "없음" 이라고 答辯되고 있다. 項目分類上의 差異를 除外하고는 웰로 情報獲得에 困難이 없는 것이다.

其外 考慮해야할 困難한 것中의 하나는 人口의 集団이 다르거나 慣習이 다른 階層으로 構成된 国家에 있어서 国内 統計의 比較性이라든가 혹은 国際比較의 問題이다. 이것은 바로 医師 看護婦, 助産婦 其他入会者의 定義問題에 基因한다. 普通 이러한 者는 国家가 定한 要件에 該当하는 資格所持者이나 그 地方의 慣習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出生順位 (Birth order)

每의 出生児数 参照

出生地 (Birth-place)

出生地 (place of Birth) 参照

死因 (Cause of Death)

資料의 用途

一般死因 或은 胎児死因은 死亡統計 或은 胎児死亡 統計 (foetal-death statistic) 에 있어 가장 重要한 項目이다.

国民保健当局은 動態統計項目中에서도 主로 死因에 따라 左右되는데 이 死因統計는 保健水準의 指標이며 保健計劃樹立의 先導者인 것이다. 이와 같은 面에서 死因統計가 完全하고 正確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国民保健事業에 있어 死因項目의 基本的性格은 「国際標準疾病 傷害 死因分類」 (Manual of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njuries, and Causes of

Death) 에서 明白히 밝힌바 있으며, 保健計劃의 目標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國民保健目標란 말할 것도 없이 死因을 退治하는데 있으나 이 目的을 遂行하려면 死因統計가 있어야 한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이미 言及한바 있지만 死因資料가 使用되자면 年令別 死因은 勿論 性別 診斷者別 入院別 死因과 같은 統計의 互閑分類 (Cross-classify)가 있어야 한다.

國際動向

國際聯盟保健機構 死因報告問題에 관한 会議가 開催된 것은 1925年 9月 21~25日間에 쥬네브의 國際会議이다. 本会議에 參席한 者는 中央統計官과 中央統計官署以外에서 死因統計가 作成되는 医療統計官署의 長或은 顧問으

로 構成되었던 것이다.

本会議는 어떻게 하면 死因統計를 効果的으로 얻을 수 있는가를 制度上의 問題로 다루었는데 다음과 같은 点을 勧告한 것이다.

1. 死因診斷은 入会医師가 할 것.
2. 医療統計情報와 一般行政当局에서 作成되는 것과는 分離할 것.
3. 死因診斷의 信頼性을 保障할 것.
4. 重要한 死因問題에는 死亡診斷書를 統一할 것.
5. 死因이 두個以上일 때 選定할 死因의 原則을 統一할 것.
6. 諸原則 또는 診斷書에 対한 医師의 教育
7. 人口統計와 死因集計를 集中化시킬것.
8. 統計作成形式을 統一시킬것. 特히 性別 都市 農村別 月別分布를 5才階級別로 統一시킬것.

9. 国際的 調整을 為하여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調査할 것.

10. 国際死因便覧을 作成하여 各国이 使用할 用語를 定義할 것.

1項은 死因診斷은 医師가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같은 診斷이 有益하며 이를 遂行할 만한 充分한 医師가 確保되어야 하며 適切히 医師를, 分散할 수 없는 경우에는 医師의 養成을 図謀해야 한다는 勧告이다.

2項과 3項 即 医療統計情報를 一般 戸籍当局의 情報와 区分하여 秘密을 保障해야할 死因資料는 完全히 分離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完全한 秘密이 保障될때 비로소 率直 淡白한 陳述이 나온다"는 말이다. 따라서 科學的이고도 医学的인 陳述을 一般関係当局에서 使用될 陳述과 分離

시키다는 것은 理論的인 面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勸告는 相當히 論難의 對象이 되겠으나 死亡統計 特히 特殊한 疾病 또는 알콜中毒으로 死亡한 統計에 秘密히 保障된 다만 一翼을 줌은 明白하다.

한편 法目的으로의 死亡形態는 單只 自然死 或은 不慮의 死라고 記載하는 것으로 充分할 것이다.

國際聯盟勸告 4項과 5項 即 死因質問의 統一性과 初期疾病 原因의 決定에 관한 勸告는 特히 重要한바 있다. 死因診斷書의 樣式에 關한 國際聯盟의 勸告에는 두가지 質問方式이 있는데 (1) 直接的 原因과 (2) 間接的 原因으로 区分된다. 만약 死因이 한가지 以上일 경우 單只 "死因" 만을 묻는다면 死因에 있어 "主要原因" (Primary) 과 "死亡에 이르게 한 原因"

(contributing) 을 들어서 集計한 国家와의 資料 比較가 不可能하게 된다. 만약 어떤 届出者는 單純히 "死因" 이라는 質問을 받는데 対해서 어떤者는 医学에서 말하는 病名을 그대로 質問받는다면 이 結果는 比較할 수 없는 差異가 생긴다. 勿論 国際的인 死因診斷書의 様式이 있을지라도 医師에 따라서 一定한 範囲内에서 그 以上의 細部事項도 記載할 수 있음은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統計라는 見地에서 볼때 報告様式의 統一이 더 正確한 情報를 蒐集케 할 것이다.

9項은 不明瞭한 死因을 調査토록 한 것인데 (9) 死因은 언제나 死因으로 認定될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死因情報에 漏落이 있거나 또는 直接的인 死因이나 先行死因으로 報告된 死因이 疑心적다면 届出者로 하여금 追加情報를

報告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明白하지 못한 경우에 追加情報를 再質問하거나 分明히 그릇된 情報를 訂正할 때는 医師의 診斷에 依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같은 方途를 取할 수 없는 경우에는 不明確한 情報를 明確하게끔 訂正한다든가 様式의 記載하는 等 死因報告書를 再檢討하는 것이 좋은 方法일 것이다. 医師의 診斷書가 添付되지 않았다든가 不適合한 用語를 使用하였을 경우에는 單只 書類의 審査만으로도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도 못한 경우에는 이를 作成한 医師가 아니고서는 이를 証正할 수 없을 것이다.

世界保健機構, 여기서 概觀한 細項은 死因報告에 있어서 重要한 것들이다. 国際疾病, 傷害 死因目録第6次修正国際会議(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Sixth Decennial Revision of International list of Disease Injuries and Cause of Death)와 世界保健統計技構專門委員會(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xpert Committee on Health statistics)는 이러한 問題的觀点에서 勸告한바 있는데 特히 1, 3, 4, 5, 6, 8 및 9項에 主力하였다(19) "死亡診斷書의 国際様式(International Form of medical certificate of Death)은 第四章에 転載하고 있는데 이 死亡診斷書는 今日의 死因報告의 基準을 이룬 것이다(20)

胎児死亡診斷에 있어서는 尙今 国際標準이 서 있지않는데 이것은 各国에 適合한 様式은 一般死亡에 対한 勸告를 그대로 쓰는 것인데 母의 死因과 胎児의 死因은 서로 別個의 것이 아니고

相互聯関되고 있기 때문이다.

死因統計에 앞서 考慮되어야 할 것은 上述한 것에 追加해서 一連의 問題가 있는데, 其中 重要한 것은 分類 그것이다. 最近의 "分類" (Classification) 修正의 序論에서 記述한바와 같이(22) 疾病統計分類의 目的은 1世紀前 William Farr 博士가 쓴 다음 各項이 가장 잘 要略된 表現이라 하겠다.

"死因이 製表된 것은 古代의 死亡表 (Bill of Mortality)에 알파벳順으로 記載되었으나 이는 医師와 統計者間에 意見의 一致를 考慮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今日의 統計가 科学的인 分類가 되므로서 散発的으로 作成되던 統計를 어떤 類似性을 지닌 疾病은 群集시켜서 分類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서로 混乱을 이르키기 쉬운 것은

서로 分離시키는 一般化의 原則을 세우는 것이 効果的이다.

分類란 一般化의 一方便이다. 그러나 數種의 分類가 有益한 데도 있는데 医師 病理学者 法学者는 그의 見解에 따라 그가 가장 適合하다고 생각되는 方向으로 疾病 및 死因 및 死因을 適切이 分類할 수도 있을 것이다.

医師(Medical practitioner)는 疾病의 分類를 医学的 或은 内科的으로 取扱할 것이며 疾理学的으로 다를 것이고 解剖学者나 心理学者는 組織에 관하여 다루며 法医学者는 不慮의死(Suddenness)와 一般死(slowness)로 다를 것인데 이러한 見解는 모두 統計分類를 할 때 注意를 要한다.

国民統計라는 見地에서 볼때 가장 重要한 要素

는 伝染病 또는 風土病으로서의 原始的인 分類과 一般的인 疾病分類로 이는 다시 세가지로 나누어지며 또 不慮의死 이를테면 外因死(external causes)로 나눌수 있다.

死因分類基準의 発展이야 말로 動態統計分野에 있어 가장 徹底한 研究가 이루어져야할 分野이다. 死因分類에 対한 研究는 Sauvages (1706-1777)[23] 에서 始作하였다. 1853年 第1次統計会議에서 委員会에 委屬했는데 委員으로는 쥬네브人 Marc despine 博士와 英国人 William Farr 博士가 被任되어 国際的分類를 発展시킨 것이다. 다음 会議인 1855年에 두가지 다른 目録이 該委員会에서 報告되어 該会議는 139項目을 折衷한 目録을 技萃하였다. 이目録은 1864年 1874年 1880年과 1886年에 各其 修正되었

으나 広範囲한 認定을 받지 못하였다. 1891年에 國際統計廳(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統計会議의 後身)는 該委員会의 議長으로 Jacques Bertillon 博士를 任命하고 死因分類를 作成토록한바 1893年에 그의 報告가 採択되었던 것이다. 그의 分類는 細分類 161, 中分類 99 大分類 44로 되어 있다.

이른바 Bertillon 分類는 보다 一般的인 認定을 받고 있는데 1899年에 国際統計廳(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는 모든 国家가 本目録을 使用하되 10年마다 定期修正을 加한다는 決議案을 通過시킨 것이다. 1900年의 修正으로 細分類 179項 大分類 35項으로 되었다. 다음의 修正은 1909年 1920年 1929年 1938年에 있었으며 最近의 修正은

1948年에 있었다. 第7次国際修正会議는 1955年 2月 21－26日間 巴里에서 開催된바 있다. 1948年의 修正 이른바 国際疾病, 傷害, 死因統計分類(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juries and causes of Death)는 別名의 便覧(Manual)(24)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本分類의 理論的背景은 严密한 分類가 実施不可能한限 折衷的인 것이나 大体로 넓은 意味에 있어서 以前 国際死因目録의 原則을 따른 것이다. 分類는 첫째로 一般疾病을 取扱하고 다음으로 腫瘍類(neoplasms) 알레르기類(allergic) 内分泌類(endorine) 新陳代謝 및 営養으로 因한 疾病類를 取扱하였다. 其外의 疾病은 解剖学的으로 取扱하였으나 精神病, 妊娠 또는 産褥의 合併症, 乳児의 諸疾病 老衰 또는 症候가 있는

不明確한 狀態等은 特別히 取扱하였다. 비록 一般的事項은 大前의 國際死因目錄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必要에 따라 類似한 死因은 調整하고 死因統計의 要請에 따라 外延的인 拡大를 하는等 便宜를 取하였다.

本細項目(Detailed list)은 疾病 및 疾的狀態에 關해서 612種 傷害中 外因分類로서 163種 障害(組織 機能의) 性質로는 後遺로서의 189種을 包含하고 있다. 細項目分類에는 3術項数로 十進分類法을 使用하고 있다. 大部分 三術項数中 앞으로부터의 二術項数는 有到해야 할 要緊한 項目이거나 아니면 要略적 項目을 表示한다. 三術項数가 無限히 継続하는 것이 아니라 二術項数가 表示하는 集団에서 끝인다. 三術項数를 追加하려면 國際合意에 依해서 修正을 하도록

하고 있다. 術項数의 使用은 大集団下의 三術項数가 0으로 始作해서 工 集団의 種類数까지 継続한다.

"国際統計分類"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는 世界保健技構会員国 (World Health organization Member Nation)의 標準分類로서 "規約第1" 2條에 採択되고 있는데 規定文을 보면 "모든 会員国은 死亡 統計를 符號化함에 있어 国際疾病, 傷害死因目録에 따를 것이며 目録内容과 索引目録(25)을 使用해야 한다"고 規約 I의 4,5.條에서는 "會員国의 死因統計는 国際死因目録의 三術項数에 一致해야하며 그러치 못할 경우에는 中分類인 150項에 맞도록 刊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地方級의 死亡統計는 中分類를 쓰거나 簡易死因 50項目 (Abbreviated

List of so causes)를 쓰도록 勸告하고 있다.

国際聯合(U.N) 統計委員会(The statistical commission)는 第1次 優先順位인 "死因"을 提示하였으며 이는 곧 国際聯盟의 業績과 世界保健機構의 勸告를 踏習한 것으로 「原則」 209에서 死因을 定義하기를

"病的狀態 或은 疾病이나 直接 或은 間接的으로 죽음에 이르게한 非正常 傷害 或은 飮毒을 意味한다. 心臟痲痺, 老衰와 같은 것은 統計目的으로 볼 때 死亡이라 볼 수 없다. 死因으로 定한 것은 直接 또는 間接的인 死亡의 原因이라기보다는 死亡統計를 爲해 主要하다고 생각되는 死因을 死因으로 定義한 것으로 (1) 直接的으로 死亡에 이르게 한 最初의 疾病 或은 傷害 (2) 致命的인 傷害를 이르키게 한 偶然的 或은 突發的인

事實을 들고 있다.

同委員会는 出生時 入会者에서도 勸告한바 "死因"의 意味를 適用하여 全体로서의 動態統計에 관련시켜 이 問題를 研究하고 있다. 例컨데, 「原則」 209는 診斷(certification)에 관한 것으로 "可能한 限 死因診斷書는 入会医師가 責任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死因의 原則問題에 관해서 死亡診斷書의 統一에 対해 規定하고 있는 「原則」 307은 死因報告에 採択할 様式은 可能한 限 "国際死因診斷書様式"으로 統一토록 하고 있다. 「原則」 306은 死因資料 뿐만 아니라 統計目的으로 蒐集되는 모든 資料는 現実的인 資料蒐集에 그 目的이 있으나 未来의 資料가 改善되게끔 하자면 届出者를 教育시킬 一面도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 同 「原則」은 一般的인 面으

또는 動態統計 諸原則과 目的을 医師에게 訓練하며 特殊訓練으로는 診斷書의 必要事을 記述하고 있다. 「原則」 404 에서는 모든 動態統計의 編纂은 中央에 集中化시켜야 함도 勸告하고 있다.

死因統計作成의 勸告에 있어 國際聯合은(27) 國際疾病, 傷害, 死因統計分類(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juris and Causes of Death)를 踏習한 것이며 勸告된 集計에 應用될 分類方案을 細分化하였을 뿐이다.

資料獲得의 諸問題

上記한 國際聯盟의 勸告나 世界保健機構 및 國際聯合의 國際勸告는 무엇보다도 死因情報의 獲得에 관한 包括的인 諸問題를 言及한 것이다. 아마 이 問題中 가장 重要한 것은 死因診斷書의 必要性과 報告書式의 標準化일 것이다.

第III章에서 모든 國家의 死亡申告는 非自發的인 強制的 申告制度를 採択하고 있음을 보아 왔다. 死亡事実 (fact of Death)은 公知의 다 하여도 死因은 그와는 別個의 問題임도 알았다.

死亡証明은 세가지 方法으로 論行되는데

(a) 死亡申告者가 入會医師로서 死因證明書에 署名한 診斷書를 戶籍所에 提出하는 方法과

(b) 入会医師가 診斷書作成의 義務가 없거나 或은 入会医師가 없을 경우에는 檢屍官(医師 或은 當局이 任命한 官吏)이 檢屍하여 死亡確認書를 送付할 수 있는 方法.

(c) 入會医師의 報告도 없고 檢屍官의 報告도 없을 경우 一般人(lay person)이 死亡申告를 할 수 있는 方法이 있다.

이러한 세가지 方法에 依하여 蒐集된 情報의

正度는 다를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入会医師가 依成한 檢案가 正確함은 말할 必要없다.(28) 入會医師가 없이 死亡後에 單只 医師 或은 檢屍官이 檢屍하여 死亡原因을 證明한다는 것은 入会医師가 證明한 것 보다는 不正確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形態의 死亡診斷도 없는 경우 一般人이 報告한 非医学的 診斷은 甚히 不正確할 것이다.

이러한 不正確性이 介在될 程度는 正確한 死因을 決定할 수 있는 專門的인 資格과 充分한 機會에 依할 것인데 만약 医師가 正確하고 事実 그대로 記錄하지 않는다면 加一層 不正確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現像은 어떠한 疾病이 社会의 恥辱을 사거나 或은 事実의 暴露가 法的 또는 財産上의 利害関係를 가져올 경우인데 이 때의

家族 또는 入會醫師는 事更을 除外할 것이다.

死因情報의 相異는 또 報告書式의 相異에서 올 수도 있다. 이는 이미 指摘한 바로서 統計報告樣式의 統一이 보다 좋은 報告를 하게끔 한다. 特히 死因報告上의 統一性은 더욱 重要한데 그것은 質問과 教育 (instruction)의 標準化는 正度를 增進할뿐 아니라 資料의 處理를 能率的으로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報告項目의 相異는 바로 動態統計에 있어 基本的 問題中의 하나이다.

證明者(certifier)

資料의 用途

上述한 바와 같이 死因統計의 信賴度는 어느 程度 死亡이 医師에 依해서 證明되는 比率에

따라 다를 것이다. 死因證明의 正確性 여부에 따라 死因別 및 證明形態別 死亡分類된 死亡은 死因統計의 質을 評価하는 情数가 될뿐 아니라 医師와 保健所의 恵沢을 받지 못하는 小地域을 가려내는 指標로서의 役割도 한다.

따라서 死因統計를 評価함에 있어 證明者가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証明者" (certifier)가 누구인가에 관한 情報가 死因統計의 評価 및 分析에 있어 要緊를 이루게 된다.

國際勧告

國際聯合은 이러한 情報項目의 基本的인 重要性을 認定하고 (가) 證明者의 定義를 明白히 하고 死亡申告時 蒐集해야할 統計情報中에 最小項目(minimum list)으로 包含시키도록 勧告한바 있다. 定義는 다음과 같다.

"證明者(certifier)란 死因을 証明할 者 即 入会한

医師 外科医(surgeon) 檢屍医師 或은 檢屍官, 助産婦, 看護婦 或은 死因報告의 責任을 진 一般人(layman)을 말한다"

本定義는 死因報告할 者를 가르친 것으로 (1) 入会하였거나 (2) 屍体를 檢案하였거나 或은 (3) 單純히 死亡을 申告하는 類型으로 分類하고 있다.

이때의 分類는 單純히 "医師" "其他" "未詳" 等으로 分類할 수 있으나 診斷의 類型을 指示하고 関係한 立會医師의 概念을 明白히 하기 위하여 入會医師가 作成한 診斷과 檢屍官 或은 解剖担当官이 作成한 診斷과를 区分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같은 区分은 다음과 같은 診斷型으로 分類된다.

立會医師

檢屍医師

解剖担當官

非医師

未 詳

非医師(一般人)를 分類하면 檢屍官(非医師) 助産婦 看護婦 一般人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資料獲得의 諸問題

診斷의 形態에 관한 情報獲得問題란 報告書의 正確性을 評価하게 할 資料가 없다는 것이다. 医師가 證明한 모든 死因은 質에 있어서 同等하지 않다. 診斷에 関한 医師의 知識과 程度 또는 徹底하게 報告하려는 奉仕精神 一定한 疾病報告에 対한 特別한 関心 與否가 影響을 미친다. 勿論 死因 報告의 確實性을 保障하는 것이 証明者에 관한 情報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問題의 全部는 아닌 것이다.

市民權(citizenship)

參照 "國籍"

生年月日 (Date of birth)

生年月日을 出生発生日과 混同해서는 안된다.
本論設의 生年月日이란 출생児, 或은 死亡者
或은 新郎, 新婦, 或은 婚姻当事者의 父 或은
父의 年令을 換算키 為한 生年月日의 情報를
말한다.

資料의 用途

参照 "年令"

国際勧告

生年月日 項目의 用途는 時区間을 計算키 為
한 基礎인바 満으로 計算된 時区間을 正確하게
計算할 수 있는 最終日字라는데 그의 特色이
있고 統一性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標準을
세우기 위하여 国際聯合統計委員會 (20)는 (1)
生年月日은 動態統計報告의 項目中 第1次優先

順位이며 (2) 다음과 같은 定義를 내리고 있다.

"生年月日(父母, 死亡者, 新郎新婦 或은 雇婚當事者의)은 出生 年, 月, 日로 表示되어야 한다. 即 兩日字間의 正確한 時巳間을 決定함에 있어 必要하다면 年, 月, 週, 日, 時間을 正確히 表示하기 爲하여 事件發生日字에 관한 仔細한 表示가 되어야 한다. 万若 生年月日의 表示가 不可能할 경우에는 正確한 "年令"을 記入해야 한다.

적어도 事件發生 年, 月, 日과 滿으로 본 日字間의 時巳間은 一日以上의 差異가 생길 것이다. 死亡時年令, 婚姻時의 年令, 出生 및 雇婚時의 年令은 모두 滿으로 計算될 수 있는데 可能한 限 同一한 方法으로 年月日을 表示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定義가 完全히 適用되지 않는 것

은 1日未滿의 出生兒에 있다. 그러나 記錄上에 年月日에 追加해서 出生 및 死亡의 時間을 表示하면 되는 것이다.

資料獲得의 諸問題

參照 "年令"

婚姻年月日

資料의 用途

出生 및 乳兒死亡 對 婚姻日字는 出生時 또는 胎兒分娩時에 있어서의 婚姻持續期間을 아는 基礎가 된다. 婚姻 持續期間이 婚姻時의 年令, 母의 年令, 出生兒數別로 互關分類(Cross-classified)될 때는 出生力(Fertility)에 관한 重要한 情報가 된다. 이러한 集計는 將來의 人口趨勢를 豫測하는데 없저 못할 情報가 된다.

可姓期 (child-bearing age)에 있는 女子가 離婚한 경우 이에 対한 婚姻持続期間의 研究는 人口의 潜在的出産力을 아는데 重要한 一面이 있다. 한편 離婚의 原因에 対한 研究는 婚姻持続期間別로 離婚을 分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国際勧告

婚姻年月日은 出生統計報告書, 胎児死亡, 離婚統計報告書等의 人口動態를 為한 勧告에서 取扱하고 있는데 特히 離婚報告書에는 第1次優先順位로 되어 있다. 国際的으로 勧告된 定義(31)는 生年月日과 거의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婚姻年月日은 適出子에 관한 限 子女 或은 胎児의 父母가 婚姻한 年, 月, 日이다. 離婚時에 対해서는 最近의 婚姻年月日로 表示한다"

婚姻年月日을 基準으로 해서 起算한 婚姻持続期

間은 婚姻年月日과 其他事件 即 出生 胎兒死亡 離婚年月日과의 時差로서 計算한다.

婚姻持續期間의 分類에 対한 国際聯合의 勸告는 1年未滿, 1~9年 10~14年, 15~19年 20年以上 未詳으로 分類하고 있다. 이러한 分類는 1948, 1949-50, 1954年의 人口年鑑 (demographic year book)의 出生資料에 쓰이고 있다.

資料의 獲得問題

婚姻年月日 項目이 가장 有用하게 쓰일 곳은 婚姻持續期間을 얻는데 있으나 婚姻年月日은 出生年月日과 같이 持續期間 그 自体가 아니라 統計報告로 質疑되어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事件의 発生日字가 時区間의 陳述보다 더 正確하다는 것은 이미 앞서 누차 論說한 데 보아온

바이다. 따라서 報告된 婚姻持續期間은 0, 2, 5, 9로 끝나는 數字에 集中하는 傾向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現像이 유독히 婚姻持續期間이 1年인 集団에 非正常的인 陳述이 있게 되며 特히 婚因前에 始娠한 경우가 그러하다.

또 婚姻年月日에 対한 問題만 놓으로 計算한 日字期間과 婚姻 또는 出生年度로 計算한 期間間에 差異가 있다. 이러한 影響을 받을 集団은 1年未満에 있다. 年度를 基準하여 婚姻持續期間을 計算하는 傾見이 있다면 婚因한 同歷年(calender year)에 発生한 事件은 1年未満으로 陳述되게 될 것이나 12個月以內에 発生했음에도 不拘하고 歷年으로 볼 때는 年度가 1年이 経過했다면 1年으로 計算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1年未滿인 集団은 恒時 過少 陳述될 것이고, 다음 1年의 持続期間에는 그러한 差異의 程度에 따라 過大 或은 過少陳述될 것이다. 이러한 全体的인 効果를 評価할 수 있으나 1952年의 네덜란드의 婚姻期間別 出生을 製表하여 보면 어느程度인가를 알 수 있다. 여기 表의 "期間" (dumation)은 日字로 본 期間과 年度로 본 経過期間으로 計算되었다.

第C表 婚姻持続期間別出生数 (1952. 네덜란드)

婚姻期間	日字主換算	年度主換算
計	230,686	230,686
1年未満	32,084	10,775
1年	27,359	35,606
2年	22,938	24,555
3〃	21,071	21,463
4〃	20,492	20,681
5〃	20,161	20,570
6〃	16,326	19,542
7〃	8,486	12,170
8〃	7,769	7,291
9〃		8,167
10～14〃		32,973
15～19〃	50,980	13,011
20年以上		3,724
未詳		138

여기서 보면 1年未滿은 約 200%가지 過少陳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8年集團을 除外하고는 年度를 基準하므로 過大陳述되고 있다.

다른 한 가지 問題가 또 있는데 이는 1回以上의 婚姻에 있어서 婚姻日字와 婚姻持續期間의 어느 한쪽에 申告上 不正確性이 있기 때문이다. 初婚에 관해서 問議되는데도 不拘하고 現在의 婚姻에 관한 情報를 陳述하는 傾向이 있는데 이때는 그러한 不正確을 알기 위하여 互關確認方法(cross-check)을 쓸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誤差를 알 수 있는 한 方法으로는 出生兒數別 婚姻持續期間別互關表(cross-Tabulation)이다.

發生日字

資料의 用途

出生, 死亡, 및 胎児分娩, 婚姻 離婚의 発生日字는 申告 또는 動態統計目的을 為한 基本情報項目이다. 申告의 目的에서 본 発生日字는 證明 및 法的情報項目인 것이다. 한편 統計目的에서 본 事件発生日字라 또는 動態統計製表의 時間을 表示한다. 動態統計上에 이와 같은 基本的 用途外에도 発生日字는 死亡年令, 出産時 母의 年令, 婚姻年令, 離婚年令, 出産時의 婚姻持続期間 및 死亡 或은 離婚時의 婚姻持続期間等과 같은 正確한 時区間을 算定할 追加的인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動態事件의 発生日字는 統計上으로 볼 때 極히 重要한 것임이 明白하다.

国際勧告

製表上 또는 時区間의 計算에는 여러가지 方法과 意味가 있기 때문에 国際統合의 勧告는 (283) 動態統計上의 包含시켜야할 最小限의 項目과 充分

한 內容을 갖도록 勸告하고 있는데 發生日字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發生日字(出生, 死亡, 死亡한 胎兒의 分娩 婚姻, 離婚)란 正確히 事件이 發生한 日字이며 可能하다면 年, 月, 日, 時를 表示해야 한다"

特殊한 動態事件發生의 頻度를 다른 事件發生頻度와 比較하려면 두가지 頻度가 時間的으로 比較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時間의 比較性을 適用키 爲하여 國際斯合(33)은 時間의 分類를 그레고리 歷年(Gregorian Calendar)에 一致할 것을 勸告하였다.

4.07 年歷別製表 (Tabulation by Calendar period)

"最終的인 製表는 Gregorian年歷에 依拠해야 한다. 即 可能하다면 陽歷으로 본 月

分期 或은 年度로 表示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理由 말하자면 気候라든가 或은 期他條件으로 因해서 国民動態統計를 그와 다른 基準에 立脚하는 것이 有意하다고 생각될 때는 製表過程上 陽歷年歷으로 作成될 수 있는 措處가 있어야 한다.

勿論 動態計를 陽歷(Solar)이 아닌 陰歷(Lunar-year period)으로 発生日字를 計算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制度下에서는 그해의 1年은 12個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陽歷과 比較할 수 없게될 것이다. 歷年을 바꾸지 않는 以上 動態統計에 使用할 年歷은 그레고리年歷(Gregorian Calendar)이 継続 使用될 것이므로 이것이 国際勧告인 것이다.

資料 獲得의 諸關係

이런한 情報項目은 獲得함에 存在할 難点이라든가 申告上의 重要性에 비추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統計報告書에는 必要한 이른바 年, 月, 日을 記載하지 않는 수가 허다하다 事件発生日字를 仔細히 記載하지 않으므로 報表된 期間未(time period)이 制限을 받거나 또는 諸統計와 比較할수 없게끔 되는데 特히 乳児死亡에 그러하다 萬若 発生年度만을 記載하는 경우에는 年間報表(annual tabulation)가 不可能함이 明白하다. 또 発生月만이 記載된다면 單尺月別報表만이 될뿐이다. 週別発生報表가 報告上의 時差(lag) 없이 記載된다면 発生日字는 그다지 重要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月未滿의 乳児死亡年令을 算定하려면 出生 또는 死亡年月日에 発生時間이 記載되어야 할것이고 一日未滿에 對해서도 그러하다.

其外의 "持続期間"(duration)의 正確度 與否는 發生日字가 仔細한가 어떤가에 따라 同一한 影響을 받을 것이다.

婚姻 日字

資料의 用途

申告日字에 對한 用途는 申告制度의 能率을 評價할수 있기 때문에 統計項目으로서의 意義가 있다. 地域 또는 期間이 다름에 따라 意義가 있거나 比較할 수 있는 動態統計가 發生日字에 一致되도록 製表되어야 한다는 것이 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다. 事件發生後 一定한 期間內에 申告되도록 申告制度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特定期間內에 發生한 事件이 法定期間內에 申告되지 않거나 以前期間에 걸쳐 發生한 事件이 申告되는 等 여러가지 申告가 있게된다. 例컨데 出生申告의 法定期間이

60日이라면 申告期間을 基準으로한 月間製表는 적어도 60日以前에 發生한 事件도 包含된다는 것이다. 實際로 申告日字에 依한 製表는 發生日字에 依한 製表보다 늦은것이 事實이다. 申告中인 事件發生日字를 分析하면 申告日字와의 差異를 알 수 있고 또한 過少申告의 程度를 推定할수도 있다.

國際勸告

"日字"에 관한 項目에 對하여 國際統合은 (34) 다음과 같은 勸告를 하였다.

' 申告日字(出生, 死亡 胎兒死亡, 婚姻、離婚의)는 法的目的으로 申告될 경우에는 年, 月, 日을 表示해야 한다

資料의 獲得問題

申告日字의 問題는 "日字"에 관한 以前 說明과 同一하다 即 可能한 限 詳細하게 表示하는 것이

좋다. 申告日字는 다른 日字 以上으로 얻기가 쉬운데 그것은 申告所의 記錄日字가 바로 申告日字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缺陷이 생길 경우란 統計報告書가 日字別이 아니고 月別로 된 名簿形態를 取하고 있을 경우다.

婚姻持續期間

參照 "婚姻日字"

經濟的記載事項〔産業 職業 地位, (雇傭主 雇傭人等)〕

資料의 用途

新生兒의 父母 胎兒의 父母 死亡者 婚姻 或은 離婚當事者의 統計情報로서의 經濟事項은 經濟的 社會的 医学的 人口学的인 問題와 깊은 関聯을 맺고 있다. 어느한 人口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를 알려면 經濟的 特性에 관한 統計가 必要할뿐아니라 出

産力 死亡力 婚姻力, 離婚等에 관한 情報를 産業別 職業別 地位別(産業生 또는 産業人等)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세가지 情報項目 即 産業 職業 地位를 考察할 것이다 이 세가지 項目은 同時的으로 研究해야 할 經濟的 社會的 指針者인 것이다 嚴密한 意味의 人口学的見地로 볼때 産業은 그다지 重要하지 못하나 한가지 項目을 統計上으로 完全히 說明하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모두 必要하다.

人口学的 立場으로 볼때 相対的으로 그다지 重要하지 않을지라도 産業이 다른 階層의 死亡力은 國民保健事業에 있어서 重要한 것이다 産業別 死亡分析은 性 年令別 諸要因과 密接한 関聯을 가지고 産業衛生을 改善시키는 根拠가 될것이다. 年令에 危險을 주는 産業 이를테면 有毒가스 産業이라든가 其他

保健에 關係있는 産業의 경우에는 이 分野에 集中的인 硏究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産業別 死亡分析은 國民保健事業의 指針的役割을 할것이다.

職業과 死亡과의 관계를 硏究할 必要가 있다는 事實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것이다. 1840年代에 Villerme博士(35)는 賃金所得者와 資本主와의 比較硏究를 하여 死亡의 差異를 보았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 諸般硏究가 것달아 佛蘭西 英國 美國 네덜란드 伊太利 스웨덴, 항가리, 놀웨이의 順으로 硏究되어 그 硏究結果가 Jean Daric 氏에 依하여 人口問題 硏究所(National Institute of Demographic Studies)(6)의 「社会의 職業과 死亡率(mortalite professionnet situations sociale)이라는 書名으로 刊行되었다. 이러한 硏究가 最近에 이루어진 것으로는 잉그란드 웨일즈의

登記長(Registrar General)이 刊行하고 있는 論叢中 第5卷이다. 이 報告(37)는 職業別 死亡으로 본 것인데 社會의 階層을 5階級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小分類하고 있다.

職業이란 生活水準과의 直接的인 關係가 있기 때문에 社會 經濟 狀態의 指標가 되는 것이다. 死亡과 出産에 미치는 여러가지 形態의 職業 또는 家族數에 따른 女子의 就業은 年令 出生順位 死亡과 같은 其外의 職業的 特性과 모두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獨立的으로 硏究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硏究는 諸要因이 相互關聯을 맺고 있다는 事實과 더욱이 諸率의 計算할 人口를 正確하게 把握할 수 없다는 事實로 말미암아 難点이 있다. 그러나 職業은 人口學者나 經濟學者 社會學者나 保健學者에게

크나큰 重要性이 있으므로 動態統計計劃에는 반드시 反映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다.

職業上의 死亡統計研究가 크게 寄與된 것은 第8次 國際労動統計実務者会議[30] 였다. 決議案 III은 이 点에 관한 것으로 全文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第3次 國際労動統計実務者会議 (The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는 國際労動局理事会 (Governing Body of International Labour office)가 쥬네브에 召集되여 1954年 11月 23日에서 月年 12月 3日間의 会合을 가졌다"

"職業上의 死亡과 病療의 統計研究가 重大한 意義를 갖었음을 認定하여 労動者의 健康과 그들이 従事하고 있는 職業間의 関係를 究明하며 特히 外

見上 健康을 害치는 職業과 危險한 職業에 있어서는 一般的인 健康水準에 未達하거나 或은 特殊한 健康阻害가 實在함을 究明할 수 있고 会議에 參席한 國家中 몇몇 國家만이 職業別 死亡統計를 編纂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은 適切한 死亡申告書式과 그 나라에 滿足할만한 人口센서스 資料가 있어야 한다.

" 職業病 (occupational morbidity) 統計가 極히 斷片的일뿐 아니라 疾病保險等이 広範하게 普及되고 있는 今日 이러한 國家에 있어 職業病統計를 適切히 発展시킬 必要가 있다.

"世界保健機構가 発展시킨 「國際疾病, 傷害 死因分類」와 經濟社会理事会 (E S C) 가 採用하고 있는 「經濟活動에 관한 國際標準産業分類」(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y)와 國際労動統計者実務

会議에서 採擇되바 있는 「國際標準職業分類」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認定한다.

" 國際労動局(International Labour office) 理事会가 要求한 事項은

a) 國際労動局은 世界保健機構와 國際聯合과 提携하여 여러 國家에서 얻을수 있는 資料를 研究할 것이며

b) 國際労動統計専務者会議에서 職業上의 死亡 및 疾病統計의 集計 및 編纂에 対해서 会員國과 世界保健機構를 諮問할것.

職業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 同一한 職業에 従事하는 者일지라도 그들의 地位가 나름에 따라 다를 것인데 即 雇傭主(employer)인가 或은 雇傭人인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地位에 있

어서의 差異는 所得 및 生活水準의 差異를 갖어오므로 死亡 및 出産力에도 差異를 갖어오게 될것이다.

따라서 産業 或은 職業에 一致하는 動態統計를 얻고저 할때는 세가지 項目 전부 -即 産業 職業 地位를 同時的으로 考慮해야 한다 따라서 有益한 動態統計가 되려면 "地位"에 관한 報告 亦是 産業 및 職業에 못지않게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産業에 관한 報告는 職業 및 이에 관련된 他項目의 正確性 與否를 解釋하게 할것인데 따라서 統計報告에는 産業 職業 地位를 모두 包含시킨것이다.

國際勸告.

國際諸機関이 數年동안 經濟的標識 (character-istics) 의 定義 및 分類問題에 関心을 가지고

있었으나 主로 人口센서스에 있어서의 問題에 關心을 集中시킨 것이다. 센서스와 動態統計間에는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센서스 方法 硏究에서 얻어진 定義를 그대로 適用하는 것이 無難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國際聯合(39)은 動態統計報告書에 産業, 職業, 地位를 記載事項으로 하되 그 定義는 人口센서스 資料와 一致하는 方向으로 할것을 勸告한바 있다.

産業, 産業을 定義하기를

"産業(經濟活動의 一部로서)이란 個人이 營爲되고 있는 事業体(establishment)의 活動 或은 個人이 經營하는 事業(Business)의 種類를 말한다 動態記錄에 報告될 産業從事期間과 從事한 事實이 없는 者 或은 取扱方法은 人口센서스에서

採擇한 方法과 一致해야 한다.

産業別 資料의 分類에 있어 比較適性의 基準을 勸告한 것으로서는 「經濟活動에 관한 國際標準分類」(ISIC)가 있다. 이 分類案은 統計委員会(S.C) 第3次 会議(1948年 4月~5月)에서 承認받고, 經濟社会理事会(ES.C)의 第7次 会議(1948年 7月~8月)에서 國際的으로 使用할 것을 勸告 받았다.

이 「國際標準産業」(40)는 「國際 疾病, 傷害, 死因 分類」와 같이 相異한 見解를 調整約束하는 것이다 死因分類와는 달리 國家的 立場에서 産業分類를 採用할 時는 그 細部項目이 國際標準産業分類(ISIC)와는 다를지 모르나 國際標準으로 修正할수 있어야 한다. 國際標準으로 統一시키는 경우 國家的 資料가 어느 程度 國際的比較를 함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國際標準分類」의 「序論」에서 記述하기를

"本目的은 現存하는 國內的分類를 全的으로 代置하려는 것이 아니라 國家的인 統計를 國際的으로 比較하려는데 있다."

이미 分類制度를 採択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國內的分類下에 얻어진 數字를 再調整하므로서 國際的 比較를 可期할 수 있을 것이다 再調整 하는데 必要한 要素를 國內的統計에서 얻을수 있을 것인가가 根本的 問題인 것이다. 現存分類가 없는 國家에 있어서는 이 標準分類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指標가 될 것이다. 만약 本 標準分類의 細分類로 모두 分類할수 없을 경우에는 第III編에 羅列한 大分類(major group)를 使用하고 다음으로 이 大分類를 第II編에 있는 集團으

로 小分類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標準分類는 十進法 (decimal system)으로 되어 있으며 一行項数는 다음과 같이 9個의 大分類 (major division)로 分類되고 있다.

大分類 0 — 農業, 林業, 狩猟 및 漁業

大分類 1 — 鉱業

大分類 2 - 3 — 製造業

大分類 4 — 建設業

大分類 5 — 電気, 가스, 水道 및 衛生서비스業

大分類 6 — 商業

大分類 7 — 運輸, 保管 및 通信業

大分類 8 — 서비스 業

大分類 9 — 分類不能

이 9個의 大分類는 10個의 分類로 되어 44個의 中分類가 되며 다음도 十進法에 依해서 3桁

項類가 細分類를 表示하게 되는데 이 細分類는 理論的으로 999個의 分類가 된다.

따라서 國際的 必要와 資料의 使用目的 互換製表 (cross-tabulation)의 可能性 與否에 따라 決定짓도록 해야 할것이다.

「國際標準産業分類」(1948)의 分類沿革 原則 構造 適用 分類方法 類別된 資料의 解釋, 國際標準으로의 修正等은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센서스 資料의 國際標準適用」(4)에서 볼 수 있다. 「國際標準産業分類」는 上記書의 附錄 IV 109-116頁에 再錄되어 있다.

職業 國際聯合은 動態統計目的으로서의 職業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職業이란 個人이 營爲하는 事業形態를 말한다. 動態記錄에 있어 期間 (time reference)再歸從

事業 및 前職業動力 (pre-labour force)은 "産業"에서 取扱한 것과 같이 人口센서스에 一致토록 하여야 한다.

特定한 職業에 對하여는 國家에 따라 다르다. 作業에 要하는 訓練 熟練의 水準 使用되는 材料 作業의 配置 機械 或은 道具의 使用이 모든 것이 職業分類의 基準이 될것이다.

人口센서스에 採用되고 있는 「國際標準職業分類」는 어떤 一定한 基準에서 있지 않으나 모든 國家에 共히 適用할 수 있는 一般的인 구름을 세우기에 努力하고 있다. 10個의 大分類를 다음과 같이하고 있다.

1. 專門的 技術的 職業從事者
2. 管理 經營 一般事務從事者
3. 販賣從事者

4. 農夫, 漁夫, 狩獵夫, 伐木夫, 및 類似職業従事者

5. 鉱夫, 採石夫 및 類似職業従事者

6. 交通 및 通信業従事者

7. 技能工 生産工程従事者 및 其他單純 勞務者

8 써비스 職業従事者

9. 分類不能의 職業

10. 軍人

上記 10個의 分類中 9個는 第7次 國際勞動統計実務者 会議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42] 에서 採用된 것이며 열번째의 項目은 1950年의 第5次 会議時 유엔人口委員会 (population commission)의 統計委員会 (statistical commission)가

提出한 것이다 이 分類는 人口센서스를 爲한 特殊한 勸告였으나 第7次 國際勞動統計實務者 會議에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喚起하였다.

本 分類는 職業別로 分類될 수 있는 諸般形態의 統計에 適切하게 使用되는데 그 같은 資料로서는 센서스 資料나 動態 統計 移民 統計等에서 産業事項이나 就業과 失業을 다룰 경우이다.

10項目의 大分類가 採択된 後 國際勞動局(International Labour office)은 이 大分類를 二桁 또는 三桁項目으로 細分하는 硏究를 하였다 第8次 國際勞動統計實務者會議가 1954年 11月 23日부터 11月 3日間 쥬네브에서 開催되었을 當時 10個項의 大分類를 暫定的으로 職業中分類(二桁物)

로 採擇하였다.

그 他의 中分類로된 이 暫定分類는 今日의 職業分類에 発展的인 役割을 하였는데 이는 「第8次國際勞動 統計実務者会議録」에서 찾아 볼수 있다.(43)

地位 "地位"의 使用에는 相当한 論難을 가져온 것인데 過去 社会上地位 産業上의 地位 或은 職業上地位와 같은 여러가지 名稱으로 불리워 왔으나 今日의 國際的「地位」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地位(status)란 雇傭主" 또는 雇傭又等으로서 그가 雇傭되고 있는 個人的地位 即 自営業主가 또는 單純勞務者인가 或은 無給家族従事者 인가를 가르키는 말이다.

國際聯合人口委員会(UN Population Com-

mission)는 勸告 定義中의 各內容을 포함 定義 하였는데 1950 年의 第5次會議時 國際的 比較性에 着眼하여 모든 國家는 센서스實施에 있어 다음과 같은 重要地位의 定義를 適用토록 提議한 것이다.

雇傭人 (Employees)

여기에 屬하는 者로서는 公共団体 或은 私企業主을 爲하여 從事하는 者를 모두 包含시키되 勞動의 代價로서 賃金 俸給手當料 (commission) 팁 (tips) 都給 (piece-rates) 등 如何한 形態의 支拂을 받는 者이다. 이 集団은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1) 賃金 또는 俸給을 받고 個人企業主 (私企業)에 隸屬하여 勞動하는 者

(2) 政府機關에 從事하는 者의 官吏 軍人을 包含한다.

(3) 雇傭主의 月一回 役員을 하나 自己의 事業이 아닌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企業의 有給社員 및 管理 監督하는 者

(4) 企業 또는 業主를 爲해 活動하는 者가 販賣額의 一定한 比率을 報酬로 받는자 (但 企業에 株式을 갖는 者는 自營業者 (own-account worker) 로 分類 하므로 여기서 除外 함)

(5) 賃金 俸給者가 아니고 賃 (tip) 을 받는 者

(6) 家內 或은 商店에서 顧客이 아닌 一人 或은 二人以上의 業主를 爲해서 일하는 (piece-work) 者

(7) 家內待從者 (但 自己집에서 洗濯裁縫하는 者는

除外)

(8) 賃金 或은 俸給을 받고 일하는 專門的 從事者 (professional persons)

雇傭主 (Employers)

여기에 包含될 者란 自己의 企業을 經營하는 者 利潤 或은 手術料를 받기 爲하여 專門的 或은 商業에 獨自的으로 從事하는 者 및 그의 事業에 無給從業 (unpaid apprentices) 以外에 1人 以上의 勞動者 (worker) 를 雇傭하는 者를 말한다.

共同으로 企業을 經營하는 者로서 企業에 「雇傭人」 (employees) 을 採用하고 있으면 이를 雇傭主로서 分類한다 家庭에서 待從以外의 어떤 者도 雇傭하고 있지 않으면 이 者는 雇傭主라고하지 않는다.

自營業者 (WORKERS CO OWN account)

本分類에 包含될 者는 獨立으로 自己企業을 運營하거나 或은 所有主로서 經營하는 者 利潤 或은 手術料를 받기 위하여 專門的 或은 商業에 從事하는 者 自己의 農場을 經營하거나 貸地農場 或은 農作物의 分配를 받거나 收益을 均霑할 農場을 經營하는 者로서 家事從事者 或은 無給職工을 除外한 雇傭人을 企業에 採用치 않고 있는 者를 말한다. 自己의 집에서 利潤 或은 手術料를 받기위하여 活動하는 者도 自營業者로 看做하여야 한다.

無給家事從事者 (unpaid family workers)

無給家事從事者라 함은 特定한 期間 換言하면 家口員에 依하여 經營되는 企業에 있어서 最小의

期間에 支拂를 받지 않고 勞動하는 者를 말한다.
이 最少의 期間은 經濟活動센서스에 設定된 期間
으로서 定한 日, 週, 月 或은 年을 말한다.
便宜上 一定한 期間(調査書의) 中 正常的인 作
業期間이 3分之1에 達하면 이를 最少의 期間으
로 看做하여야 한다. 無給家事從事者는 普通 居
所의 提供을 받고 또 現金을 받을지라도 或種의
支拂로 看做해서는 않되는데 이것은 作業量에 對
한 報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者는 모두
無給家事從事者로 包含시키되 單只 實質的인 賃金
或은 俸給을 받고 作業하는 者는 雇傭人(employ-
ees)로 分類해야 한다.

上記한 定義는 이러한 標識(characteris-
tics)을 自動的으로 分類하려는 것이나 이러한
各個의 分類集団은 追加事項 即 地位別로 分類되

지 아니하나 明白히 区分되는 者로서

(1) 地位不詳 或은 分類不能者

(2) 前職或는 失業者인데 이러한 分類로서 4個分類集団을 그 以上의 分類集団이 되는 경우도 있다.

勿論 地位別分類가 반드시 有益하다고는 할수 없다, 死亡率의 相異가 死亡者의 地位 即 雇傭主인가 或은 雇傭人인가 또는 無給家事従事者인가 或은 自営業者인가에 따라 如何한가를 안다는 것은 그다지 重要하지 않는데 이를 알려면 이 分類集団을 더 細分하거나 経済活動部門(産業)別로 互関分類(cross-classify)하거나 事業形態(職業)別로 分類하여야 한다 地位와 産業 或은 職業을 서로 結合시키면 興味있고 正確한 差異를 알수 있다.

資料獲得問題

産業 職業 地位에 관한 有用한 情報項目을 獲得하려면

(1) 時에 관한 定義

(2) 人口센서스 方法과 申告 및 統計方法의 一致

(3) 質問方法의 同一性 等 諸問題가 있다.

時에 対한 定義問題에 考慮할 것은 出生 死亡, 婚姻, 離婚 모두 當事者가 事件 그 當時에 從事하던 産業 或은 職으로 分類되어야 하며 當該 場所에서 從事한 期間 或은 平常 그가 從事하여 온 産業 或은 職業과는 関係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問題가 되는것은 同一한 時間에 한가지 以上의 作業을 하거나 一定한 職業이 없이 遊時로 여러한 作業이라도 하고 있는 者이다. 이러

한 難点은 獨自的으로 解決할 수 없다. 이것은 人口센서스 方法에 依해서 處理되어야 한다.

人口動態統計와 実査人口를 一致시키는 問題中의 하나이다 이에 対한 몇가지 例는 不在를 難点의 性格으로 봐서 明白하다. 만약 人口센서스에 있어 経済的特性(characteristics)이 센서스 施行日 現在로 調査되는 反面에 人口動態事件의 報告에서는 事件発生日 現在의 것이라면 死亡 出生 婚姻 및 離婚한 者의 報告의 経済的特性은 産業的流動으로 말미암아 센서스에서 調査된 経済的特性과는 多少 다른 것이다. 따라서 센서스日字와의 間隔이 멀면 멀수록 両者는 一致하지 않을 것이며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센서스 施行時의 経済的特性과는 거의 一致할 것이다.

勿論 이러한 労動力의 変動要因은 年度 國家 一

國內의 地理的 環境에 따라 다를 것이나 센서스 以後復歸한 者 勞動力에 參與한 者 또는 센서스 以後 即刻 雇傭分野를 轉換 或은 隱退한 者의 問題는 極히 難問題인 것이다.

센서스 調査가 "平常職業" (usual occupation) 을 묻는다면 動態統計申告에서도 역시 "平常職業" 을 묻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平常" 이라는 定義가 再問題視된다.

動態事件申告와 센서스 調査와의 非一致의 例는 基礎人口에 관한 出生 死亡 婚姻力과 관계있는 集団의 職業및 産業에 重要한 問題가 된다. 使用된 定義나 人口調査方法을 徹底히 硏究하여야 할 것이며 戶籍官吏의 敎育이 또한 兩者를 一致시키는데 큰 役割을 할 것이다.

動態統計報告書上의 質問項目의 樣式이 또한

큰 役割을 한다.

흔히 있는 例로서 職業과 産業을 混同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混同을 避하기 위해서는 適切한 空欄을 두어 明白한 定義의 答辯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人口 센서스에서는 大部分 經済的特性(characteristics)을 얻는 問題에 力点을 두고 있다(44)

이러한 事実은 亦是 動態統計에도 適用可能하다. 여기에는 問題와 問題解決이라는 두가지 研究方法이 있다. 첫째의 것은 「職業的 疾病 및 死亡則定에 対한 統計的인 諸方法」(statistical Methods for Measuring Occupational Morbidity and Mortality)(45) 으로서

國際勞動局(國際聯盟)이 刊行할 것이며 둘째 것은 위에서 言及한 바 있는 Jean Daric 氏에 依하여 考察된 見解이다.

入院 (Hospitalization)

資料의 用途

한가지 用語로 入院이라는 槪念을 表現하기에는 無理가 있다. 國家에 따라서는 動態統計申告上에 「公共施設」(Institution)「実際発生場所」(exact place of occurrence)라 表示하기도 하고 「現場」(locality) 或은 「場所」(place)라는 用語로도 表現된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入院」(hospitalization)이라는 用語는 「動態 統計制度의 諸原則」에서 쓰인 말로 出生 或은 死亡의 具体的인 環境의

觀念을 表現하려는 意圖인바 即 病院, 矯導所와 같은 組織的인 機關 或은 家庭의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가를 알려는 것이다.

爲政者의 立場에서 볼 때 出生 胎兒 死亡 및 一般死亡의 入院如否別統計는 防疫(medical care)計劃을 企劃 施行評価에 있어 有用한 情報가 된다. 이러한 資料는 医療施設이 現在 如何히 可用되고 있는가를 알수 있는데 逆說的으로 말하면 医療施設의 惠沢을 받지 못하는 地域에 必要한 程度를 알려는데 있는것이다.

한편 國民保健이라는 見地에서 보면 이와같은 統計는 一定한 死因으로 死亡하는 産母의 死亡 胎兒死亡 新生兒, 乳兒의 死亡에 관한 入院関係를 알수 있을 것이다.

國際勸告

國際的基準에 入脚한 "入院" 或은 公共施設의 收容을 比較할 수 있는 國際的標準은 없으나 國際聯合統計委員会(UN)는 國民統計에서 出生 死亡 胎児死亡統計報告書에 「事件発生의 実際場所 例컨데 病院, 機関, 家庭 或은 其他場所를 "入院" (hospitalization)이라는 用語를 使用토록 勧告하였다.

어떤 國家에 있어 이와 같은 質問에 対한 答辯은 機関의 名稱일 수 있으며 医学的인 用語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이 答辯은 세가지 以上의 類型으로 分類될 수 있다.

이러한 分類는 國際的인 基準으로 볼때 要因効果의 評價를 大略的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理由란 "病院" 이라는 單語가 明白하다 할지라도 不確定한 形態의 医学的인 着護를 갖추기 때

문이다. 이 項目은 「入舍者」를 医師 或은 非医師 或은 더욱 詳細하게 互関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資料의 獲得問題

重要한 問題라 바로 定義의 問題이다. 地域的인 比較를 하려면 '入院'이라는 單語의 概念이 同一해야 할 것이다. 標準概念에 관한 研究가 始作되고 있긴 하지만 矯導所에 收監된 罪囚를 病院 或은 機関으로 봐야할 것인가의 問題는 國內的인 問題이다 만약 病院 或은 機関의 名稱을 묻는다면 이의 情報를 蒐集하여 統一的인 解釈을 할 수 있다 反面에 医学的인 用語를 表示토록 한다면 戶籍官吏를 教育시켜 國內的比較를 重点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符號化는 센서스 調査票의 定義가 明白할 경우 이다.

産業

參照: "經濟的 特性

言語

〔省略〕

摘出子(Legitimacy)

資料의 用途

嫡出子에 관한 資料가 缺陷있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出生 胎兒死亡報表의 基本項目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社會的인 意味와 또한 保健厚生當局의 関心事로서의 意味가 있기 때문이다

事實 「世界保健機構死産 및 流産定義分科委員会」(World Health organization on the Definition of stillbirth and Abortion)가 勧告하기를 國內의 動態 및 保健統計委員会가 出生 및 胎兒死亡을 嫡出子와 関聯시켜 姙娠期間

出生時의 体重, 出生形態等을 研究하도록 特히 勧告한 事実이다. 私生児統計報告 (50)에서 美國 動態統計局 (United States National office of Vital Statistics) 은 이 問題가 矛盾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婚出子에 관한 質疑를 하고 있는데 이 質疑는 역시 他國에서도 適用 可能할 것이다.

(1) 私生児出生의 增加数 및 增加率은 如何한가?

(2) 私生児를 姙娠한 母의 年令은?

(3) 以前 姙娠回数는?

(4) 私生児出生의 地域的 分布는?

(5) 未婚母의 出生児分娩을 爲한 医療 및 病院 施設의 活用은 如何한가?

社会学者의 関心事는 (1)項에서 (4)項까지의 問題이며 保健高局者의 것은 全般에 걸친다.

嫡出子에 關한 問題는 이 以外도 廣範囲하나 私生児로서의 不遇이 特次 如何히 減少될 것인가를 알 道理가 없다 따라서 上記한 5個 項目이 製表되면 이에 對한 最少限度의 答辯이 나올 것이다

國際勸告

社会的인 問題로서 이 項目을 国際斯合 (51) 第1次 優先順位項目으로 하여 出生 胎児死亡에 包含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定義를 내리고 있다

"嫡出子란 適法한 児孩 或은 死亡한 胎児의 身分 即 適法한 夫婦의 所生이다"

이 定義는 各國의 法律의 規定事項이며 國際的인 標準을 세울 수 없다

國際的인 比較를 再強調하여 分類案을 세가지로 提案하였는바 嫡出子 私生児 (이는 法律

에 依함) 및 未詳이다

國內의 使用目的을 위해서는 私生児에 관해서는 父에 관한 情報를 記載하거나 또는 記載하지 않고 認知와 不認知로 구누고 未詳을 다시 認知 또는 不認知로 細分하는 것이 좋다 國際的인 標準에 따르려면 婚出子 私生児 未詳으로 区分하면 된다.

資料의 獲得問題

婚出子에 관한 情報蒐集에는 여러가지 問題가 있는데 그中 중요한 것은 私生児의 申告를 忌避하므로 出生申告를 아주 忌避하거나 事実을 歪曲 陳述하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傾向은 直接的으로 婚出子인가 私生児인가를 質問할 때 더욱 歪曲 陳述할 것이다

이와 같은 直接的인 質問形式은 避하려면 母의

配偶関係을 質問하여 直接質問과 全然 同一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嫡子의 法的身分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嫡出子에 関한 資料蒐集上의 難点과 法的申告上에 그같은 情報의 記入을 忌避하는 事実은 全世界가 가지는 懸案問題이다.

이러한 項目의 除去가 申告를 徹底하게 할 것이나 社会的인 資料로서 그 効用性이 逆失當하고 말 것이다.

위에서 考察한 諸難点은 国際的資料蒐集에 関하는 것이다.

国際的立場에서 보면 報告上의 差異 또는 基本法律上의 差異로 因하여 比較性이 거의 없게된다. 各私生児에 관한 各国의 法律은 본래 相異하며 嫡出子에 対한 法律 亦是 相異하다.

이러한 法律的 見地에서는 비록 國際的比較가 되지 않는다 하드라도 國家別 差異에도 不拘하고 社会学的인 比較資料를 얻을 수 있다는 一面을 갖고있다

教育程度 (Level of formal education)

資料의 用途

教育水準은 経済的 社会的 人口学的要因과 相互密接한 関聯을 맺고 있기 때문에 "1960年 左右에 実施할 人口센서스"에 包含項目으로 勧告된 것이다. 父母 死亡者 夫 또는 婦 離婚當事者의 教育程度別 出生 死亡 婚姻 離婚 分類는 人口의 差異를 検討하는 情報가 될 것이다

國際勧告

「諸原則」에서는 教育程度 (Level of Education) 項目을 第2次 優先順位로 하며 文字解得與否 (literacy) 를 擇하고 있다

1950年에 施行될 센서스資料의 指針으로서 國際聯合人口委員会가 提議한 定義를 動態統計에 적하여도 適用토록 하였는데 이에 依하면 教育程度는 "그 國家의 正規教育 制度와 이에 設定하는 教育을 받는 者의 最終学歷을 나타내는 것이라야 한다. 이 定義는 "程度"(Level)라는 用語가 明白치 못한데 國際聯合 유네스코(UNESCO)가 使用하는 学校의 分類로 보면 明確하다.

教育水準의 分類는 두가지 方法으로 区分된다. 修学年数의 分類와 各級水準에 있어서의 就学年数(最終学歷)의 分類가 그것이다 後者가 바로 國際聯合人口委員会가 「1950年 左右에 施行될 人口센서스資料製表」(SW) (Tabulations of Data from population censuses to be Taken in or about 1950)에서 勸告한바에 따른 것인

에 이 勸告에서

"敎育程度의 表表는 個人이 받은 最終學歷 即 最終學校 即 國民學校 中等學校 大學等을 나타낸다 同委員會는 第3次 會議時 이에 관한 資料의 年令을 確定하려면 25才以上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勸告하였다

集計는 各性別로 25才未滿(25才)을 下限年令으로 定했을 경우) 25~64才까지 10才階級. 65才 以上에 되도록 한다

그러나 實際 센서스에 使用될 下限의 年令은 20才 或은 그 以下가 될 수 있으므로 敎育程度에 適用될 年令範圍에 따라서 年令階級은 5~9 10~14 15~19 20~24才로 各其 集計할 수도 있다

第2次美國統計會議(The Second Inter-American

Statistical congress)[55]는 이를 더 細分類

하였다

「敎育文化統計」(Educational and cultural statistics)에 관한 決議案에서

"2" 敎育水準(Level of Education)에 관한

原則은 國際敎育統計分類原則을 採擇한다

3 分類의 使用은 ------

① 學令未滿(pre school)

② 初等國民敎育

③ 中等敎育

④ 大學高等敎育 ------"

가장 最近의 것이며 가장 包括的인 國際定義는

유네스코의 敎育統計標準專門委員會(the Expert Committee on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 of the UNESCO)

가 提示한 것이 있다. 이 提示에 依하면 教育水準이란 「最終 修学年数」(the number of successfully completed years of schooling)라고 定義하고 学校를 水準 및 形態別로 分類하였는데, 이는

"㈠ 水準別 教育

(i) 一次級水準(即 保育園(nursery school) 幼稚園 嬰児学校(infant school)는 二次教育을 받기 위한 児童教育을 말한다.

(ii) 二次級水準(初等学校(primary and Elementary school)은 基礎教育으로서 児童의 社会 및 情緒教育을 하며

(iii) 三級水準(中学校 高等学校)은 二級水準의 教育을 一般化 또는 特殊化하는 教育을 말하며 이는 다시 2個의 級으로 再分된다.

"(iii a) 一般教養 이는 專門的 技術的인 敎育이 아니다

"(iii b) 技能到 敎育 이는 專門的 技術的 敎育을 말한다

"(iv) 四級水準은 三級水準의 敎育을 履修하거나 이에 該當하는 敎育을 받은 者로서의 水準에 達한 者의 資格을 갖어야 한다. 이 級의 學校로서는 大學 或은 高等技術學校가 있다"

資料獲得의 問題

其他 人口資料와 마찬가지로 敎育程度에 관한 諸敎項目의 獲得問題는 定義問題인 것이다 各國이 使用하는 "正規敎育"(formal education)이라는 말은 若干 差異가 있다

初等 中等 (Secondary) 等의 區分은 國際的인 比較가 不可能하다

너구나 敎育水準에 관한 槪念을 더욱 더 明瞭할 수 없다 亞細亞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敎育施設이 거의 一般化되어 있지 않고 있다 兵除로, 이 項目은 敎育制度가 發達한 國家에서 使用할 수 있다 그러한 國家에서는 文字解得與否에 관한 情報 以上으로 有用한 情報가 되는 것이다

文字解得與否 (Literacy)

資料의 用途

敎育水準과 같이 動態統計分野에 있어 文字解得與否 (Literacy)에 관한 資料는 出生 死亡 婚姻 離婚諸率의 差異를 아는 情報가 된다 出生 死亡 婚姻 離婚의 社會的인 差異는 職業의 要素가 重要한 役割을 하며 出生에 있어서는 嫡出子에 관한 要因이 重要한 役割을 한다

그러나 資料의 蒐集에 內包될 諸難點에 因해서 文字解得與否(Literacy)에 관한 資料는 最少의 情報事項을 얻을 수 있음에 不過하며 이것도 相當한 敎育을 받은 人口에 對해서 可能하다.

國際勸告

動態事件統計申告書의 第二次 優先順位인 文字解得與否(Literacy)는 當該人口에서 計算되어지지 않는 限 無價値하다 따라서 動態統計에 採用할 文字解得與否(Literacy)는 그 國家의 人口센서스에 採用되고 있는 定義와 一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理論에 따라 國際統合統計委員會의 勸告는 1950年에 使用할 人口센서스定義를 人口動態統計에 適用토록 하였으며, 國際的 比較를 위한 動態統計의 文字解得與否(Literacy)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文字解得者(Literacy)란 그 나라의 言語로서 單純한 文章을 쓰고 읽을 수 있는 能力을 가진者이다 文字解得與否에 관한 質問對象은 最少年令을 15才 以上으로 해서는 안된다 A.

이 定義는 1962年에 유네스코(UNESCO) 敎育統計標準化專門委員会(68)가 提設한 것와 一致하는데 유네스코가 提設한 "不完全解得者" (semi-literacy)를 除外시킨 것이다

유네스코(UNESCO)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그의 日常生活에 있어 單純한 文章을 解得하며 쓸수 있는 者는 文字解得者(literacy)로 看做한다

그의 日常生活上의 單純한 表現을 解得하나 쓸줄 모르는 者는 "不完全解得者" (semi-

literacy) 로 看做한다

國際聯合人口委員会의 勸告는 文字解得與否 (literacy) 에 관한 센서스 資料의 分類問題를 取扱하였다 이 勸告는 元來 人口센서스에 관한 것이지만 動態統計에 對해 充分한 考慮가 된 것이다

"本委員会는 文字解得者 (literacy) 및 文盲者에 관한 資料의 年令限界를 15才以上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資料의 發表는 各 性別로 하되 적어도 다음과 같은 年令階級으로 해야 한다

15才 未滿 (資料의 最少年令이 15才 이상일 경우) 15~19 20~24 25~64才까지는 10才 階級別 65才 以上 大部分의 센서스 調査上의 最少年令이 10才 그 以下라는

事実로 봐서 10~14才의 年令階級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文字解得與否(literacy)에 관한 統計의 分類 및 集計의 基準化는 Unesco의 特別한 関心事가 되어 왔다. 1952年 11月에 開催된 第7次總会는 上記의 專門委員会의 報告書를 採択하고 이 分野에 積極的인 研究를 継続토록 权限을 주었다.

文字解得與否(literacy)의 定義에 관하여 專門委員会가 言及한 바로서는

(1) 文字解得狀態(literacy status)의 分類는, 教育을 받은 者(literacy) 文盲者로 区分하되 必要하면 "不完全解得者(semi-literacy) 및 "完全文盲者"(full illiterate)로 細分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 分類는 性 및 年令階級別로 分類하되 年令階級은 10~14, 15~19, 20~24, 25~34, 35~44, 45~54, 55~64 65以上으로 한다

(iii) 可能하다면 10~14才는 各才別로 分類한다

(iv) 上記한 各 年令階級別 適用이 不可能할 경우에는 10~14, 15~44, 45~64, 65以上으로 分類할 수 있다

이러한 勸告는 現在 硏究中에 있으나 國際的 標準化는 아두 지지 않고 있다

資料獲得의 諸問題

主된 問題는 未是 定義問題이다 文字解得與否(literacy)에 관한 定義는 各國에 따라 다르며 大槪의 경우 面接者의 解釋如何에 따라 다르게 된다

動態統計報告書上의 質疑上의 差異는 알수 있지만 센서스 調査票上의 質疑가 읽고 쓸줄 아는 能力, 또는 '읽을줄은 아나 쓸줄 모르는 者' '쓸줄은 아나 읽을줄 모르는 者로서 表示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의 質疑는 否定的方法 即 읽지도 쓸줄도 모르는 者 · 또는 읽을줄 아나 쓸줄 모르는 者等과 같이 質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疑問方法은 읽고 쓸줄 아는 能力의 程度를 疎忽히 하기 쉬우며 不完全解得者 (Semi-literacy) 即 읽을 수 있으나 쓸줄 모르는 者를 包含할 憂慮가 있다 如何튼 定義를 明白히 하는 것으로 正確한 情報를 얻게 된다는 事實을 銘心할 것이다

出生順位 (Live-birth order)

參照 母의 出生兒類

配偶関係 (Martal Status)

資料의 用途

死亡者의 配偶関係는 配偶関係別 人口推定에 必要한 情報가 될뿐 아니라 配偶関係別 死亡을 分析하는 情報가 된다

이와같은 分析은 國民保健計劃의 基本的 要素를 研究케 한다

그 같은 研究結果는 當該地域에 対한 鎖針者로서의 價値가 있는 것이다

한편 新郎 新婦의 適法의 配偶関係는 人口의 出生力에 관한 類型分析에 緊要한 資料가 된다 이 資料가 年令別로 交関分類될 수 있다면 家庭의 形態를 알 수 있을 것이다

國際勧告

統計가 發達한 國家에 있어서 死는統計報告上의 配偶関係項目이 重要하다는 点을 認定하여 国際斯合은 "第二次優先順位(Second priority)로 하였다 한편 이 項目은 婚姻統計報告에 깊은 関係가 있으므로로 第一次優先順位로 看做된다 (60)

動態統計의 配偶関係에 関한 国際的인 勧告定義는 人口센서스에 勧告된 바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人口推定 및 諸率의 算出에 必要하기 때문인데 事実 動態統計는 그 나라의 人口와 関斯을 맺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例컨데 모든 婚姻率 即 未婚 死別 離婚率은 可婚人口를 基礎로 하여 算出된다 이와 같이 過去配偶関係에 依한 婚因은 一定한 人口集団에 関係를 맺고 있는데 未婚者(Never-married)의 婚姻과 未婚人口(single population) 死別人口에 對한 死別者의 婚姻 離

婚人口에 對한 離婚者의 婚姻等이 그것이다 未婚者의 死亡은 未婚人口에 관계가 있으며 既婚者의 死亡은 有配偶人口에 관련을 맺고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考慮에서 国際斯合統計委員会[61]는 動態統計의 配偶関係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配偶関係 (Marital status)란 下記 事件의 概念에 一致하는 方法으로 国内的 目的에 必要한 種類로 表示한다 即 有配偶라 事実上의 夫婦 (de facto unions) (実質上의 婚姻関係) 死別은 再婚하지 않는 者 離婚者란 不実 再婚하지 않고 있는 者, 独身未婚者란 上記한 婚姻事実이나 離婚 또은 死別한 事実이 없는 者를 말한다 만약 合意上의 夫婦를 把握치 못할 경우라면 "有配偶"로서 取扱하여야 한다.

配偶関係에 있어서 未詳 (Not stated)은 本

項目의 分類方針에 따라 分類할 것이다 이 分類方針은 本來 死亡統計나 婚姻統計에도 適用할 수 있으며 一夫多妻主義를 採하고 있는 國家에서도 有配偶男子의 區分이 可能하다 特히 留意할 것은 未詳 (Not stated)의 分類라는 것이다 配偶関係를 알 수 없는 (Unknown) 部分은 分明히 表示되도록 하여야 한다

資料 獲得問題

婚姻統計의 限界와 報告上의 介在될 重要한 問題로서는 合意上의 夫婦 (Consensual unions)를 如何히 取扱할 것인가 이다 이 問題는 위에서 말한 婚姻관에 密接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센서스의 配偶関係를 決定할 때와 全然 同一하다

이 問題를 解決하려면 動態統計나 人口統計에 있어서 合意婚姻이 一般的으로 盛行하고 있는 地域에

있어서는 統計上에 分離시켜 取扱하는 原則을 擇하여야 한다 現在 또는 過去로 부터 合意上의 夫婦 換言하면 事実上의 夫婦 (De facto unions) 生活을 하고 있는 者가 出生 死亡 或은 새로운 法的婚姻 (legal marriage) 을 申告할 때 合意上의 婚姻 事実 自体를 申告할 것 같지 않다 大概 合意上의 夫婦에서 出生한 兒孩는 申告를 畢하지 않은채 放置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死亡申告書上의 有配偶人口는 單只 法的 婚姻에 限하는 境遇가 있는데 이것은 日本의 例(6)와 같이 센서스에서 法的婚姻과 合意上의 婚姻 (De facto marriage) 를 區分하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法的 婚姻만이 申告된 事実이다

施行中인 法的婚姻申告에는 過去의 配偶関係 即 合意上의 婚姻関係가 아니라 離婚 或은 未婚 (single)

과 같은 事項이 申告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合意上의 婚姻関係를 把握할 수 없는
実情이다.

65個에서 入手한 動態統計報告書 (Vital statistics Reports)를 研究하여 보면 과테말라는 出生報告書나 死亡報告書上에 配偶関係에 관한 設当表示로서 Viudo (a) 欄이 있고 니카라과는 Libre, 온두라스와 메시코는 特히 合意上의 婚姻과 形式上의 婚姻을 区分 取扱하고 있다.

하이티는 婚姻統計報告書上에 合法的婚姻과 其他婚姻을 明白히 区分하고 있다. 이러한 例는 統計申告書를 研究한 가운데 介在된 陥穽의 例에 不過하다. 一般的이든 宗教的이든 간에 法的 婚姻과 非合法的 婚姻과를 明白히 区分할 수 없다는 事実은 未婚과 有配偶에 誤差를 있게 하여 正当한

許價를 하지 못하게 한다

"別居" (Separated)란 用語를 使用할 경우 亦是 甚한 混亂을 가져 온다.

어떤 國家에 있어서는 別居란 用語를 法的 別居 法院의 判決에 依한 別居만을 別居 (Separated) 라 使用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이의 概念이 明白치 못한 경우도 있다 이 別居란 概念을 分明히 또 標準化 하자는 것은 離婚이 一般的으로 認定되지 않거나 或은 그 國法律下에서와 같이 離婚의 形態가 數種이 있을 경우에 婚姻이 갖는 意味가 다르기 때문에 特히 重要한 것이다

國籍 (Nationality)

資料의 用途

兒孩의 父母 死亡者 婚姻當事者 或은 離婚當事者의 國籍에 관한 資料는 種族別 出生

死亡 婚姻 離婚을 測定하는 資料가 된다

國際勸告

動態統計에 있어 一般的인 意味가 없기 때문에 이에 對한 國際勸告는 없다 國籍에 관한 項目은 資料蒐集項目中의 最少限의 項目 即 第2次優先順位에도 包含되어 있지 않으나 任意的 項目으로서 國家에 따라 擇할 수 있으며 그의 用途는 各國의 必要에 全國으로 따를 것이다

父母의 國籍 或은 市民權이나 死亡者 婚姻 或은 離婚當事者의 國籍 或은 市民權에 관한 情報蒐集을 要하는 國家에 便宜를 주기 위하여 國際聯合人口委員會(13) (the population commission of the U.N.)는 다음과 같은 勸告를 하고 있다

"1950年의 人口센서스는 이 센서스가 施行되는 國家의 市民인 者와 歸化 或은 이와 類似한

境遇로 된 者와를 區分하도록 하며 ㄴ). 外國人을 區分 調査해야 한다 그리고 可能하다고 外國人은 市民权을 가진 國家別로 分類 되어야 한다

센서스와 比較하기 위하여 動態統計가 同一한 카테고리로 分類된다고 할지라도 特定한 例外를 벗어날 수 없다

資料의 獲得問題

國籍에 관한 資料가 不適合한 것은 國籍에 관한 意味가 不明瞭한데 基因한다

"市民権"(citizenship)과 國籍(Nationality)의 用語上의 混乱을 이르키는 事実은 周知된 事実이다 法的意味에 있어서의 國籍이란 市民権이라는 意味로 通하지만 即 選挙权 身分権과 같은 市民权을 가질 수 있는 身分을 말하는 것이나 어떤 때는 血統이나 出生地를 가르킬 때도 있다

國籍의 意味가 이렇게 서로 다르고 明白하지 못하기 때문에 國籍이란 用語를 쓰지않고 더욱 特殊한 用語를 쓰도록 한것이다

國籍에 관한 適切한 答辯을 얻기 위해서는 센서스 施行時 얻은 事實과 같이 무엇이 願하는 것인가를 正確히 決定해야 할 것이고 屆出者 및 戶籍官이 定義와 取扱上의 留意事項을 明白히 하여야 하며, 둘째로 市民權이라는 槪念을 適用할 때는 國籍이 없거나 二重市民權을 가진者를 如何히 할 것인가를 解決해야 한다

이러한 諸問題는 本是 人口센서스에 採用하고 있는 方法을 따르는 道理밖에 없을 것이다

本籍地 (Nativity)

參照 「出生地」

母의 出生兒数 (Number of children born

to this mother)

資料의 用途

母의 出生兒数는 可娠年令 或은 그 以上에 있는 女子의 死亡報告 또는 出生 胎兒死亡報告에 母의 屬性으로 報告된 것이며 여러가지 形態의 出生順位 即 總出生数 出生順位 (Live birth order) 婚姻以後의 總出生順位等에 對한 算出基礎가 될 뿐 아니라 死亡의 原因이된 疾病이 出産에 如何한 影響을 미치는가를 研究하는 基礎로도 된다

上述한 바와 같은 出生順位別表 (Birth-order tabulation)는 特히 使用度가 크다 例컨데 國民保健當局者는 總出生数 出生 或은 死産에 對한 當該兒童의 出生順位를 아는 有益한 一面이 있다

이러한 方法으로 본 總出生順位는 母가 過去에 娠

娠한 經歷을 아는 것이 되고 妊娠經歷과 出生
兒의 分娩間에 因係를 알 수 있다 乳兒死亡에
관한 總出生兒數에 관한 資料는 出生順位와 生
殖의 可能性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過去 妊娠한 것 中에 出生(Live-
born)한 것과 死産한 것과를 區分製表하면
出生의 生存能力을 어느 程度 評価할 수 있는데
이는 先天的인 要因에다 後天的인 要因 即 生活
環境 文盲與否 職業 嫡出子 等等과 같은 社会
的 經濟的 要因을 結付시켜 生存能力을 判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出産力의 分析은 可
妊年令에 達하거나 그 以上이된 女子의 死亡時의
資料를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것이다
如何튼 이러한 疾病 或은 死亡에 對한 救濟策은
徹細하고 이 目的에 알맞는 充分한 分析을 基礎

로 될 때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出生順位 —— 出生總數로 본 (合法的 婚姻이든 非合法的 婚姻이든 간에) 現在 生存하고 있는 出生順位는 現在의 出生力의 제현을 指称하는 것이기 때문에 人口学者에게는 크나 큰 関心事인 것이다 即 이는 出生으로 이루어질 家族의 規模를 指示하는 것이다 따라서 出生順位가 높이 示顯된다면 家族構成員数는 增加할 것이며 한편 第一兒 (The first-birth)의 出生率이 높다면 새로운 婚姻으로 因하여 總出生率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婚姻에 있어서는 婚姻持續期間의 研究가 必要하게 된다 出生順位 및 母의 年令別構成은 重要한 分析의 一面을 차지하는 것이다

妊娠可能期에 있었는 女子들의 過去의 經驗으로

胎兒死亡을 分析하면 興味있는 구체을 할 수 있기도 하다 例컨데 過去 胎兒死亡의 經驗을 가진 女子가 胎兒死亡을 많이 하다면 이 分野에 医學的인 研究가 必要하게 된다 이 경우의 分析은 胎兒分娩数 即 胎兒死亡에 基礎를 둔 順位別 分析이 要하게 된다

婚姻에 對한 出産力의 研究에는 總出生順位 或은 出生 (Live birth) 順位別 資料가 必要하다 이 資料로써 婚姻持續期間別 및 婚姻年令別 出産力 패턴을 研究할 수 있을 것이다

出生児数에 関한 可姙年令女子의 死亡報告上의 資料 (Information) 는 家族의 規模와 그 構成을 알 수 있도록 製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資料는 人口센서스에서도 包含하는 수가 많으며, 그 結果는 어느 時期에 있어서의 出産

力 分析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人口센서스에서 얻은 이 資料는 그 用途가 極히 制限되고 있는데 그같은 센서스는 5年 또는 10年만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可姙年令을 지난 女子를 除外한 女子의 經驗은 部分的인 것일뿐만 아니라 어느 時点에 있어서의 一部的인 事実을 反映하는 것이다

女子의 可姙事実을 完全히 把握하려면 全生涯를 다할때 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官吏가 말한것 처럼, 死亡은 疾病뿐만 아니라 當該人口가 받는 出産力의 視点으로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適切한 資料만 있다면 婚姻年令別 婚姻持續期間別 社会的 經濟的 狀態別 出産力 패턴을 無限定 分析할 수 있다 特히 動態記錄에서 얻어질 이러한 資料는 一定한 時期에만

限定되는 센서스 보다 年年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國際勸告

여러가지 形態로서의 出生順位가 算出되면 이 用途가 많기 때문에 國際聯合은 勸告키를 (ㄱ) 出生 및 胎兒死亡統計報告에 있어서는 第1次優先順位이며 女子死亡에 있어서는 第2次 優先順位로 이 項目을 設定하였다 또 "母의 出生兒數"의 用途와 定義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모든 分娩 即 母의 生存期間中 出生하였거나 胎兒로서 死亡하였거나 간에 모든 子女는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ㄱ) 現在 生存하고 있는 子女

(ㄴ) 出生時에는 生存하였으나 現在는 死亡한 子女

(ㄷ) 死亡出生한 子女 等으로 區分된다

雙胎兒 分娩 (pluralissue) 의 경우 胖産된 各 出産兒와 胎兒 (child or foetus) 는 따로 따로 取扱해야 한다.

婦出子에 있어서도 (a). (b)에 對한 出生數가 몇만가를 알아야 하며 위의 (c)는 現在 或은 어떤 경우에는 過去의 婚姻中에 分娩한 數를 表示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만약 上記한 (a) (b) (c)의 區分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母의 總出産兒數"에 관한 資料 (Information) 를 얻거나 或은 이에 가장 類似하다고 생각되는 情報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資料는 人口学 및 國民保健問題를 研究하는데 서로 結合 折衷되는 것이다.

여러가지 部分 即 (a) (b) (c) 를 合하면 正確을 期할 수 있으나 実際에 있어서 例컨데 死

産兒의 資料는 그다지 効用性이 없을 것이다.

總出生順位 (Total-birth order) — 이 集計概念中 그 用述는 이미 說明한 바이고 計算은 當該 母의 出生兒数 或은 總分娩数에 依한 情報에서 얻어고 여에서 說明한 바이다

이 集計의 概念은 "-------- 母의 過去出産 (Issue) 子女数 〔或은 胎兒〕로서 그 出産이 生命 있는 出生이든 胎兒死亡이든 或은 姙娠과 婚姻與否를 不問에 부친다"(65)

出生順位 (Live-birth order) ——이 出生順位의 概念은 總出生順位와 같이 出生兒数에 依하나 단지 生命 있는 出生에 限한다. 이 定義는 다음과 같다.

"出生順位 (Live-birth order) 란 母의 過去로 부터 現在까지의 出生 (Live-birth) 에

관한 出産兒(或은 胎兒)의 順位이며 姙娠과 結婚與否는 相関하지 않는다"(65)

婚姻과 出産順位(Marrige birth order)——이것은 正式婚姻以外의 出生 或은 胎兒死亡을 除外한 即 嫡出子의 出生順位를 말한다 따라서 이에 該當하는 出生은 單只 結婚生活中에만 限定할 것이다 이런 出生順位의 諸般形態는 總出生順位(Total-birth-order)의 概念과 差異가 있을 것인데, 이점 婚姻과 出生順位(Marriage live order)는 母가 出産한 嫡出子에 對한 婚姻總出生順位 即 嫡出子로서의 子 或은 胎兒의 順位(Numerical order)라고 定義되며 이때의 出生總数는 生命있는 出生이든 死亡한 胎兒이든 모두 包含시키는 것이다 이 概念은 生命있는 出産(Live-born)에만 限해서 計算되므로 母가 出産한 嫡出子

(Legitimate live born) 全체에 對한 子女 或은 胎兒의 順位 即 出生 順位가 되는 것이다

嫡出子與否에 관해 重要視하지 않는 國家에 있어서 出生順位는 標準總出生數 (Total-birth order) 또는 出生順位 (Live birth order)와 같다 그러나 私生兒가 盛行하고 있는 地域에서는 이 槪念이 그대로 適用될 수 있는가의 與否에 對한 情報는 얻기 힘들다

集計가 總出生順位 (Total-birth order - birth order) 婚姻出生順位 (Marriage-live-birth order) 어떤것으로 되었든 간에 이 項目의 分類는 同一한 것이다 順位는 必要에 따를 것이지만 國際的인 比較를 하려면 國際聯合統計委員會가 勸告(66) 한 바에 따라 9까지는 單數로서의 順位로 表示하고 그 以上은 10 以上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역시 未詳 (not-stated)도 있어야 한다

資料의 獲得問題

出生兒数에 관한 資料蒐集에 있어 가장 重要한 問題는 届出者의 記憶力에 依하여야 되다는 과 過去의 私生兒에 관한 情報가 統計報告上에 記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過去의 胎兒死亡 (死産) 에 관한 情報는 흔히 矛盾이 많은 것이다 이 矛盾이 일어나는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届出者가 當該事実을 記憶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届出者가 直接的인 當事者가 아닌 경우 事実에 對해서 精通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 因하여 発生時点의 長短에 不拘하고 胎兒死亡에 관한 資料는 出生 (live birth) 에 관한 資料보다 그 信憑度가 낮으며, 発生事実이 他人에게 잘 알려 졌더. 할지라도 届出者는 그것을 잘 記憶하지 못

될 것이다 特히 記憶力의 問題는 正式婚姻에 의하지 아니한 出産에 對해서 産出者의 答辯은 더욱 不明瞭한 것이다 이와 같은 忌避를 防止할 수 없기 때문에 質問에 對한 答辯은 어느 程度 不正確하다 이러한 記憶力의 諸要因 即 忌避와 無知로 因해서 出生(Live births)에 관한 出生順位(Birth order)는 總出生順位(Total birth order)以上으로 信賴性이 없다

資料의 缺乏으로 發生되는 難点과는 別個의 問題로서 質問 그 自体를 解釈하는 問題가 있다 統計報告書上에 記載될 質疑를 明白히 하기 爲해서는 下記事項에 對해서 注意를 換起시킬 수 있는 技術 質疑(Drafting questions)를 하는 것이 有益하다

(1) 報告時에 生存하고 있거나 死亡한 子女의 總

數 (2) 報告된 子女의 數中 包含된 出生
(Live births) 과 申告된 胎兒死亡者數

e) 該母의 出生兒 總數 或은 現在의 夫婦에서 出生한 兒童總數와 過去의 夫婦에서 出生한 兒童의 總數를 質問할 수 있다

本項目에 對한 樣式과 定義를 國際研合이 勸告한 바에 의하면 이것에 對해 統一과 明白을 期하도록 하고 있다

扶養子女數 (Number of Dependent children) 資料의 用途

本項目은 離婚에 關係를 가진 것으로 社会福祉 機関 特히 兒童保護機関에 必要한 資料이다 離婚宣告로 因하여 家庭이 破綻되어도 子女는 公共機関으로 부터 扶助를 가게되는 경우가 許多하다

이 규定을 責任질 機関은 이 問題에 対한 可測範囲를 把握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扶養子女数에 관한 資料는 年令 或은 結婚持續期間으로는 出産力研究에 必要하나 그 用途는 極히 制限되고 있다 이러한 制限은 家族의 規模를 予測할 수 없는 資料의 内的性質로 말미암은 것이다

國際勧告

「動態統計制度의 諸原則」에서는 離婚統計報告에 있어 第1次優先順位로서 勧告하고 있다. 年令을 標準化하려고 「統計委員会」는 扶養児童의 年令上限을 16才로 提示하고 있다

居住問題에 관해서 居住地 또는 時期 (time reference) 는 訴訟日字에 관계 없이 特定한 年令에 있는 모든 児孩를 包括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届出者가 当時의 人的事項에 對해서만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勧告原文은 다음과 같다

" 扶養子女数 (Number of Dependent children) 란 訴訟時 離婚当者側 어느 편이든 扶養하고 있는 16才 未満의 生存子女總数를 말한다

同委員会는 扶養子女数와 婚姻持續期間別 교차분류 離婚件数를 提示하면서 子女数의 分類를 0, 1, 2, 3, 4, 5, 6, 7 以上 未詳 (Not stated) 으로 할것을 勧告하였다 (2)

資料의 獲得問題

여기에 使用하고 있는 扶養의 定義가 明確하므로 比較할 수 있는 資料를 얻는가는 것이 問題点이 된다

各國이 使用하고 있는 扶養年令의 上限은 16才 乃至 18才로 各其 다르다.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年令 或은 扶養狀態와는 關係없이 單只 生存하고 있는 子女의 數를 묻기 때문에 正確하고 比較할 수 있는 資料를 얻기가 지극히 困難하게 되고 있다.

扶養에 관한 民法問題는 역시 居住의 問題를 考慮해야 할 것이다. 離婚時에 離婚当事者의 어느 便에든 生存하고 있는 子女라고 해서 離婚者에 從屬된 扶養子女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統計로 볼때는 總戶數에 對한 總負担이라는 말로서 解釋해야

할 것이다

또한 時期 (time reference)는 離婚宣告時인가 或은 離婚訴訟時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離婚訴訟과 離婚宣告間의 期間이 數年을 要하는 수도 있으므로 扶養子女의 年令이 扶養年令을 넘어 버리는 수도 있다 離婚에 관한 統計報告는 法院書記가 記載하는 것이 普通이므로 이 項目에 있어서의 標準化의 問題는 別로 意味를 갖지 않는다

婚姻回數 (Number of previous marriage)

資料의 用途

이 項目은 出生現數와 같이 婚姻成立 或은 解消의 回數(order) — 여기서는 婚姻回數 — 를 아는 資料가 된다 婚姻回數의 婚姻 或은 離婚集計表는 婚姻의 安定性에 관한 資料로서 社會的인 重要性이 있는 것이다 要컨데 家庭의 構造와 構成을 아는 情報가 된다

國際勸告

「諸原則」(68)에서는 이 項目을 婚姻및 離婚統計 報告時의 第二次 優先順位로 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 勸告된 定義는 다음과 같다

"婚姻回數(number of previous marriage)(有配偶者 或은 離婚者에 對한)란 本婚姻以前에 婚姻한 數, 換言하면 本離婚以前에 婚姻한 數로서 最後의 婚姻이 死亡 或은 死別로 解消되었든가의 與否를 不問한다

本定義는 過去의 婚姻에 관한 것이며 特히 現在의 婚姻을 除外하고 있다

資料의 獲得問題

本項目 獲得上의 가장 基本的인 困難의 하나는, 特히 이 項目이 人口學的인 家族構成에 관한 屬性을 아는데 使用될 경우라면 이 質疑에 對한 應答은 過去의 法的 即 正式 婚姻에만 限定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正式婚姻과 마찬가지로 合意上의 夫婦로 人口學上으로 볼때는 同一한 것이므로 合意上의 夫婦가 計算上에 除外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하나는 離婚者가 過去의 婚姻申告를 忘却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戶籍登上의 對照로서 이의 不正確을 訂正할 수도 있는 것이다

職業(Occupation)

參照; 經濟的 特性

姙娠 期間 (period of gestation)

資料의 用途

姙娠期間은 "gestation period", "utero gestation" 또는 "duration of gestation"으로도 불리는데 이 資料는 出生(live birth) 統計와 胎兒死亡 統計에 有益한 것이다 勿論 이 資料의 基本用途는 胎兒死亡에 있는데 그것은 世界保健機構의 勸告가 胎兒死亡을 姙娠期間에 따라 "初期"(early), "中期"(intermediate), "後期"(late)로 分類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區分 分類하는 것은 姙娠期間의 相異에 따라 胎兒의 死亡을 알자는 것이며, 姙娠退害(Pregnancy Wastage)의 特性을 알자는 것이다. 初期 姙娠期間에 胎兒死亡이 集中的 現象을 나타낸다는 것은 正常的出生에 있어서 보다 醫療的 問題가 달라야 한다는 意味하는 것이다. 附隨的인 屬性 이를테면 母의 年令、職業、産前保護(prenatal care), 出生形態, 醫療狀況等等과 같은 것에 着眼하

여 銳意한 分析을 하면 妊娠週數의 原因이 무엇이며 그 의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妊娠期間別로 分類된 出生(live birth)의 資料는 두 가지 重要用途가 있다. 첫째의 用途는 乳兒死亡에 관한 것이며, 早産(prematurity)은 乳兒死亡의 重要한 原因이다. 이 말은 「早産에 관한 專門家團의 最終報告」(the Final Report of the Export Group on prematurity)[70]에서 引用한 것으로 "早産"(prematurity)을 規定하는 方法으로서 世界保健機構가 採択한 定義[71]는 出生時의 体重이 定해 있지 않으면 37週未滿의 妊娠期間을 가진 分娩乳兒는 本分類에 있어 早産乳兒로서 '早産'(premature)이라고 定義한다. 出生時의 体重과 妊娠期間과의 相互關係를 硏究하면 不明確한 早産의 槪念이 어느 程度 明白하게 될 것이다. (參照 "出生時의 体重"(後述)) 出生体重이

있을 경우 早産의 定義로 본 用途는 新生児 死亡을 研究함에 있어서 姙娠期間은 分析的用途를 갖는다. 新生児의 死亡諸要因은 一般乳児死亡要因보다 胎児期의 死亡 即 後期의 胎児死亡 (late-foetal death) 에 더욱 머치는 관계가 크다는 事実을 알수 있다. 이 理由는 後期의 胎児死亡은 新生児死亡 (neonatal death)과 合하여 "産前" 死亡率(22) (prenatal mortality rate) 이 計算되기 때문이다. 出生直前에 일어나는 死因과 新生乳児 (new born infant) 에서 일어나는 死因은 서로 類似性을 가지는데 이에 関聯된 研究가 必要하다

이에 関聯된 要因이 바로 乳児報告上에 記載되어야 할 "姙娠期間" 인 것이다. 이 姙娠期間을 얻지 못한다면 死亡報告上에 姙娠期間에 관한 資料를

경우 시점 必要가 있을 것이다、妊娠期間別 新生兒死亡(neo-natal death) 分析이나 其他要因即 出生 形態, 出生時의 体重, 母의 年令 및 職業과 같은 要因別 分析은 바로 医學的 國民保健的 資料가 될 것이다

國際勸告

妊娠期間에 관한 資料가 適切 얻기 힘들고 또 妊娠期間을 把握하기 困難함에도 不拘하고, 이들이 不完全한 資料를 分析하여 얻어진 情報는 重要하므로 이 項目은 國際統合에서 論議되어 胎兒死亡申告時에는 第1次優先順位로 하고 出生 申告時에는 第2次優先順位로 되어 있다、 國際統合의 勸告는 上記한 報告期限을 最少限度로 定하고 있는데, 이 勸告된 定義(73)는 「世界保健機構의 死産 및 落胎定義에 관한 分科委員會」의 定義를 基

아들인 것으로 다음과 같다

妊娠期間이란 最終月經日에서 分娩日間의 滿週로서 分娩(Product of conception)이 出生(live-born)이든 生命의 証據가 없는 出生이든 関係없다. 이 定義를 구체적 따르면 妊娠期間은 妊娠予想日字가 아닌 最終月經開鎖日字에 따라 計算되며 이 期間은 陰曆 或은 月曆에 依하는 것이 아니라 滿으로 起算하 週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概念은 出生(live birth)이나 胎児死亡에 共히 適用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最終月經 開鎖日字 決定에 있어 医學的日字와의 差異는 統計的立場에서 볼 때 그다지 重要하지 않으며 定義의 統一과 그 適用이 問題없다.

「死産 및 落胎定義分委」(73)의 勸告는 妊娠期間을 出生(live birth) 및 胎児死亡 共히 下記

4個集団으로 分類토록 勧告한 것이다

姙娠期間이 満 20週未満 I 群

満 20週乃至 満 28週未満 II 群

満 28週以上 III 群

分類不能 IV 群

그러나 이 區分은 早産에 관한 国際定義의 出生体重을 考慮치 않으면 早産의 出生(live birth)을 明瞭하게 把握할 수 없다. 따라서 「国際統計委員会」는 다음과 같은 分類를 하고 있다

満 20週 未満

満 20 - 27週

満 28 - 36 週

満 37週 以上

未詳(not stated)

上記한 国際的인 姙娠期間의 定義는 満週로서 즉

分류고 있다는데 注意할 것이다. 短期日內에 모든 国家가 이러한 分類를 採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姙娠期間은 月로 表示될 것 같다. 만약 이 姙娠期間이 陰曆 月로 申告된다면, 上記 4個区分에 依한 滿週로서의 修正이 不可能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陽曆으로 換算되었다면 修正問題가 惹起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正確한 標準週에 一致하지 못할 것이다. 陽曆月曆(calendar months)을 다음과 같은 分類에 따라 集計함이 좋다.

陰曆月曆 5月未滿 (滿 20週 未滿)

陽曆月曆 5月至 6月 (20-28週)

陽曆 7月至 8月 (28-37週)

陽曆 9月以上 (37週以上)

資料의 獲得問題

姙娠期間을 決定지우는데 介在될 問題란 바로 姙

娠期間의 測定問題이며 그 定義問題인것과 같음 以
下、定義問題에 存在할 難点은 "姙娠期間"(Period
of gestation)과 "胎兒生存期間 或은 "姙娠期間"
(duration of foetal life or pregnancy)간의
用語上의 混乱이다、生物學上으로 볼때 "胎兒生存
期間 或은 姙娠期間"이란 姙娠日字와 分娩日字 即
出生間의 經過期間인 것이다 그러나 姙娠最初日字를
決定하기가 어려우므로 어떠한 다른 方法 即 姙娠
期間을 測定할 必要가 있는데 이 姙娠期間은 姙娠
한 瞬間부터 測定하는 것이 아니라 最後의 月經開
始日字부터 따지는 것이며 이것이 더 便利한 方法
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概念上의 類似性으로 말미암아
姙娠期間申告에 相当한 混乱을 이르키는데 "姙娠予
想日字"(Probably date of conception) 即 "也

母保健機構나 國際聯合이 勸告한 月經開鎖期의 初日이 아니라 最後의 月經이 있은 後 270-280日째가 바로 "姙娠予想日字"라는 것이다. 國際標準定義를 따른다면 概念 및 用語上의 混乱을 防止하며 比較適性의 問題를 向上시키게 될것이다

여기에 關聯된 其外의 隘路란 胎兒死亡의 경우 姙娠期間에 對한 用語의 確定問題이다

胎兒死亡發生日字를 正確하게 判斷할 수 없으나 醫學的으로는 이를 正確하게 判斷할 수 있는 것이다. 死亡胎兒의 分娩日字는 알 수 없으나 統計에서 必要로 하는 經過日字를 簡單히 計算하기 위하여 分娩日字를 最終 姙娠日字로 使用한다

이 分娩日字를 使用하므로 그다지 큰 錯誤가 없는데 그것은 実際로 胎兒死亡日字와 거의 같기 때문이다. 따라으로 姙娠期間에 관한 資料蒐集上 難点은

經過期間의 表示方法 如何에 있나 만약 經過期間의 表示를 月로 하여 測定한다면, 이 때의 時間單位는 月을 결 알지 않으는 即 陽曆月의 日字가 같으고, 陰曆月의 日數는 29日인 等에 관한 日字를 알지 않으는 週로 修正할 수 있는 것이다. 申告된 姙娠月數를 週數로 修正한 生存兒가 30週에 集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 姙娠予想日에서 計算하여 1個月을 4週로 하여 修正하였으므로 平均 姙娠月數 9個月이 되는 所以이다. 더구나 正常的인 成長을 하여 予想解産日을 훼서 出産한 生存兒는 '滿期'(full term)로 申告하는 수가 許多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最初의 月經開鎖日로 부터 計算한 平均姙娠期間 即 40週로서 解釋된다

正確한 病院報告를 硏究하면 生存兒의 姙娠期間의

分布는 平滑한 度數曲線을 그리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어느 한 期間에 集中現象(heaping)이 있음은 報告가 不正確하거나 計算方法이 틀렸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것이 된다 届出者가 姙娠經過期間을 莫然히 滿期(full time)로 申告하였으므로 不正確하게 되며 週로의 修正이 不正確하기 때문에, 出生 및 胎兒死亡統計上에서 姙娠期間 뿐만아니라 最初 月經開始日을 測定하는데 特別한 考慮가 이루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斷先的인 情報에 따라 姙娠日字와 分娩日字間의 經過時間을 算定함에는 統一된 方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質問形式으로부터 얻은 答辯은 "姙娠期間"을 묻는 質問形式보다 그 確率이 極히 稀薄하다 이러한 理由로 明白한 理論的 根拠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一般的인 認定을 받은 方法을 찾을 수

없다. 姙娠期間을 正確하게 推定 計算하는데 難色을 주는 要因은 바로 不完全하고 不正確한 申告에 있다. 病院에서 分娩치 아니한 경우 正確한 答辯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깝다. 이같은 缺陷은 可能한데도 不拘하고 戶籍吏가 出生者의 申告事項을 正確하게 把握하려 들지 않는다든가 或은 資料를 提供할 父母가 無能力하다든가 結婚前의 姙娠을 隱蔽하기 위하여 姙娠期間을 過小陳述하는 等 그 原因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質問修正하거나 또는 申告된 資料를 確定的인 것으로 하여버리면 前述의 資料에서 이를 確認 補充할 길이 없다.

結果的으로 姙娠期間別 集計에는 必然的 未詳(Unknown)이 많게 된다. 이러한 分布上의 偏倚(bias)를 把握할 수가 없다.

出生地(Place of birth)

이 項目은 birth-place 或은 Nativity 라고도 하며 出生, 死亡 婚姻 雜婚上의 種族的 地域的 差異를 硏究하는 資料가 된다 出生地別 生産方 即 母로는 父의 出生國은 大規模의 入国移民이 있는 国家에 있어서는 經濟的 社会的 要因이 決定的 役割을 하는 相互関係를 갖게 된다

최근에 美国에서는 數年동안 이러한 硏究를 한 結果 外国胎生者가 極히 높은 出生率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差異가 今日에 와서도 이러한 狀態가 継続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硏究가 더욱 意義있게 되려면 出生地別 死亡 硏究를 하려면 死因 職業과 같은 要因을 折衷하여 考察치 않으면 안될 것 婚姻 및 雜婚의 出生地別 硏究는 當該地域內의 여러가지 生活構造에서 外国胎生人이 本国胎生人과 婚姻을 하므로서 同化

제 비리는 社会學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

国際勧告

이 項目은 国民에 따라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任意的 項目으로서 「原則 3008」(77)의 項目이 아니다 그러나 出生地別 出生 死亡 婚姻 離婚이 意味를 갖자면 當該人口와 関係를 갖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動態統計에 있어서의 出生地 項目은 센서스에 있어서의 出生地 項目과 同一하게 定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에 對해서 「国際聯合人口委員会」는 다음과 같은 勧告를 하고 있다

出生地에 関한 資料는 (a) 센서스施行国의 所生與否 (b) 本国所生이 아닐 경우에는 센서스 施行時 現在의 国境에 따라 出生国을 記入한다 政府는 大大的인 国境의 変更이 있을 경우 正確한 出生国別 分類을 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 해야 한다

"이에 對한 研究를 더욱 必要로 할 때 地域的細分化된 出生地別 資料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資料獲得問題

種族上의 特性으로 본 出生地 或은 船生地 資料를 解釋함에 있어 雜多한 種族으로 構成된 国家에 있어서는 本国人으로서 어떤 種族을 択하느냐의 問題가 있다 入住者集団에 依하여 文化圏을 形成維持하며 食生活의 方法 婚姻慣習等을 包含한 伝統의 継承維持가 本国船生 祖上에 對한 것으로 보고 文化的差異가 把握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種族에 관한 資料는 出生地別 資料가 市民権別 資料보다 더 満足스런 情報를 提供하는데 両의 言語를 묻는 것이 아주 適合한 方法이다

이러한 資料蒐集方法은 自国의 諸問題를 参酌하여 項目을 設定하는 것이 좋다. 出生地資料에 関한

申告上의 難点中의 하나는 地理的 申告地域을 如何히 決定하느냐의 問題이다 이 地域이라는 말은 ⓐ 統計報告가 이루어지고 있는 時点에 있어서 現実的으로 実在하는 政治的 境界를 意味하기도 하고, ⓑ 特定年에 있어서의 境界 或은, ⓒ 情報蒐集対象者의 出生時 當時의 地域을 意味하기도 한다. 政治的인 国境이 甚히 変動하고 있는 国家에서는 可能한 限度内에서 比較通性을 保全하기 위하여 이 問題가 特別한 関心을 갖게 될 것이다 同項目의 報告上에 미칠 하나의 観点이라 一定한 地理的 細分程度이다 国際的 比較나 国内의 比較를 意해서는 "外国出生" (foreign-born) 과 "本国出生" (native-born) 의 区分만으로도 充分할 것이다. 国内統計에 있어서는 自国内의 地方的 差異를 研究하기 위하여 実際出生地方名을 記載하도록 할 수도 있다.

實際의 出生 地方 申告에 있어서 附隨되는 難点이 큰 出生이 病院에서 있었을 경우 出生地를 病院所在地로 申告하는 傾向이 있는데, 事実은 父母의 居住地로 申告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差異에서 오는 誤差는 그다지 큰 意味를 주는 것이 아니다

發生場所 (place of Occurrence)

資料의 用途

出生、死亡、死亡胎児의 分娩、婚姻、離婚의 發生所在地에 관한 資料(information)는 "發行場所別集計" (place of Occurrence tabulation)의 基礎가 되며 이러한 集計가 動態統計劃의 基礎인데, 그것은 一国의 分劃된 小単位 地域이 全体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小単位地域이 確定될 때는 이 単位가 合하여 보다 큰 地理的 単位를 形成하며 居

性別 集計의 基礎를 이루게 된다. 發生場所를 基礎로 한 더욱 複雜한 集計가 行政的 目的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경우로서는 醫療施設의 適合性 與否를 評価할 때이다 入院 및 入會者別 發生場所로 본 出生 및 胎兒死亡集計는 醫療施設이 不足한 地域을 나타낸 것이며 어떤 理由로서는 該地域의 人口가 醫療施設을 有用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된다 發生 및 居住地別 交関集計(Cross-tabulation)는 解産時 母의 居住地 以外의 醫療所를 갖는 程度를 알게 된다 死亡에 관해서 보건대 年令 및 死因은 勿論 入院 및 診斷形態別 居住地集計는 国民保健当局에 그 重要性이 있는 것이다.

傳染性疾病으로 死亡者가 当該地에서 發生하였음을 알 때는 病源을 退治할 保健活動이 実際로 展開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疾病으로 産母가 死亡하고

乳兒의 死亡 및 死亡者가 어느 地域에 発生한다면 環境衛生이나 医療施設의 可用性 與否를 検査할 必要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된다 発生地別 集計는 바로 이러한 用途를 갖는 것이다 発生地別 集計가 婚姻集計에 있어서는 別로 意味가 없는데 그것은 結婚한 場所가 人口學的 또는 国民保健이라는 観点에서 볼 때 決定要因이 되지 못한다는 事実로 봐서 明白하다 発生地別 婚姻 및 離婚은 節次上의 要件이 地方에 따라. 다른데 例컨데 婚姻에 있어 性病検疫이나 或은 結婚免許状(licence)을 얻거나 儀式挙行에 앞서 要하는 結婚予告(banns)의 要件과 같은 것은 地方에 따라 相異한 것이다

離婚訴訟節次上의 居住地는 어떤 地域에 있어서는 発生地와 居住地를 同一視하고 있다

離婚의 発生地에 미칠 다른 要因은 離婚의 成立

이 管轄裁判所의 所在地에 依하는 경우이나
따라서 婚姻 및 離婚의 発生地別 集計는 人口學的
分析에 別로 意味없는 것이 못된다
離婚発生場所는 原則的으로 行政目的으로 쓰이는 것
이 普通이다

國際勸告

國際統合의 「動態統計制度의 諸原則」에서 発生場
所 또는 動態統計報告上 第1次 優先順位로 하여
「原則 309」에서 그 定義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発生場所(place of occurrence)란 出生 死亡
死亡胎兒의 分娩婚姻 或은 離婚이 発生한 地理的場
所(Geographic Location)를 말한다
이 資料(information)는 그 國家의 最大 行政単
位로 하여 集計하되 国內的用으로 하나 小単位 行

政区域으로 分割集計할 수 있다

国際的用途로서는 単只 可能한 限 最大의 行政単位로 集計할 수 있음을 本定義에서 示唆하고 있다 그리고 国家的 必要에 副應하여 小単位 行政区域別 集計를 하도록 하고 있다. 国家의 行政区域 分割에 관한 国際的 標準을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報告内容을 国際的 勧告로서 集約할 수가 없다 그러나 大体로 国内에 쓰이는 用語로서 "道"(province) "郡"(country) "市"(city) "街"(street) "番地"(number) 等으로 必要에 따라 区分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質問이 明白하지 못하게 漠然히 "発生地"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形態의 答辯이 나와서 그 正確度를 予測할 수 없게 된다 同質的인 答辯을 얻기 위해서는 統計報告書上에 이에 對한 充分한 説明이 加해져야 할 것이다.

國際統合이 勸告한 集計計劃(19)은 發生地의 分類를 다음과 같이 分類코록 示唆하고 있다.

(a) 最大의 人爲的 區域 (Civil division)

(b) 次位의 地理的 單位

(c) 重要都市

資料獲得의 諸問題

質問方法이 이 資料를 얻는데 가장 重要한 것이다. 地理的 區域이 設定되지 아니하면 比較性있는 資料의 蒐集이 事實上 疑心스러운데 이런 者는 "道" (province)로서 記入하는가 하면 어떤 者는 事件發生地의 全住所를 記入하는 等事가 있는 것이므로 回答에 對한 質問形式과 質은 前上시켜서 무엇보다 正確한 質問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常住地 (place of usual residence)

資料의 用途

出生兒의 母, 死亡胎兒의 母, 死亡者, 新婦 및 新郎 或은 婚姻当事者가 平常生活하는 地理的 場所인 居住地集計를 하는데 必要하다 이러한 集計는 出産力 死亡力 婚姻 或은 離婚을 分析하는데 根本的인 用途가 있다고 생각된다

居住地에 따른 出生 死亡分類는 年令 出生順位, 社会 經濟的 地位 等에 관련하여 分析하며 人口學的 또는 国民保健的 觀点에서 必要한 것이다 地域을 서로 比較하려면 居住地別 集計가 必要하다

居住地別 婚姻統計 不是 人爲的인 社会慣習 或은 어떤 地域에서는 婚姻에 一定한 負担을 加하는 따위와는 別個의 것이 되는 것이다. 居住地別 婚姻資料는 年令 過去의 配偶関係의 地方的인 差異를 알 수 있게 하며, 地方內의 婚姻 (inter regional

marriage)이 이루어지는 範囲 및 特徴을 把握하므로 社会学的인 用途가 있다

國際勧告

居住地項目은 動態統計의 5種 事件報告에 있어 모두 第1次 優先順位로 되어 있다 居住地에 관한 国際的인 定義를 내릴 수 없는데 이 居住地의 概念은 全的으로 各国家의 法律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統計에 있어서 "常住地"(place of usual residence)를 定義를 「統計委員会」(30)가 내린바에 依하면:

"常住地"(place of usual Residence)는 動態事件当事者가 平常 生活하는 地理的 場所이다 이 情報는 그 国家의 最大 行政単位로 集計할 것이나 国家的 必要에 따라 小単位 行政区域으로 分割 集計할 수 있다"

本定義는 文体로 居住地에 對한 것과 같으며 報告의 様式과 方法에 있어서도 同一한 言及과 示唆를 하고 있다 本定義를 適用함에 있어서 看過해서 안될 것은 이와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는 人口센서스와 一致해야 한다는 것이며 動態統計를 發展시킴에 있어서는 恒時 이러한 態度를 忘却해서는 안될 것이다 基本的 集計計劃으로 国際聯合이 勧告한 細部分類方案은 発生場所나 居住地에 對한 그것과 同一하다

社會學的 立場에서 볼 때는 "都市" (Urban)와 "農村" (Rural)으로 集計하여 보는 것이 좋다 그와 같은 地理的 分類는 都市와 農村에 있어서 死亡力과 出生力이 各其 다른 要因에 依한다는 前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한 要因으로서는 經濟的進步 文化와 利用度 諸般條件等을 서로 聯關시켜

보다는 것이다

国際的인 適用可能性이 全然 없으나 国内的 概念으로서 重要한 바이다.

人口센서스에 適用하고 있는 都市、農村의 概念을 보면 [82] 定義에 있어서 各国이 서로 比較되지 않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集団의 크기 (Size of aggl-omeration) 로서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政治的 単位로서 나타내기도 한다 이 두 가지 定義는 모두 그 나라의 必要와 制度에 따라 統計의 施行上의 定義에 不過한 것이다

이와 같은 各國의 差異에 着眼해서 国際斯合 [83] 이 이 問題를 다루었는데 이와는 달리 더욱 더 一般的인 視角에서 研究한 것이다 人口集団의 크기는 社会서비스와 아주 密接한 関係를 갖고 있고 또 모든 人口集団은 住民이 生活하고 있는 集団

의 크기에 따라 分類되어야 하므로 全体人口는 発生地의 크기에 따라 分類되어야 한다고 示唆하였다.

人　口

(a)　500,000名 以上의 住民

(b)　100,000 ~ 500,000名의 住民

(c)　25,000 ~ 100,000 〃 〃

(d)　10,000 ~ 25,000 〃 〃

(e)　5,000 ~ 10,000 〃 〃

(f)　2,000 ~ 5,000 〃 〃

(g)　1,000 ~ 2,000 〃 〃

(h)　500 ~ 1,000 〃 〃

(i)　500名 未満

(j)　이에 属하지 않는 人口

国際的인 比較手段으로서 都市、農村別 集計에 本分類를 提示한 것이다.

이와 同一한 示唆를 人口統計에 適用하고 있다. 各国은 自国의 都市 農村의 定義에 따라 集計할 것이나 各国間의 比較를 위해서는 人口學的 또는 国民保健的 分析에 있어서 "都市의 規模" (City Size) 別로도 集計토록 示唆하고 있다.

그 결은 集計는 解釈上 該人口의 類型에 依하므로 이와 同一한 形態의 人口센서스集計가 있어질 경우에만 이의 使用이 可能하게 된다. 이로 비루어 볼 때 每年의 集計가 必要없게 된다. 이 점 考慮되어야 할 것은 動態統計報告上의 申告內容이 都市規模別로 分類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센서스와 人口動態統計에서 쓰일 定義와 條項이 同一해야 한다는 것이다.

資料의 獲得問題

居住地別 資料를 얻는데 가장 適合한 統計는 常住地의

區劃와 同一한 形態의 人口센서스集計가 얻어질 경우에만 이의 使用이 可能하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볼때 每年의 集計가 必要하게 된다 이 때 考慮되어야 할 것은 動態統計報告上의 申告內容이 都市規模別로 分類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센서스와 人口動態統計에서 쓰인 定義와 條項이 同一해야 한다는 것이다

資料의 獲得問題

居住地別 資料를 얻는데 있어서 區劃과 發生地의 區劃과 同一한 것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正確한 質問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民 族 (race)

資料의 用途

이 項目의 用途는 出生、死亡、婚姻、離婚上에 種族的 差異가 있는 國家에서 確認되었으나 현재도

死亡에 있어서는 種族 그 自体 보다 社会 經濟的 基礎에 依存하는 傾向이 多分하다 出生은 보면 出生時의 体重으로 早産을 定義하는 限 各 民族에 따라 差異가 있다 이와같은 關係를 認定하여 「世界保健機構保健統計專門委員會」는 第2次會合에서 연는 次의 決議案(84)에서 各民族에 따라 特定要因의 相互關係를 研究하여야 함을 勸告하였다

國際勸告

各國이 使用하는 '民族'(race)의 意味가 다르기 때문에 限定的인 國際的 勸告를 이 項目에 내리지 못하고 있다. 國際聯合이 示唆한 바로는 本項目에 관한 資料를 蒐集하려는 國家는 恣意的이며 國內的 諸要因을 研究하는데 (出生, 死亡等에 따라는) 使用하라고 하였다. 本勸告는 「原則 308(b)」(85)에 맞아 볼 수 있다

資料獲得問題

如何한 意味로 쓰고 있는 民族에 관한 資料를 얻는데 問題가 되는 것은 民族이라는 概念을 明白히 規定할 수 없을 뿐 아니라 代表的이라고 생각할 만한 概念조차도 없다 大多数 国家는 人口센서스 調查票에 "民族"이라는 項目을 調查치 않고 있는데 이 民族 그 自体가 人口學上 重要하지 않고 센서스에서도 이에 對한 分明한 定義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0年代 人口센서스에 採用한 項目으로 「国際統合人口委員会」에서도 設定하지 않고 있다

"民族"(race) 이라는 用語上의 差異를 생각하더면 "民族"(race) 이라는 統計를 集計하고 있는 国家에서 찾아 볼 수 밖에 없다

예컨데 美国에서는 '民族 或은 皮부色'(race or

Colour)으로 質疑하고 있는데 이는 "白人" "니그로" (Negro) "其他"로 限定하고 있다 異民族의 代表国인 뉴지랜드와 마오리스(Maoris)에서는 非마오리人을 区分하고 있다 南亜聯邦에서는 "原住民" (Origin) 과 "血統" (Stock) 即 欧洲人 土着人 其他로 区分하며 後者(其他)는 인디안 其他 亜細亜人 有色人等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볼때 国内의 比較를 떠난 国家的 比較가 不可能함을 알 수 있다.

宗教 (Religion)

資料의 用途

種族的 差異를 究明하기 위한 宗教에 관한 質問은 出生、死亡、婚姻、離婚의 差異를 가는 資料가 된다 宗教가 그 나라 国民의 経済的 社会的 組織에 관계를 맺고 있는 適切한 要因이은 事実이다

어떤 宗教에서는 結婚이 禁止되고 있으며 어떤 宗教에서는 婚姻에 對한 規定을 두고 있으며 衣食住 및 慣習上에 미치는 宗教上의 影響力은 큰 바 있다 만약 宗教的인 生活方式이 全国民에게 支配的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가지 人口現象은 宗教的 要素로서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実際에 있어서 人口學研究를 爲한 分析的인 要因은 国家的 見地에서 볼 때 極히 制限을 받고 있는 것이다

国際勧告

人口센서스 調査票上의 宗教項目은 「国際統計處」(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가 世界센서스 調査票上에 宗教項目을 包含토록 하여 1872年의 国際的活動의 結果이다 그러나 本項目이 人口動態統計의 項目이 된 것은 「国際聯合統計委員会」

가 科学的인 蒐集価値가 있다고 認定하기 까지는
人口學的 要因으로 分析되지 못했다

資料獲得問題

宗教에 관한 質問의 뜻하는 바가 明白하지 못하
므로 正確하고 意義있는 資料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障碍인 것이다 宗教에 관한 情報의 質問形式
에 따라 몇가지 다른 方法으로 答辯된다.
이 答辯은 現在 實際的으로 얻고 있고 宗教를 答
하거나 或은 單純히 出生할 때의 宗教이나 現在
信奉하고 있지 않는 경우 最近에 믿고있는 宗教를 答하는 경우가 있다면
種族的 文化的 要因으로서의 重要性이 있으며, 或은 教会의
名誉会員이나 或은 社会的인 関係로 宗教団体에 参
與하는 者等의 答辯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
은 自己의 宗教를 믿지 않는 者도 있으며 또
相当한 数가 報告上의 不詳이 되고 있다. 有用한

資料를 얻을려면 特定한 期間에 對해 質問하도록 하며 "母의 言語" (mother-tongue)를 묻는 것이 좋은 方法이기도 하다

性 (sex)

資料의 用途

新生兒의 性, 死亡者 및 死亡胎兒의 性에 對해서는 많은 餘地도 없이 動態統計報告上의 絶對包含項目인 것이다. 性은 人間記錄에 있어 基本的인 屬性이며, 如何한 集計도 모두 性別로 交叉分類될 때 그 意義가 돼 있게 된다

国際勸告

動態統計報告書上에 性이 包含項目으로 된 것은 初期의 일이며 國際聯合의 「原則 304」[87]에 이를 記載하고 있는데 이에 依하면 性을 蒐集되는 情報項目中에서도 으뜸되는 項目으로 示唆하고 있다.

資料獲得問題

本項目의 獲得에 關한 唯一한 問題는 統計報告上에 提示할 質問樣式이나 두가지 用語 即 "男" "女" 로서 表示하여 該當欄에 表識(check)하는 方法을 쓰려면 各事件의 該當欄에 表識한 記號를 表示해 주어야 한다 胎兒死亡의 경우에 있어서 性을 모를 경우에는 兩性中 어느것을 選択해야 한다면 한쪽 性으로 기우러질 우려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未詳(Unknown) 欄을 設置하여 둠이 좋다

地位(Status)

參照; 經濟的表識(economic characteristics)

入會形態(Type of Attendant)

參照; "出生時의 入會者"

出生形態 即 單、雙胎兒(Type of Birth)

ie, Single or plural issue)

資料의 用途

本項目에 관한 統計的 用途는 国民保健目的이나 医学的目的에 限定되고 있는데 人口學上으로는 単胎児에 對한 双児의 比率은 年年이 볼 때 大差가 없다

単胎児와 双胎児의 新生児, 乳児 또는 産母에 관한 研究範囲는 産前, 産後保護라는 問題 乳児의 営養 防疫等의 問題에 限定되나 이 問題는 역시 双胎児의 出生 또는 胎児死亡에 相對的인 研究의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이 項目에 対한 分析은 入院, 出生順位 母의 年令 職業等과 더부러 胎児死亡에 直接的 関係가 있고 이에 対한 死因의 諸要因을 除去하는 方向으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国際勧告

出生 및 胎児死亡統計報告上의 第1次 優先順位項

目으로 勸告된 것으로 国際統合이 提示한 勸告定義(88)는 다음과 같다

出生形態(Type of Birth)란 妊娠結果 單胎兒인가 双胎兒인가를 말한다 生存乳兒 或은 死亡胎兒는 單胎兒 双胎兒 三胎兒 四胎兒等으로 表示할 수 있으며 生存 或은 死亡(胎兒死亡)에 對하서 残餘胎兒(infant or foetus)의 狀態를 表示하며 性도 表示하여야 한다"

本定義는 生存 或은 死亡한 残餘胎兒(mates)의 狀態를 示唆 勸告하고 있다.

人口學的 必要性에 立脚하여 出生形態에 관한 分類를 国際勸告한 것은 承是 「国際統合統計委員会」(89)의 것이 있다

單胎兒 —— 出生(live birth)

胎兒死亡

双胎児 — 出生 2名

出生 1, 胎児死亡 1

胎児死亡 2

三胎児 — 出生 3

出生 2 胎児死亡 1

出生 1 胎児死亡 2

胎児死亡 3

等으로 分類하고 있다

여기서 留意할 것은 国際統合의 勧告가 同一胎児(mate)의 状態를 仔細하게 分類하고 있다는 것이다 人口学的 目的으로 이 分類가 勧告되고 있다 国民保健面에 対해서는 特別한 研究의 集計를 하려면 부産에 對한 事項이 追加되어야 할 것이다

世界保健機構는 1950年에 「出生形態에 依한 出生乳児의 分類」(A classification of Live born

Infants According to Type of Birth) 를 統合하여 本表 (90)의 追加分類項에 掲載하고 있는 本分類는 "單胎兒" "双胎兒" 및 "3胎兒以上" (multiple)으로 區分하고, 出生(live born), 死産(still born) 및 早産(immaturity) 및 否를 記載하고 있다

이 分類를 보면

單胎兒 滿期出生

單胎兒 早産

双胎兒 滿期出生, 生存双胎兒

双胎兒 滿期出生, 死産双胎兒

双胎兒 早産, 生存双胎兒

双胎兒 早産, 死産双胎兒

三胎兒以上, 滿期出生, 全部生存

三胎兒以上, 滿期出生, 一人以上의 死産

三胎兒以上, 早産 全部生存

三胎兒以上, 早産 一人以上의 死産

資料獲得의 問題

同一胎兒의 狀態 및 性에 관한 情報蒐集을 意圖한 回答欄의 配置問題를 除外하고는 本項目의 獲得에 있어서 別로 注目할만한 難点이 없다

診斷形態 (Type of certification)

參照: "診斷者" (certifier)

出生 或은 分娩時의 体重 (Weight at birth or delivery)

資料의 用途

「國際疾病 傷害 死因分類」(91)는 新生兒 및 早産乳兒에 発病하는 疾病을 區分하고 "早産" (prematurity)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未熟한 乳兒(immature infant)란 出生時의 体重이 5½ 파운드(2,500 그람) 以下로 出生한 乳兒를 말한다 그러나 各国이 이의 基準을 모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出生時의 体重을 定하고 있지 않다면 姙娠期間이 37週未満의 出生乳兒 或은 '早産'으로 定한 姙娠期間에 該当하는 出生乳兒를 本分類에 該当하는 未熟한 乳兒로 看做한다"

따라서 出生時의 体重으로서의 原則은 「国際統計分類」로 본 早産定義의 一種이다

따라서 本「分類」案을 使用하는 国家에 있어서 만이 基本的 情報項目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世界保健機構는 「早産専門家団」(Experts Group on prematurity)으로 하여금 모든 動態統計에 早産의 定義를 명시하게 하였다. 該

「專門家団」의 勸告는 「世界保健總会」(World Health Assembly)에서 決議案 WHA 3.39 로 採択되었다 早産의 定義가 全的으로 認定된 것은 아니고 單只 世界到處에서 이에 対한 研究와 資料의 蒐集이 敢行되었지만 如何른 支配的인 定義로서 君臨하고 있다 出生時의 体重은 営養과 種族에 따라 다르다는 事実이 알려져 있고 諸般要因의 相互関係가 밝혀지면 早産의 定義는 修正을 받게 될 것이다

分析的 側面에서 보면 出生体重別 出生統計는 入院 및 入會者別 出生統計와 같이 早産乳兒의 保護라는 医学的 서비스의 需要를 測定하는데 크나큰 使用度가 있다 居住地로 볼 때 出生時의 体重은 早産과 環境의 相関関係를 나타내며 生存出生兒의 地理的인 早産의 差異를 알 수 있다 死亡胎兒의 出生体重의 用途는 早産定義를 完全히 하게하는 資料를 提供하게 하며 胎兒死亡統

許의 正確을 期할 수 있도록 妊娠期間報告를 確認하는 資料가 된다. 確實한 妊娠期間과 出生体重과의 교叉関聯表의 用途는 妊娠期間의 過少推定을 是正하는 用途가 있다 例컨대 STOCK 博士(93)가 研究한 바에 依하면 胎児死亡의 妊娠期間은 28週未滿이 었는데 이 때의 出生体重은 모두 5/2파운드(2 1/2kg) 以上이었다고 報告하였다. 그렇게 보면 妊娠期間은 過少하게 되었음이 틀림없고 따라서 胎児死亡은 妊娠期間이 短히 됨에도 不拘하고 後期의 胎児死亡에 屬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分娩時의 死亡胎児의 体重은 原是 그 用途가 特定集団內의 早産과 胎児死亡과의 相互関係를 研究하는 資料인 것이다

国際勧告

上記한 世界保健機構의 早産定義는 出生時의 体重

으로 定義하며, 그 區分은 2,500그람을 基準하여 決定지우고 있다. 이 定義는 胎兒死亡에 관한 特別研究를 함에 있어서 加一層 勸告한 것이다.(94)

이에 관한 資料를 얻기가 힘들에도 不拘하고 이 勸告를 따라서 国際聯合(95)은 出生 및 胎兒死亡統計報告上에 第2次 優先順位 項目으로 勸告하였다. 이 勸告된 定義는 다음과 같다.

'出生時의 出生兒의 体重 或은 分娩時의 死亡胎兒의 体重은 分娩後에 即刻 測定한 体重이며, 500그람을 基準하여 等級으로 區分하여야 한다.'

上記한 勸告가 示唆하는 바는 그 主는 出生体重資料를 必要로 하는 国家는 出生時의 体重을 蒐集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아직껏 大多數 国家가 乳兒死亡力을 떨어드리야 한다는 事実이 懸案의 問題로 되어 있기 때문에 新生兒의 死因과 같은

早産의 研究가 乳兒死亡原因을 除去시킨다고 생각된 나머지 "出生時의 体重"을 規定함에 있어서 「国際統合統計委員会」(96)는 "体重은 500g을 区間으로 하여 等級으로 表示하여야 한다"고 勧告하고 있다. 早産에 관한 国際定義에서 提示된바와 같이 (이 分類에서는 2500 그램으로 分類) 国際聯合이 勧告한 바의 分類案은 다음과 같다. 国内的 標準을 세울려면 이 標準으로 修正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00g未満 = 1파운드 1온스 未満

501 — 1,000g = 1 1lb 2oz — 2lb 3oz

1,000 — 1,500g = 2 1lb 4oz — 3lb 4oz

1,501 — 2,000g = 3 1lb 5oz — 4lb 6oz

2,001 — 2,500g = 4 1lb 7oz — 5lb 8oz

2501 — 3,000g = 5 1lb 9oz — 6lb 9oz

3,001 — 3,500 g = 6 lb 10 oz — 7 lb 11 oz

3501 — 4,000 g = 7 lb 12 oz — 8 lb 13 oz

4,001 — 4500 g = 8 lb 14 oz — 9 lb 14 oz

4501 — 5000 g = 9 lb 15 oz — 10 lb 0 oz

5001 g 以上 = 11 lb 0 oz — 以上

早産中 回無 (not stated)

未詳 (not stated)

資料의 獲得問題

出生兒 (live-born) 或은 死亡胎兒의 分娩時 体重을 얻는 問題는 分娩이 病院이나 入会医師를 어느 程度 갖느냐에 있다 비록 事事件件의 体重을 病院当局이 記錄치 못한다 할지라도 大体로 出生或은 分娩時의 体重報告는 病院에서 하는 것이 어떠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 더 正確하고 完全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実際로 이 項目의 情報는 助産

婦, 看護婦, 医師가 아니고서는 普通 申告하지 못하는 것이다 病院에 있어서도 極히 적은 乳兒 特히 出生과 同時에 死亡하는 乳兒의 体重을 記錄하지 않는 수가 許多하다 이러한 理由로 말미암아 出生体重을 "未詳" (Unknown)으로 申告하는 数가 많게 된다 이러한 "未詳"으로 因하여 分布上에 障碍을 가져올 수가 있으나 完全한 報告를 하게 하려면 적어도 病院이나 入會医師로 하여금 報告케 하는 것이 問題解決의 要諦이다.